

2026. 3. 24



가
Korea Law Service Center



- 1. • •
- 2. • •
- 3. • •



[2026. 1. 8.] [20656 , 2025. 1. 7.,]

() 02 - 3150 - 1361

1 < 2015. 1. 6.>

1 ()
.
.

[2015. 1. 6.]

2 () “ ” , , , , 가
(裝藥銃砲), (가)
(“ ”)
“ ” 가 15 . . . (雉刀) .
가 15

“ ” , (火工品:
) . < 2017. 7. 26., 2018. 9. 18.>

1.

가.
. 가

2.

가. (雷汞)
.
.
.
.
.

3

. ,
. 가

3.

가.
()
(實彈)() (空砲彈)

. ,
. ,
. (始動藥)

. 가

“ ” (催淚)
“ ” (人命)
(危害)

“ ”

“ ” , , 가, .<

[2017. 7. 26.>](#)

[2015. 1. 6.]

3 () 2 3 3
6 , 6 2, 6 4, 7 , 8 , 10 , 12 , 13 ,
18 21 , 23 , 32 35
4 , 9 25 가

6 , 6 2, 6 4, 7 , 8 , 10 , 12 , 18 ,
21 23 . < [2017. 3. 21., 2025. 1. 7.>](#)

2 3 3 가
4 , 4 2 5

.< [2018. 9. 18.>](#)

4 1 2 가

[2015. 1. 6.]

2 < 2015.

1. 6.>

3 2() 「 가

」 7 가

. < 2020. 12. 22., 2025. 1. 7.>

1.

2. 가 가

3.

4.

5.

6.

. < 2025. 1. 7.>

1.

2. , 가 가

3.

4. ,

5.

6.

」 4

가

2025. 1. 7.>

. < 2025. 1. 7.>

1

.< 2025. 1. 7.>

.< 2025. 1. 7.>

[2015. 7. 24.]

[2025. 1. 7.]

4 (가) (가

)

가

.< 2017. 7. 26.>

가

.< 2017. 7. 26., 2020. 12. 22.>

1

2

가

(“ ”)가

45 1

가가

6

1

2

가

.< 2020. 12. 22.>

[2015. 1. 6.]

4 2()

1. 가

2. 가

.< 2016. 12. 27.>

1. 「 」

2. 「 」 가(換價)

3. 「 」 · 「 」 「 」

4. 1 3

1 2

1

.< 2017. 7. 26., 2020. 12. 22.>

3

.< 2019. 12. 3., 2020. 12. 22.>

1 2

5

5

3

.< 2019. 12. 3.>

[2015. 1. 6.]

5 ()

가

.< 2018. 10. 16.>

1.

3

2.

1

3.

4. 20

5.

6.

7. 45 1 가가 (4 6

가가) 3

8. 1 7 가

[2015. 1. 6.]

6 (가)

가 .< 2017. 7. 26., 2020. 12. 22., 2025. 1. 7.>

1 (“ ”)가 가

() , 가

가 가

45 1 가가 6
1 가

.<

2020. 12. 22.>

1

[2015. 1. 6.]

6 2(가) 가
. 가 , 가
.

[2025. 1. 7.]

[6 2 6 3 <2025. 1. 7.>]

6 3(가) 가
.
. < 2017. 7. 26., 2020. 12. 22.>

1 가 (“ ”)가
. 45 1 가가 6
. 1 가 .< 2020. 12. 22.>

1
.
. < 2017. 7. 26.>

[2015. 1. 6.]

[6 2 , 6 3 6 4 <2025. 1. 7.>]

6 4()
4 2 “ ” “ ” ,
“ ” “ ” . < 2020. 12. 22.>

[2015. 1. 6.]

[6 3 <2025. 1. 7.>]

7 () 가
.
5 .

[2015. 1. 6.]

8 (. .)
 . , 「 」
 . 가 가 .

[2015. 1. 6.]

8 2(. .) .
(. 가 . 73 1
2)
 .

[2015. 1. 6.]

9 (가) .
 가 . 가 가
 . < 2017. 7.

26.>

.
 가 .< 2017. 7. 26., 2020. 12. 22.>
 . 가 1 2 가 .
 . , 가
 가 가

.< 2019. 12. 3.>

. 가
 . , 가 가 .<
2020. 12. 22.>

.< 2017. 7. 26.>

[2015. 1. 6.]

3 < 2015. 1.

6.>

10 () 가

- 1.
- 2. 가
- 3. 4 3 가
- 4. 가
- 5. 가 6 2
- 5 2. 가
- 6. 9 1 2 가 가
- 7. 18 1 가 (18 1 가)가
- 8. 21 1 가 (21 1 가)가
- 9. 2 8
- 10. 가

[2015. 1. 6.]

11 (. . .) [“ ” (模擬銃砲)] .

. . . 가 가 . . . , .< 2018. 9. 18.> 1 2

.< 2017. 7. 26., 2018. 9. 18.>

[2015. 1. 6.]

[2018. 9. 18.]

12 (. . . . 가) 10
가 가

가 . < 2015. 7. 24., 2017. 7. 26., 2020. 12. 22., 2025. 1. 7.>

- 1. (2):
- 2. .가
- :
- 3. :
- . , ,
- .가 . , (
- 46 “ ”),
- 가 가 .가 . , ,

가 . 가 가 . < 2018. 9. 18.>

. (

가)

3 , 13 1 가 . < 2020. 12. 22.>

. 가 < 2017. 7. 26.>

[2015. 1. 6.]

13 (.) 가

. < 2015. 7. 24., 2018. 9. 18., 2025. 1. 7.>

1. 20 . , 가 . . .

2. , . . , .

3. () 5

3 2.

3 3. () 10

가. 「 」 114
 . 「 」 257 1 . 2 , 260 261
 . 「 」 2 1
 . 「 . 」 7 8
 . 「 」 18 1 2

4. 5

5. <2025. 1. 7.>

6. 3

6 2. 3 3 7
 7

가. <2025. 1. 7.>
 . <2025. 1. 7.>
 . <2025. 1. 7.>

6 3. 「 」 148 2 (“ ”)
 5

() 5

7. 45 46 1 가가 1 가

. . . . 가 .< 2020.

12. 22.> (偽裝)

. . . .

가 .< 2017. 7. 26., 2020. 12. 22.>
[2015. 1. 6.]

14 (가)
가

가(가) .< 2017. 7. 26., 2020. 12. 22.>

1 가
가 .< 2020. 12. 22.>

(要人)・

가 .
[2015. 1. 6.]

14 2() 12 14 가
가

가 가 가

가 2

[2015. 7. 24.]

15 (가) 12 14 가 가
가 , , , ,

10 , 18 , 21 (가) 25
. < 2015. 7. 24., 2017. 7. 26.>

[2015. 1. 6.]

16 (가) 12
가 가 3 . < 2015. 7. 24.>

12 . . . 가 가
3 .< 2025. 1. 7.>
1 2 . . . 가

가 .< 2015. 7. 24., 2017. 7. 26., 2025. 1. 7.>
1 2 가
. < 2015. 7. 24., 2017. 7. 26., 2025. 1. 7.>

[2015. 1. 6.]
[2025. 1. 7.]

17 (. . .)
12 14 . . . 가
가 가 ()
. < 2015. 7. 24.>

12 14 . . . 가
가 가 . . .
. .
12 14 가
. , .
12 14 가

[2015. 1. 6.]

18 () 가 . ,
「 」
. < 2017. 7. 26.>
1 가 (“ ”)가
가 1
가 . . .
1 2 가

.<
2025. 1. 7.>

1 2 가 13

1 2 .
[2015. 1. 6.]

19 ()
(.)
, 6 3 1 12 3

. < 2025. 1.

7.>

1. 18 . ,

가

2. 5 (4)

3. 13 1 (1)

[2015. 1. 6.]

20 (.) 12 가 가

가 65 가

. < 2018. 9. 18.>

1 가 가

. < 2018. 9. 18.>

가

. < 2017. 7. 26., 2018. 9. 18.>

. .

. < 2018. 9. 18.>

. < 2018. 9. 18.,

2025. 1. 7.>

[2015. 1. 6.]

[2018. 9. 18.]

21 (.)

가

. < 2015. 7. 24.,

2017. 7. 26.>

- 1. 가
- 2. 가
- 3. 가 가
- 4. 가 가
(6 2)
- 5. 「 」 가

6. .
 .
 1 가 .
 , 가 1 가
 1 가 , 가 1
 , 가 1
 가 .
 , , , 가
 가 , , ,
 가 가 ,
 ,

 가
 가
 ,

[2015. 1. 6.]

22 () () .) .
 가 (12 3) 28 가
 가 .
 , . 가
 가 . <

[2015. 3. 11., 2018. 9. 18., 2020. 12. 22.>](#)

- 1.
- 2. ,

3.

1 . 1

.< 2020. 12. 22.>

. 1 . 4

48

.< 2017. 7. 26., 2018. 9. 18., 2020. 12. 22.>

. 가 가

.< 2015. 3. 11., 2018. 9. 18.>

. 가 28 1

.< 2015. 3. 11., 2018. 9. 18., 2025. 1. 7.>

1. 가 28 : 16 28

2. 가 : 16 2

1 , 4 5 가 .

가 가 . 1 , 4

5 .< 2018. 9. 18.>

[2015. 1. 6.]

23 (.) (遺失) . (埋沒)

.

24 가 , (

)

< 2015. 7. 24., 2020. 12. 22.>

[2015. 1. 6.]

4 < 2015. 1. 6.>

24 () 25 , .

, , .

, .

가(自家) (專用)

[2015. 1. 6.]

25 (가)

.

가

< 2020. 12. 22.>

. 1 가
 . 가
 가 .< 2020. 12. 22.>
 가 5 .
 . 45 2 가가
 6 1 가
 .< 2020. 12. 22.>
 가 (“ ”)

[2015. 1. 6.]

25 2() 4
 2 “ ” “ ” “ ” “ ” “ ”
 ” “ ” “ ”

. < 2020. 12. 22.>

[2015. 1. 6.]

26 ()
 . < 2017. 7. 26.>
 1
 .< 2017. 7. 26.>
 2
 .
 ’ ’ ’
 2

.< 2025. 1. 7.>

[2015. 1. 6.]

27 ()
 ’ ’
 28
 1 가
 가 (“ 가 ”)
 .< 2017. 7. 26.>

가 1 가
29 1

[2015. 1. 6.]

28 () 「 가 」

. 가
. < 2017. 7. 26., 2020. 12. 22.>

1
가

1

5

< 2017. 7. 26.>

[2015. 1. 6.]

29 ()

. < 2025. 1. 7.>

1. 20

2. , , , ,

3. 30 1 (2) 가 1

(28 4 가)

4. 13 1 (1)

13 2

[2015. 1. 6.]

30 (.) 28 1 . (“

”)

6

. , 1 4
< 2020. 12. 22.>

1.

2. 「 가 」

3. 29 1

4.

5.

6. 가 가

7.

「

가 」

[2015. 1. 6.]

31 ()

(

)

[2015. 1. 6.]

32 ()

1

< 2020. 12. 22.>

1

< 2020. 12.

22.>

1

3

30

가

30

< 2020. 12. 22.>

[2015. 1. 6.]

33 ()

가 가가

가

[2015. 1. 6.]

34 ()

. < 2017. 7. 26.>

.
. .

[2015. 1. 6.]

35 (.)

. <

2018. 9. 18.>

. . (12 2
가 , 3 가
“ . ”)
1 46 1 3 가
12 가 .< 2018. 9. 18., 2020. 12.

22.>

가 . 가 .

2 가가 ,

가 .< 2018. 9. 18.>

가 . . 46 1 3 가
2 3 .

< 2018. 9. 18., 2020. 12. 22.>

. 46 1 3 가가
가가 1 12 가

.< 2018. 9. 18., 2020. 12. 22.>

가 46 1 3 가가 가 가
5 가가
가

.< 2018. 9. 18.>

3 6 , ,

.< 2018. 9. 18.>

[2015. 1. 6.]

[2018. 9. 18.]

36 () .

가

가

[2015. 1. 6.]

37 () . .

가

가

[2015. 1. 6.]

38 ()

. . . < 2017. 7. 26., 2020. 12. 22.>

1

4 5 . .

2020. 12. 22.>

.< 2020. 12. 22.>

[2015. 1. 6.]

39 ()

.< 2017. 7. 26., 2020. 12. 22.>

1

.< 2017. 7. 26., 2020.

12. 22.>

1

1 3

.< 2020. 12. 22.>

[2015. 1. 6.]

40 ()

, 가

.< 2017. 7. 26.>

1

가 .
가 .

1 .< 2020. 12. 22.>
[2015. 1. 6.]

41 () . .
가
[2015. 1. 6.]

42 (. . .)
가 . . . 9
가 가 . . . 가 가

1 ,
 .< 2017. 7. 26.>
1 48 .
가

.< 2017. 7. 26.>

3 . . 「
」 129 132 . .
1 가

가 . . . 가
가

.< 2017. 7. 26., 2020. 12. 22.>

. . . 가 6

[2015. 1. 6.]

5 < 2015. 1. 6.>

43 () , 가 1
 가 , 가
 가 1
 [2015. 1. 6.]

44 (.) 가

 .
 1 .
 가 ,
 , 가 ,
 가 ,
 . . 가
 . . 7
 . . 가 .<

[2018. 9. 18.>](#)

[2015. 1. 6.]
 45 () 가 , 가
 가 , 6 8
 6

. < [2018. 10. 16., 2025. 1. 7.>](#)

1. 가
2. 3 4
3. 4 . 6 6 3 . .
 5 (7)
 , 5 8 (7) 가
4. 43
5. 1
- 6.

7. 가 가

8.

1 (2)

“ 4 . 6 ” “ 25

”

[2015. 1. 6.]

45 2() 4 2 6 4 . .

가 . . 45 1

가 . . ,

()

. < 2025. 1. 7.>

25 2 가

1 . “ .

” “ ” .

[2015. 1. 6.]

46 (가) 가 . .

. . 가 (12 2

, 3)

가 가 .

12 2 가 가

가 . 가 , ,

가 . < 2018. 9. 18.>

1. 13 1

2. 17 1 . 2 4 (12 3 가

)

3.

30

4.

가 1 가

. (

) 15 가

2

. . 가 6

. 3 . . .
. 3
가 가 . . .

.< 2017. 7. 26.>

3 6
가 가 가 . . .
가
(催告) .<

2017. 7. 26.>

가 5 6
. 가
가

가 6
6 가

[2015. 1. 6.]

46 2() 46 1 1
1

[2015. 7. 24.]

[46 2 46 3 <2015. 7. 24.>]

46 3() 가

1. 30 1

2. 45
가

3. 46 1 가
가

[2015. 1. 6.]

[46 2 <2015. 7. 24.>]

47 () 가

1. . . . 가 . . .
가

2. , , , . ,

3. , , , 가 가 , ,

4. ,

5. , , , .

가 1 1 3 가

. . . . 1

2

.< 2017. 7. 26.>

가 , , ,

.< 2015. 7. 24.>

[2015. 1. 6.]

6 . < 2015. 1. 6.>

48 (.)

. . (“ ”)

[2015. 1. 6.]

49 () , , ,
 가 (. 가),
 , ,
 가 ,
 가

[2015. 1. 6.]

50 ()

[2015. 1. 6.]

51 ()

- 1.
- 2.
- 3.
- 4.
- 5.
- 6.
- 7.
- 8.
- 9.

1

[2015. 1. 6.]

52 ()

1.
2.
3.
- . . .
4.
5.
6.
7.

- 8.
- 9.

10.

[2015. 1. 6.]

53 () 1 5 1 .

,

. 2 .

[2015. 1. 6.]

54 () , .

(監査) .

[2015. 1. 6.]

55 () .

1.

2.

3.

3

4.

1

5.

6.

[2015. 1. 6.]

56 () .

,

.

[2015. 1. 6.]

57 () .

[2015. 1. 6.]

58 () . <

[2017. 7. 26.>](#)

1.

2.

3.

1 3

[2015. 1. 6.]

59 ()

[2015. 1. 6.]

60 ()

2

[2015. 1. 6.]

61 ()

[2015. 1. 6.]

62 (「 」)

「 」

[2015. 1. 6.]

7 < 2015. 1. 6.>

63 ()

. < 2015. 7. 24.>

가

. < 2015. 7. 24.>

[2015. 1. 6.]

64 ()

[2015. 1. 6.]

65 (가)

가

가

가

. < 2017. 7.

26.>

1 가 가 가
.
가 가 .<

2017. 7. 26.>

1 가 가 가
가 .< 2017. 7. 26.>
가 가 가
.< 2017. 7. 26.>

[2015. 1. 6.]

66 ()

가 . < 2017. 7. 26.>

1. . 가 1

2. . 가

3. 가

[2015. 1. 6.]

67 () 가 가

. < 2017. 7. 26.>

1 . 가 가

.< 2020. 12. 22.>

[2015. 1. 6.]

68 () .

. < 2020. 12.

22.>

[2015. 1. 6.]

69 () 가

. < 2017. 7. 26.>

30

1.

2. 가 , , ,

[2015. 1. 6.]

8 < 2015. 1. 6.>

70 () 3 15 3
1 . < 2025. 1. 7.>

1. 3 4
(. . . .)

2. (. . . .) 4 1 . 3 ,
6 1 . 2 , 6 2 , 9 1 12 1
1 .

[2018. 9. 18.]

70 2() 10 5
. < 2025. 1. 7.>

1. 3 4
(. . . .)

2. (. . . .) 4
1 . 3 , 6 1 . 2 , 6 2 , 9 1 12 1 . 2

2 2. . 4 2 . 3 , 6 1 . 2 , 6 2 , 9
2 12 1 . 3

3. 12 3 ()
1 .

[2018. 9. 18.]

70 3() . . 70 70 2
2 1 가 . < 2025. 1. 7.>

[2018. 9. 18.]

71 () 5 1
. < 2015. 7. 24., 2018. 9. 18., 2025. 1. 7.>

1. . 4 2 . 3 , 6 1 . 2 , 6 2 ,
9 2 12 1 3

1 2. 6 3 1 . 2

1 3. 14 2 1

2. 18 1 2

3. 21 1 . 3 . 4 5

4. 31 1

5. 45 1 2

6. 47 1 2

7. 69 1

8. , ,

[2015. 1. 6.]

72 () 3 700

. < 2018. 9. 18., 2025. 1. 7.>

1. 6 2

2. 8 , 19 , 24 1 . 2 , 25 1 . 5 , 27 1 , 32 1 ,
34 1 . 2 , 36 , 38 1 . 4 , 40 1 43

3. 8 2 .

.

4. 18 4 26 4

5. 27 3 32 3

6. 35 3 6

7. 41 42 7

8. 42 1 5

9. 44 1 .

10. 가

[2015. 1. 6.]

73 () 2 500

. < 2018. 9. 18., 2025. 1. 7.>

- 1. 4 2 3 (6 4 25 2), 11 1
 . 2 , 17 2 . 4 , 31 2 37 1 . 2
- 1 2. 20 1
- 2. 20 5
- 3. 23
- 4. 26 1 , 35 1 ()

[2015. 1. 6.]

74 () 300

. < 2018. 9. 18.>

- 1. 9 5 , 11 3 , 20 3 , 27 2 , 35 1 ()
66
- 2. 17 1 . 3 , 32 4 , 33 , 39 1 . 3 , 63 , 64
65 2
- 3. 20 4 39 4
- 4. 26 3
- 5. 32 2 , 40 2 44 3 . 4
- 6. 47 3
1 , .

. < 2020. 12. 22.>

[2015. 1. 6.]

75 () 70 , 70 2, 70 3, 71 73

. < 2018. 9. 18.>

[2015. 1. 6.]

76 () , ,
70 , 70 2, 70 3, 71 73

(科) . ,

. < 2018.

9. 18.>

[2008. 12. 26.]

< 3743 ,1984. 8. 4.>

- 1 () 6 .
- 2 (가) 가
- 3 (가) .
- 3 11 2
- 3
- 4 () .
- 5 () . .

< 3876 ,1986. 12. 31.>

6 .

< 4154 ,1989. 12. 30.>

- 1 () 1990 3 1 .
- 2 (.) .
- 3 3 가 .
- 3 () .
- 4 () .
- 3 .
- 5 () . . 가
- 43 .

< 4369 ,1991. 5. 31.> ()

- 1 () 60 .
- 2 3

4 ()

. . .
4 1 , 9 1 . 2 , 10 5 , 42 1 . 3 ,
51 2 , 52 9 , 53 2 , 59 2 , 60 61 “
” “ ” .

6 1 “ . (“ . ”) ” “
” .

12 1 , 13 2 4 , 14 1 , 22 , 25 1 . 2 ,
28 1 , 32 2 , 38 1 , 39 1 , 40 3 67
2 “ . ” “ ” .

14 2 , 38 2 . 3 39 2 . 4 “ . ”
“ ” .

32 3 “ . ” “ ”

.
68 “ . ” “ ” “ ” , “
” “ ” .

74 2 “ , . ” “ , ” .
1(

5 6

< 4989 ,1995. 12. 6.>

() 6 .
(가) 가
3 12
가 .
()
3 12 가
.
()

< 5201 ,1996. 12. 30.>

() 3 .
()

< 5453 ,1997. 12. 13.> ()

1 () 1998 1 1 . < >
2

< 5938 ,1999. 3. 31.>

.

< 6386 ,2001. 1. 26.>

()

() 24

6 24 25

() 가

.

< 6948 ,2003. 7. 29.>

() 6 .

(가) 2 1

3 12 1

가 . , 17 5

가 2 1

12 1 가 . . .

() . . .

가

13 1 3 . 4 . 5 29

1 4

.

< 7428 ,2005. 3. 31.> ()

1 () 1 .
 2 4
 5 () <119>
 <120> . .
 4 2 2 “ ” “ 「 」 ” .
 5 5 “ ” “ ” .
 <121> <145>
 6

< 7849 ,2006. 2. 21.> ()

1 () 2006 7 1 . < >
 2 39
 40 () 3!
 3@ . .
 23 “ ” “ 가 ” , “ ” “ 가 ”
 , 35 . 36 46 1 3 “ ” “ 가 ”
 .
 3# 4&
 41

< 8852 ,2008. 2. 29.> ()

1 () . , . . . < > . . . , 6
 .
 2 5

6 () <712>
 <713> . .
 4 1 . 2 , 4 2 3 , 6 1 , 9 1 . 2 .
 5 , 12 1 , 13 3 , 15 , 16 2 , 18 1 , 21
 1 , 26 1 . 2 , 27 2 , 28 1 .
 4 , 34 1 , 39 1 . 2 , 40 1 , 42 2 . 3
 . 6 , 46 4 . 5 , 58 1 2 , 65 1 . 2 . 3 . 4 ,
 66 67 1 “ ” “ ” .

<714> <760>

7

< 9211 ,2008. 12. 26.>

< 10219 ,2010. 3. 31.>()

1 () 2011 1 1 .

2 10

11 () 5)

<51> . .

4 2 2 “ ” “ 「 」 ” .

<52> <61>

12

< 11690 ,2013. 3. 23.>()

1 () .

2 5

6 () <227>

<228> . .

2 3 3 , 11 2 , 14 1 , 20 1 , 22 3 ,

38 1 47 3 “ ” “ ” .

4 1 , 2 , 4 2 3 , 6 1 , 9 1 .

2 • 5 , 12 1 , 13 3 , 15 , 16 2 , 18 1 ,

21 1 , 26 1 , 2 , 27 2 ,

28 1 • 4 , 34 1 , 39 1 , 2 , 40 1 ,

42 2 , 3 , 6 , 46 4 • 5 , 58 1 2 ,

65 1 4 , 66 67 1 “ ” “

”

<229> <710>

7

< 12844 ,2014. 11. 19.>()

1 () . , 6

2 5

6 () <138>

<139> . .

2 3 3 , 4 1 , 2 , 4 2 3 , 6 1
, 9 1 . 2 . 5 , 11 2 , 12 1 , 13 3 , 14
1 , 15 , 16 2 , 18 1 , 20 1 , 21 1
, 22 3 , 26 1 , 2 , 27 2 , 28 1
. 4 , 34 1 , 38 1 , 39 1 , 2 , 40 1
, 42 2 , 3 , 6 , 46 4 . 5 , 47 3 ,
58 1 2 , 65 1 4 , 66 67 1 “
” “ ” .

<140> <258>

7

< 12960 ,2015. 1. 6.>

1 () 1 .
2 (.) 9

가 가

3 () 5 5 55 1
10429 2

4 (가)
가 12 3 가 .

5 ()
10 3 “ 「 . . 」 ” “ 「 . .
」 ” .

10 1 12 “ 「 . . 」 ” “ 「 . .
」 ” .

가

65 1 11 3 8 “ 「 . . 」 ”
“ 「 . . 」 ”

29 2 8 , 3 40 1 4 “ 「 . . 」 ”
「 」 ” “ 「 . . 」 ”

32 2 7 “ . . 25 1 ” “ 「 . . 」 ”
. . 「 25 1 ” .

53 2 “ 「 . . 」 ” “ 「 . . 」 ”
「 」 ” .

7 6 12 1 “ 「 . . 」 ” “ 「 . . 」 ”
. . 「 」 ” .

14 1 12 14 2 1 6 “ 「 . . 」 ”
“ 「 . . 」 ”

5 3 “ 「 . . 」 ” “ 「 . . 」 ”
「 」 ” .

35 2 9 3 5 “ 「 . . 」 ”
“ 「 . . 」 ”

11 1 2 “ 「 . . 」 ” “ 「 . . 」 ”
「 」 ” .

5 1 8 “ . . ” “ 「 . . 」 ”
「 」 ” .

6 () 「 . . 」
「 」 .

< 13215 ,2015. 3. 11.>

1 () 6 . , 12960 .
 . 22 2016 1 7 .
 2 (가) ()
 가 28 가 22 5 .
 가 28 .
 , 가 .

< 13425 ,2015. 7. 24.> ()

1 () 6 .
 2 4 .
 5 () .
 . . .
 23 “ ” “ ” .
 12960 . .
 23 “ ” “ ” .

6

< 13429 ,2015. 7. 24.>

1 () 2015 11 2 . , 12960 . .
 . 2016 1 7 .
 2 () 13 1 .
 . . . 가 .
 . . 13 1 . 12960
 . . 12960 . . .
 . 가 .
 3 () 12 14 .
 가 14 2 1 가 .
 가 1 .
 가 .

4 (가) 16 1
가 가
가 .

< 14476 ,2016. 12. 27.> ()

1 () 3 . < >

2 3

4 4 () <53>

<54> . .

4 2 2 3 “ 「 」 ” “ 「 」 ” .

<55> <65>

5

< 14621 ,2017. 3. 21.>

< 14839 ,2017. 7. 26.> ()

1 () . , 5

2 4

5 () <125>

<126> . .

2 3 3 , 7 , 4 1 , 2 , 4 2 3
, 6 1 , 6 2 1 , 4 , 9 1 , 2 .
5 , 11 2 , 12 1 , 4 , 13
3 , 14 1 , 15 , 16 2 . 3 , 18 1 , 20 1 ,
21 1 , 22 3 , 26 1 , 2 , 27
2 , 28 1 . 4 , 34 1 , 38 1 , 39 1 ,
2 , 40 1 , 42 2 , 3 , 6 , 46 4 .
5 , 47 3 , 58 1 2 , 65 1 . 2 , 3 ,
4 , 66 , 67 1 69 1 “ ”
“ ” .

<127> <382>

6

< 15766 ,2018. 9. 18.>

1 () 1 .

2 () 13 1 6 2

. . . 가

3 (.) 35 .

4 () 11 2

. 가

1 .

< 15808 ,2018. 10. 16.>

1 () .

2 () 45 1 3

5 8 (7)

< 16670 ,2019. 12. 3.>

< 17689 ,2020. 12. 22.>(가

)

1 () 2021 1 1 .

2 6

7 () 4&

4* . .

3 2 1 “ 「 」 5 ” “ 「 가

」 7 가 ” .

4 2 4 , 4 2 3 4 , 6 1

3 , 6 2 1 3 , 6 3 , 9 2 4

, 12 1 1 3 , 13 2 3 , 14 1
 2 , 22 1 , 2 3 , 25 1 ,
 2 4 , 25 2 , 28 , 30 1 , 32 2
 3 , 4 , 35 2 , 4 5 , 38
 1 , 2 3 , 39 1 , 2 4 , 40
 3 , 42 6 , 67 2 , 68 , 74 2 “ ” “

23 “ 가 () ” “ () ”

4(<53>

8

< 20656 ,2025. 1. 7.>

- 1 () 1 .
- 2 () 13 1 (18 5) 가
- 29 1 4) 가
- 3 (. . . 가)
- . . . 가 16 2
- 가 .
- 1. 2004 12 31 가 : 1
- 2. 2005 1 1 2013 12 31 가 : 2
- 3. 2014 1 1 가 : 3



[2026. 3. 24.] [36221 , 2026. 3. 24.,]

() 02 - 3150 - 1306, 1361

1

1 () 「 . . 」 . < 1990. 3. 31., 2016. 1. 6.>

2 () . < 1987. 11. 10., 1991. 7. 30., 1993. 3. 6., 1996. 6. 20.,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3. 10. 10., 2014. 7. 14., 2021. 1. 5., 2025. 10. 1.>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가 .
- 6. “ 1 ” , 가 , , , , .
- 7. “ 2 ” .
- 8. “ 3 ” 1 2 , , 가
- 9. “ 4 ” 「 」 10 , , .
- 10. “ ” .
- 11. “ ” .
- 12. “ ” () .

3 () 「 . . 」 (“ ”)

2 1 . < 1987. 11. 10., 1990. 3. 31., 1996. 6. 20., 1999. 6. 30., 2004. 1. 20., 2016. 1. 6., 2019. 9. 17., 2021. 1. 5.>

1.

가. (.)

. (20 ,)

(1) (4 32 0.41)

(2) (0.22 0.38)

(3) (4.5 5.5 . , 5.5 6.4)

(4) 가 ()

(1) (12 20)

(2) (0.22 0.38)

(3) (4.5 5.5)

(4) 가 ()

(1) (0.22 0.38)

(2)

(1)

(2)

(3) ()

(4)

(1)

(2)

. 가

. (12.5 40)

2.

- 가. (20 40)
- . (40 90 ,)
- . (90 ,)
- .
- . ()

3.

- 가. () 가
- .
- .
- 1 “ ” . 가

4 () 2 2 .

- 1.
- 2.
- 3.
- 4.
- 5.
- 6.
- 7.

- 8. (가 6)
- 9. (가 5.5 , 45 가)

10. 6

1 .

1

5 () 2 3 1 “ ”

. < [1999. 6. 30.](#)>

- 1.
- 2.
- 3.
- 4.
- 5.

2 3 2 “ ”

.< 1997. 4. 12.>

- 1.
- 2.
- 3.
- 4.

75

5. (12.2)

6 () 1

2 .

1 7 1 . 4 . 5 . 8(3)

11 16 . , .

. .

1 7 1 3 . 5 . 8(3)

11 16 . . .

.

6 2() 2 4

가

1 . , .

- 1.
- 2.
- 3.
- 4.

[1990. 3. 31.]

6 3() 2 5

1 . ,

.

- 1.
- 2.
- 3.

[1990. 3. 31.]

6 4() 2 6

,

()

1 . < 1997. 4. 12.>

1.

2. (.)

3.

[1996. 6. 20.]

2 < 2019.

9. 17.>

6 5() 3 2 2 6 “
” . < 2016. 1. 6., 2025. 12. 16.>

1. ,

2. . .

3. .

3 2 3 6 “ ”

.< 2025. 12. 16.>

1. ,

2. . .

3. .

[2015. 10. 30.]

[2025. 12. 16.]

6 6() 3 2 6
. < 2025. 12. 16.>

.<

2016. 1. 6., 2025. 12. 16.>

1. ,

2.

가.

.

.

3.

가. 가

.

.

4.

가. 가 가가

. .

5.

가. 가가

.

6.

가.

. . .

7.

가.

. .

가 1

.< 2025. 12. 16.>

.< 2025. 12. 16.>

1 4

.< 2025. 12. 16.>

[2015. 10. 30.]

[2025. 12. 16.]

7 (가) 4 3

가 . < 1996.

6. 20.>

1. . . .
1 400 , 1 200

2. <1996. 6. 20.>

3. <1996. 6. 20.>

4. 1

1 () , 1 2 1 1

8 () 4 5
(“ ”) . <

1987. 11. 10., 1990. 3. 31., 1996. 6. 20., 1999. 6. 30., 2001. 3. 31., 2004. 1. 20., 2006. 3. 10., 2008.

2. 29., 2013. 3. 23., 2013. 10. 10., 2014. 11. 19., 2016. 6. 30., 2017. 7. 26., 2018. 5. 28.>

1.

2.

가.

1) (. . .)
[(“ ”)] : 3

2) : 3

1) (: 200

2) : 80

가) .)

2 2. 23.1 .

3. 1 가 2

4.

5. (“ ”) 4

(. . 5) . ,

6. 4 5 . , 3

1 2 100 , 3 4 50 , 10

$\text{보안거리} = \frac{\{\text{분모의 정체량에 대한 보안거리}\} \times \{\text{저장하고자 하는 수량의 세제 공급근}\}}{\text{별표 4 또는 별표 5에 의한 정체량의 세제 공급근}}$

7.

8. ()

9. 41

10. , 가

11. 42

12. (“ ”)
43

13.

14.

15. . .

16. , 가

17. 가 가

18. 가 가

19. 가

20. 가 가

21. 가 .

110 (150)

22.

,

23.

24.

•

,

,

,

25.

가

가

,

26.

가

가

가 가

가

가

27.

•

,

•

28.

가

•

,

가

가

•

29.

60

30.

가 20

43

,

가 20

31.

•

•

,

,

32.

33.

•

,

,

34.

35.

,

9 (

)

4

5

. < 1990. 3. 31., 1996. 6. 20., 1999. 6. 30., 2004. 1. 2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

,

•

2. 6 . ,

3. 4 5 . ,
23 , 27

.< 1996. 6. 20., 1999. 6. 30., 2004. 1. 20., 2008. 2. 29., 2013. 3. 23., 2013. 10. 10., 2014. 11. 19., 2017. 7. 26.>

1. , 1
,

2.

3.

,

4.

5.

6.

가 , 가

7.

8.

9.

10. 가

11. .

12. .

가 ,

13. .

14.

15.

16.

17. 가 가 가 가

18. 가 ,

19. . .

20.

21. (.) 가 가 ,

22. 21 () ,

23. . , . , 가 .

24.

25. ,

26.

27. . ,

4 5 .< 1990. 3. 31., 1991. 7. 30., 1996. 6. 20., 1999. 6. 30., 2004. 1. 20., 2006. 3. 1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9., 2017. 7. 26., 2025. 8. 5.>

1. 「 」 가 . 가 ,

2. ,

3.

4 5

.< 1990.

3. 31., 1996. 6. 20., 1999. 6. 30., 2004. 1. 2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2.

3.

4 5

.< 1996. 6. 20.,

1997. 4. 12., 1999. 6. 30., 2004. 1. 2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2. 68

3.

4. 가

5.

9 2(가 가)

가 가 1 1 400

(5,000) 6 2

가

가 1

2 , 2 (10)

.< 2019. 9. 17.>

[1996. 6. 20.]

10 () 6 4

. . .

. < 1987. 11. 10., 1990. 3. 31., 1996. 6. 20.,

2004. 1. 20.>

1. . . . 16.5

. . . .

2. 1

가.

.

(1.6 , 450)

3.

1

4.

1

5. 가 가 1
6. . ,

7. 2
8. .
6 4 .< 1996. 6.
20., 2004. 1. 20.>

1. 가
2.
3. 가
4.
[1996. 6. 20.]

10 2() 6 3 1 .
. . . .
10 1 1 3 6 8 .<
2025. 12. 16.>

[2016. 1. 6.]
11 () 가 ()
. . . .
3 < 1990. 3.
31., 1996. 6. 20.>

12 (가) 10 10 가
.
< 1990. 3. 31., 1991. 7. 30., 1996. 6. 20., 1999. 6. 30., 2004. 1. 20., 2006. 3. 10., 2020. 12. 31.,
2024. 5. 7.>

1. 가 가 . .
가
2. 「 . 」 「 . 」
.

3.

4. .

.

5. 「 」 . 「 」 . 「 」

6. 가

7. 가 ()

.
1 2
. <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3 () 11 1 “ ”
5 2 1 .
11 2 “ ” 5 2 2

[2019. 9. 17.]

13 2() 12 2 “ ” 3 1 1 .

[2019. 9. 17.]

14 (. . . . 가)
12 5 가

. < 1990. 3. 31., 1996. 6. 20., 1999. 6. 30., 2004. 1. 2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6., 2017. 7. 26., 2019. 9. 17.>

1. .
2.
3.
4. 가

5. 가

6. . . . 가

7. . 가 .

8. . .

9. 가

10. . . 가 .

가. . :
. :가 () .
. :
. (「 」 10 1):

11. () 가 가

1 1 가

.<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996. 6. 20.]

14 2(. . .) 13

1 2 “ ” , , ,
(), ,

.
가 .< 2021. 1. 5., 2025. 12. 16.>

[2015. 10. 30.]

14 3() 14 3 ,
(要人) .

가 .

1. , , ,
2. , , ,
3. , , ,
14 3 가

.< 2017. 7. 26.>

1 가

[2016. 1. 6.]

[14 3 14 4 <2016. 1. 6.>]

14 4() 12 (.) 가 14
14 5) 가 14

2 1 가 가

가

가

. < 2016. 1. 6., 2017. 7. 26.>

1

1. 가

2.

3. 가 가

2

가

.< 2017. 7. 26.>

1.

2. 1

3.

[2015. 10. 30.]

[14 3 , 14 4 14 5 <2016. 1. 6.>]

14 5() 14 2 2

. < 2019. 9. 17.>

1. 가

가. (GPS)

. 가

2.

3. 1 가 (1 가) 2 가

[2015. 10. 30.]

[14 4 <2016. 1. 6.>]

15 (가) 18 1 가

. < 1987. 11. 10., 1996. 6. 20., 1997. 4. 12., 2004. 1. 20., 2006. 3. 10., 2021. 1. 5.>

1. 「 」 가 「 」 가

2. 12 가

3. . . . 1 5 , 2.5 , 100 . . . 200

4.

5. 400

6. 1

가. 6 50 . 6 10 15 . 10 20 10 . 200 1 () 1 , () 0.1 () 300 () 30) 1 가 1 , () 0.1 300

7. 1 ()

가. 15 50

- . 15 30 30
- . 30 50 5
- . () 0.1
- 8. , ,
- 9. (.) 1 100 10 200
- 10.
- 11. • 1

가. 5,000

- . 150
- . 100
- . 500
- . 50
- . 20
- . <1987. 11. 10.>

- 12.
- 13. 1 300
- 14. <2025. 12. 16.>
- 15. •
- 16. 200

[2021. 1. 5.]

16 () 18

()

< 2021. 1. 5.>

1. 가

2. •

3.

4. 50

30

•

5.

6. 가

- 7. ,
- 8. , 0.01
- 9.
- 10.
- 11.
- 1. . 가 , 가
- 2.
- 3. , , 가
- 4.
- 17 () 18 가 15
1
- ((“ ”) . , 1
25 , 50 , 가
250 3
- . < [1987. 11. 10.>](#)
1 , .
- < [2025. 12. 16.>](#)
- 1. , , , 가 , , 가
- 2. ,
- 3. .
- 4. . , 가
- 5. 2 , 2
- 6. .

) 300 , 1 , (3,000 , 6
 .< 1996. 6. 20.>

.< 2021. 1. 5.>
 8 1 19 , 9 2 3 6 1
 .< 1996. 6. 20.>

18 <2025. 12. 16.>

19 <2025. 12. 16.>

20 <2025. 12. 16.>

21 <2025. 12. 16.>

22 <2025. 12. 16.>

23 <2025. 12. 16.>

24 <2025. 12. 16.>

25 (가) 21 1 4
 가 . < 1996. 6. 20.>

1. <2001. 3. 31.>

2. 1 100 , 1 200

3. <2001. 3. 31.>

21 1 5 가
 1,125 .

[2013. 10. 10.]

26 () 22 1 가

. < 1990. 3. 31., 1996. 6. 20., 2001. 3. 31., 2006. 6.

29., 2008. 1. 2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6., 2017. 7. 26.>

1.

가. . .
 . . 6 .
 . 가
 . 가 . , , ,

가
가
2.
가. 가 가
. 가 가
1 2 2
가 7 .
.

. , 2 .
. 가 4 3
. . . .

.< 1987. 11. 10., 1990. 3. 31., 1991. 7. 30., 1996. 6. 20., 1999. 6. 30., 2006. 3. 10., 2008. 2. 29., 2012. 1. 31., 2013. 3. 23., 2014. 11. 19., 2016. 1. 6., 2017. 7. 26., 2020. 12. 31.>

- 1.
- 1 2.
- 2. 「 」 () . . . 가
- 3.
- 4.

<2008. 1. 22.>

26 2() 22 4 (.
) 가 가

. , 22 1 . < 2020. 12. 31.>

- 1.
- 2. .
- 3. 「 」

1 1 .
[2015. 9. 11.]

4 < 1990. 3. 31.,
1996. 6. 20.>

27 () 24 1
6 . ,
6

28 () 25 1
, 1 . 2 . 4 8 . 가 ,
3 9 가 . < 1991. 7. 30., 1996. 6. 20.,
2020. 12. 31.>

- 1. 1
- 2. 2
- 3. 3
- 4.
- 5.
- 6.
- 7.
- 8.
- 9.
- 2

29 (.) 25 2
30 44 .

30 ()
45 1 12 8 .

$$\text{보안거리} = \frac{\{\text{분모의 저장량에 대응한 보안거리}\} \times \{\text{저장하고자 하는 수량의 세제곱근}\}}{\text{별표 12에 의한 저장량의 세제곱근}}$$

1 . 2 2 , 3
4 42 4 5

1

9

1

5

가

1

<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31 (1 .) 1 .

. < 1987. 11. 10., 2021. 1. 5., 2025. 12. 16.>

1. , , 가

2.

3. 15 ,

20

4. 2 3 2

5. 1.7

1 10 ,

,

6. 30 ,

3 (20

5 1)

7. , 가

8. 가 1

9.

10.

11. . ,

12.

13.

14. 2

15.

16.

32 (1 .)
(“ ”) 1 .

. < 1987. 11. 10., 2008. 1. 22., 2021. 1. 5.>

1. 2 , 20 ,
20 ,

2. 가

3. 30 ,

1 (20) 5

1)

4. () 45 ,

3

5.

6. 31 4 . 7 . 9 . 12 . 14 16 , 33 6 7
1 .

33 (1 .) 1 .

. < 2021. 1. 5.>

1. 가

2. . ,
2

3. 2 2

가

4. 2 2

5. 10

6. 5

가

7. ,

,

8. 31 7 16 1 .

34 (2 .) 2 .

. < 1996. 6. 20., 2008. 1. 22., 2021. 1. 5., 2025. 12. 16.>

1. 가

2.

3. 2 2 2

4. 2 , 1.7

1 10

5.

가

6.

7.

8. 가 ,

. ,

9.

10.

11. 2

12.

13.

2 .

1.

2. . ,

3.

4. 31 7 16 , 33 7 8 2

.

35 (3 .) 3 .

. < 1987. 11. 10.>

1. () 20
30 , 10

2. 가

3.
10 , 30
40

4. 가 ,

5.
6. 31 4 10 3 . .
3 .

1. 가 60

2.

3. 31 7 16 , 33 1 4 . 6 1 3
3 .

36 (.) .

. < [2013. 10. 10.](#) >

1. 15 ,

2. ,

3.

4. ,
가

37 (.) .

. < [1996. 6. 20.](#) >

1. 20 , .
30

2. 20

3. 31 1 . 2 . 4 10 . 12 . 14 16

[1996. 6. 20.]

38 (.)

- 1. , 가
- 2. 10 ,
- 20
- 3. 1 2
- 4. .
- 5. 31 1 . 4 . 7 . 8 . 11 12

39 (.)

- 1. .
- 2. ,
- 3. 2

40 (.)

- 1. (2) 10
- 20
- 2. 10
- 3. 1
- 4.

41 ()

. <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42 ()

1996. 6. 20.>

- 1. 1 2
- 2. 2

3. 45 , (가 1.5
1.5) , 1

4. 3 1 ,
가 . ,

5. 2 가

6. 가

43 ()

1. 75 , 3 ()
가 1.5 1.5) , ()
가 1.5 1.5) , 60

2. 42 (3)

44 ()

. <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45 () 24 1
12 . , 가 가 가
1 • 2 • 3 2
12
가 1

46 () 24 1
() ()

8 11 13 . < [1987. 11. 10.](#),

[2016. 1. 6.](#)>

- 1.
- 2.
- 3.

4.

5.

가 가

6.

7.

,

8.

(28 1 3 3)

9

,

30

1.8

9.

10.

1

가

11.

150

100

1

,

12.

13.

1. 가

15

,

2.

50

3.

1

1

3

·

5

·

6

·

9

10

.

47 (

)

24

1

,

46

1

1

·

2

·

5

·

6

10

13

1

.

48 (

)

26

1

13

.

49 <2025. 12. 16.>

50 <2025. 12. 16.>

51 <2025. 12. 16.>

52 <2025. 12. 16.>

53 () 27 1
1 50
6 . < [1996. 6. 20.](#)>

54 () 27 4
15 .
1 (. . . 2
1) ,
50 50 1 가 .
가 15

55 () 27 4
16 .
4 1 , 4
4 1 가 . 가
16

56 (.) 28 3
1 • 2 3 ,
. < [1999. 6. 30., 2006. 3. 10.](#)>

1. 1 「 가 」

2. 2 「 가 」

3. 3 「 가 」

1 • 2 3 ,
. < [1996. 6. 20., 1999. 6. 30., 2006. 3. 10.](#)>
1. 1 「 가 」 .

2. 2 「 가 」

3. 3 「 가 」

57 () 31 1

1. . . 가 4 1

2. 8 9

3. 38 .

4. 39 .

5. 40 .

6. .

7. 24 . 33 . 36 37 .

58 () 31 1

. < 1996. 6. 20., 2025. 12.

16.>

1. . 가 25 1 가

2. . 가 29 44

3. 가 ,

4. 18 4 . 20 5 16 . 17

. 45 .

5. 57 3 7

<2008. 1. 22.>

57 1

59 () 32 1 가

. < 2004. 1. 20.>

1. 1

2. 3

3. 3

1 .< 2004. 1. 2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1 1 1

2. 1 1 2

3

3. 1 2 3

4

가

가

4. 1 3 , . , , , . , .

30

.< 2004. 1. 20., 2013. 10. 10.>

1.

2. 가

3. 2 4

2 3

.< 2004. 1. 20., 2006. 3. 10.>

1. . 가 2

25 1

2. . 가 2

10 1

3. 1 2

4. 「 」 KS A ISO 2859 - 1 1

S - 2(S - 3)

(

)

3

가

60 () 59

1. 5 3

2. 가

1 2

1. 6

2. 4

61 () 59 . < 2016. 1. 6.>

1. 가. 3

3.5

. 3.5 (7 가

) . 가 3.5 , 가

45 5

3 1

, 가 3 1

2.

3. 65 , 가

1 3 8

62 (가) 59 가 .

1. 가

2. 10 75 48

1 2

100 1

63 () 32

. <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6., 2017. 7. 26.>

- 1.
- 2.
- 3. 가
- 4.
- 5.
- 6.
- 7.

64 () 32 2

. < 2013. 10. 10.>

- 1.
- 2.
- 3.
- 4. 가 ()

64 2(.) 35 2 . (

“ . ”) 3 6

. 가

1 . 가 가 ,

1 가 2

3 가

1

1. 35 3 : 2 가가

35 4

2. 35 6 : 5 가가

[2019. 9. 17.]

65 () 36 1
 3 , 4 . 가 ,
 1. 가 ,

2. 가 가

3. 1 2 .
 , ,

4. 가 . .

66 () 40 2 2 .

67 () 41 가
 . .
 . < 1990. 3. 31., 1996. 6. 20.>

1.
 , ,
 2. .
 3. 1 2

68 () 41 .

1. 가 .
 2. . 가 8 29 44

3. . .

68 2(. . .) 42 1 “

1. 3 1 1 가 가
 . . . 가

2. 6 2

3. 6 3

4. 6 4

[2019. 9. 17.]

5

68 3(. .) . . . 가 44 4 . . . 7

가 .

[2019. 9. 17.]

69 (.) 46 6

.

가 가

. < [1990. 3. 31., 1996. 6. 20.](#)>

46 7

.
.

. < [1990. 3. 31., 1996. 6. 20.](#)>

2

46

6 6 가 「 . < [1990. 3. 31., 1996. 6.](#)

[20., 2006. 3. 10.](#)>

[1990. 3. 31., 1996. 6. 20.]

70 (. . . .) 46 2 1 “

”

. < [2016. 11. 29.,](#)

[2023. 5. 16.](#)>

1.

2.

3.

(. . . .)

4. , ,

5. 「 」 16 2

6. 「 」 13

1

46 2 1

16 2

1

. < [2017.](#)

[7. 26.](#)>

[2015. 10. 30.]

70 2() 47 2 가
(“ ”) 1 .

- 1. 3
 - 2. 4
 - 3. 2 3
 - 4. 6 2
 - 5. 6 3
 - 6. 6 4
- 47 2

, 가

2

가

2

[1997. 4. 12.]

71 (. .) 7

가 . < [1990. 3. 31.](#), [1996. 6. 20.](#), [2019. 9. 17.](#)>

6 .

72 () 48 3 . (“ ”)

- 1.
- 2.
- 3.
- 4. .
- 5.
- 6.

73 () (“ ”)
14 ,

[2025. 1. 21.]

74 () 14

14

[2025. 1. 21.]

75 () 72 73 (74) 14

[2025. 1. 21.]

76 () 72 75

1. 72

2. 73

3. 74

4. 75

77 () 가 가 가

. < 1991. 7. 30.>

78 () 58 1 3

. < 1987. 11. 10., 1990. 3. 31., 1996. 6. 20., 2016. 1.

6.>

1.

가. . . : 20

. () . .

. : 10

. . . :

7

. . . :

5

2. 가 7,500 ,

3,000

3. . . . 가 가 100
 1
 4. . 1,000 0.75
 5. 1 5
 6. . 1 10,000 , 2 3
 5,000

79 () 1 . , 가
 12 16 가 ,
 28

. < [1987. 11. 10.](#) >

가

가 2

20

80 ()

. < [1991. 7. 30.](#) >

1
 100 5

7

81 () 63

, , 가 . < [1990.](#)

[3. 31., 1996. 6. 20., 1999. 6. 30., 2015. 10. 30., 2016. 1. 6., 2025. 12. 16.](#) >

1.
2.
3.
- 4.
- 4 2.
5.

6. 1 2 , 1
 6 1 .< 1987. 11. 10., 1999. 6. 30.,
 2015. 10. 30., 2016. 1. 6.>
 1 「 」 5
 .< 2026. 3. 24.>
 [2015. 10. 30.]

82 ()
 . . . , 가
 가
 가 .< 1990. 3. 31., 1991. 7. 30., 1996. 6. 20., 2016. 1. 6., 2020. 12. 31.>

83 () 68
 .< 1990. 3. 31., 1991. 7. 30., 1996. 6. 20., 2001. 3. 31., 2020. 12. 31.>

1. 4 1 가
 .가 (.) (.가) 가

2. 9 1 (.) 가

3. 27 2

4. 42 1 () . .

68 65 가

.< 1990. 3. 31., 1991. 7. 30., 2020. 12. 31.>

68 74 .

.< 1996. 6. 20., 2020. 12. 31.>

83 2() , . (83 가

「 」 23 18 2

, 19 , , 가 , 5 , 6 8

「 」 23

18 2

. < 2020. 12. 31., 2022. 12.

20.>

1. 가· ,

2.

3.

4.

5. 22

6. 43

7. 47

8. 61

9. <2022. 12. 20.>

[2012. 1. 6.]

83 3()

3 (3)

1. 71

: 2017 1 1

2. 81 ,

. ,

가 : 2017 1 1

[2016. 12. 30.]

84 () 74 1 17

.

, . 「 」 14

17 100 50

가 .

, 가 74 1 .<

2020. 12. 31.>

60

, 가

5

1 3 .

.<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08. 11. 26.]

< 11617 ,1985. 2. 2.>

() 1985 2 5 .

(. . 가)

. . 가 1

.

< 12276 ,1987. 11. 10.>

() .

(. 가)

. 가

1 .

< 12962 ,1990. 3. 31.>

() .

() 13 5 2

1990 5 31 . , 13

(() .)

() . 가 1991 2 28

(. 가) .

가 1990 5 31 .

(. .) .

1990 5 31 , . 가

.

< 13435 ,1991. 7. 30.> ()

1 () 1991 7 31 .

2 ()

2 11 9 3 1 “ ” “ ” .
 12 1 6 “ . (” . ”)
)” “ ” .
 26 3 “ . ” “ ” .
 28 1 “ . ” “ ” .
 68 2, 77 , 80 1 “ ” “ ” .
 82 “ . ” “ ” .
 .
 83 1 “ ” “ ” , “ . ” “ ”
 ” , 2 “ . ” “ ” .
 84 2 “ , . ” “ , ” .

3

< 13870 ,1993. 3. 6.> ()

1 ()

2 3

4 () 3*

3(. .)

2 11 “ ” “ ” .

4) <188>

< 15029 ,1996. 6. 20.>

()

(. 가)

1996 8 31

(가 . 가) 가

가

. 가

(2) 가 2 .

() 가

1998 6 30

< 15342 ,1997. 4. 12.>

()

()

< 15598 ,1997. 12. 31.> (

)

1998 1 1 .

< 16437 ,1999. 6. 30.>

< 17185 ,2001. 3. 31.>

< 18237 ,2004. 1. 20.>

()

2004 1 30 .

(

) 59 1 3 2 4

, 3 3

< 19381 ,2006. 3. 10.>

< 19563 ,2006. 6. 29.> (

)

1 () 2006 7 1 .

2 6

7 () 1^

1& . . .
 26 1 1 “ ” “ 가 ” .
 1* 3@
 8

< 20557 ,2008. 1. 22.>

< 20692 ,2008. 2. 29.>()

1 ()
 2 ()
 . . .
 2 11 “ ” “ ” .
 8 5 . 7 . 10 . 11 . 30 . 33 , 9 1 3 .
 2 3 . 2 9 . 2 21 . 3 3 . 4 3 . 5 5 ,
 12 2 , 14 1 3 . 1 5 . 2 , 26 1 1 . 3
 , 30 5 , 41 , 44 , 59 2 4 , 63
 84 4 “ ” “ ” .

< 21127 ,2008. 11. 26.>(.)

< 21214 ,2008. 12. 31.>()

1 () . < >
 2 4
 5 5 () <86>
 <87> . . .
 14 “ ” “ ” .
 <88> <175>

< 23488 ,2012. 1. 6.>(

)

- 1 () . < >
- 2

< 23570 ,2012. 1. 31.>(

)

- 1 () 2012 2 5 . < >
- 2

3 ()

. .
 26 3 2 “ 「 」 ” “ 「 」 ” .

4

< 24419 ,2013. 3. 23.>(

)

- 1 () .
- 2
- 3 ()

. .
 2 11 “ ” “ ” .
 8 5 , 7 , 10 , 11 , 30
 • 33 , 9 1 3 , 2 3 • 9 , 21 ,
 3 3 , 4 3 , 5 5 , 12 2 , 14 1 3 •
 5 , 2 , 26 1 1 , 3 , 30
 5 , 41 , 44 , 59 2 4 , 63 84 4 “
 ” “ ” .

< 24789 ,2013. 10. 10.>

- 1 () .
- 2 ()
- 59 3
- 59 3 30

3 ()
 7 2 3 “ . . ” “ 「 . . .
 」 ” .

< 25050 ,2013. 12. 30.> ()
 2014 1 1 . < >

< 25456 ,2014. 7. 14.> ()
 1 () 2014 7 15 .
 2 4
 5 () 4%
 4^ . .
 2 9 “ 「 」 8 ” “ 「 」 10 ” .
 4& 5)
 6

< 25751 ,2014. 11. 19.> ()
 1 () . < >
 2 4
 5 () <264>
 <265> . .
 8 5 , 7 , 10 , 11 , 30
 . 33 , 9 1 3 , 2 3 . 9 , 21 ,
 3 3 , 4 3 , 5 5 , 12 2 , 14 1 3 .
 5 , 2 , 26 1 1 , 3 , 30
 5 , 41 , 44 , 59 2 4 , 63 84 4 “
 ” “ ” .
 14 “ ” “ ” .
 <266> <418>

< 25836 ,2014. 12. 9.> ()

1 () 2015 1 1 .

2 4

5 ()

. .

9 3 1 “ 「 」 ” “ 「 」 ”

1(

6

< 26518 ,2015. 9. 11.>

2015 9 12 .

< 26611 ,2015. 10. 30.>

1 () 2015 11 2 .

2 ()

가 가 14

3 1 .

가

14 3 3

3 ()

6

4

24

25 14 3 1 가

< 26858 ,2016. 1. 6.>

1 () 2016 1 7 .

2 ()

158 2 3 2 3 (2) “ 「 . .

」 ” “ 「 . . 」 ” .

9 3 “ 「 . . 」 ” “ 「 . .

」 ” .

32 2 9 “ Γ . . 」 ” “ Γ . .
」 ” .

7 2 3 “ Γ . . 」 ” “ Γ . .
」 ” .

40 2 3 “ Γ . . 」 ” “ Γ . .
」 ” .

15 “ Γ . . 」 ” “ Γ . .
」 ” .

19 1 3 “ Γ . . 」 ” “ Γ
. . 」 ”

3 () Γ . .
」

< 27299 ,2016. 6. 30.>(

)

1 () 2016 7 1 . < >

2 15

< 27616 ,2016. 11. 29.>()

1 () 2016 12 2 .

2 ()

. .

70 1 5 “ Γ 」 16 2 ” “ Γ
16 2 ” .

16 2 6 “ Γ 」 2 ” “ Γ

」 2 ” .

3

< 27751 ,2016. 12. 30.>(가

)

- 1 () 2017 1 1 . < >
- 2 12

< 28215 ,2017. 7. 26.>()

- 1 () .
- 2
- 3 () 1(
- 2) . .
- 8 5 , 7 , 10 , 11 , 30
- 33 , 9 1 3 , 2 3 • 9 , 21 ,
- 3 3 , 4 3 , 5 5 , 12 2 , 14 1 3 •
- 5 , 2 , 14 4 1 , 3 , 3 ,
- 26 1 1 , 3 , 30 5 , 41 , 44 ,
- 59 2 4 , 63 , 70 2 84 4 “
- ” “ ” .
- 14 3 2 “ ” “ ” .
- 14 “ ” “ ” .

< 28919 ,2018. 5. 28.>(

8)

. < >

< 30081 ,2019. 9. 17.>

- 1 () 2019 9 19 .
- 2 () 68 2 1
- 3 (.) 68 3
- . . .

4 ()
14 2 2 14 5

< 31349 ,2020. 12. 31.> ()

1 () 2021 1 1 .
2 3
4 () 4@
4# . .
12 1 6 , 26 3 , 26 2 1
, 28 1 , 82 , 83 1 , 2
. , 3 . , 83 2 84 2
“ ” “ . ”
4\$ 4(

< 31380 ,2021. 1. 5.> (473)
. < >

< 33112 ,2022. 12. 20.> (49)

< 33471 ,2023. 5. 16.>
. , 70 1 6 16 2 7 . 8
6 .

< 34488 ,2024. 5. 7.> ()
1 () 2024 5 17 .
2 3
4 () 4&

4* . .
12 1 1 “ ” “ ” , “
” “ ” .

4(<53>
5

< 35228 ,2025. 1. 21.>(78
)

2025 1 31 .

< 35696 ,2025. 8. 5.>()

1 () 2025 8 7 .

2 () 1*

1(. .

9 3 1 “ ” “ 가 . . .
” .

2) 2#

< 35811 ,2025. 10. 1.>(306
)

. ,

< 35905 ,2025. 12. 16.>
2026 1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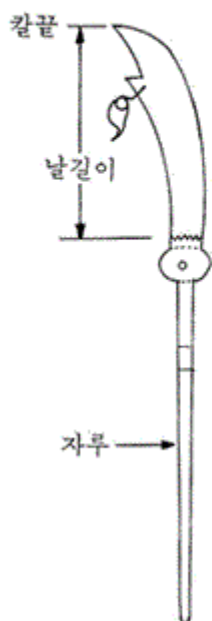
< 36221 ,2026. 3. 24.>(4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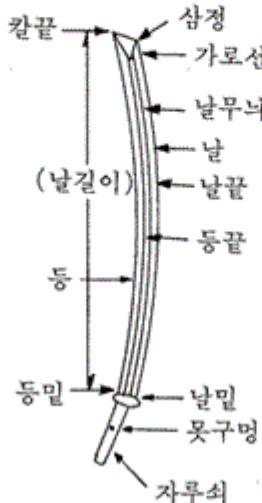
도검의 규격 및 형태(제4조제2항관련)

1. 칼날의 길이 15cm 이상의 도검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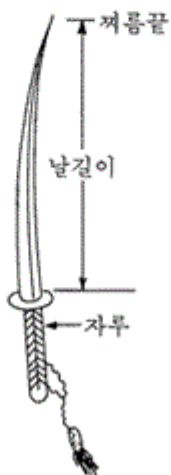
(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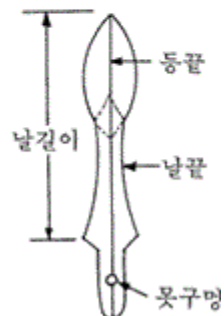
(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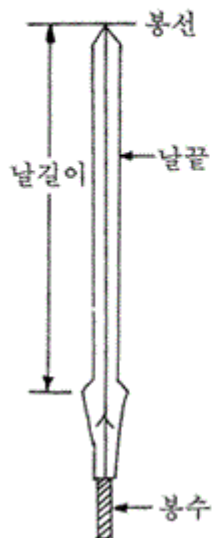
(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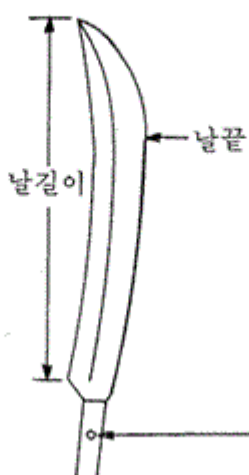
(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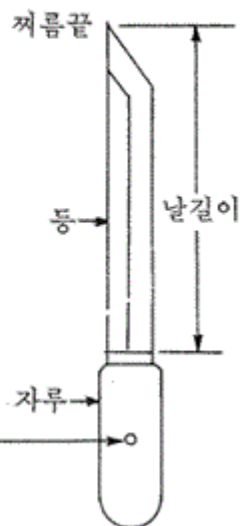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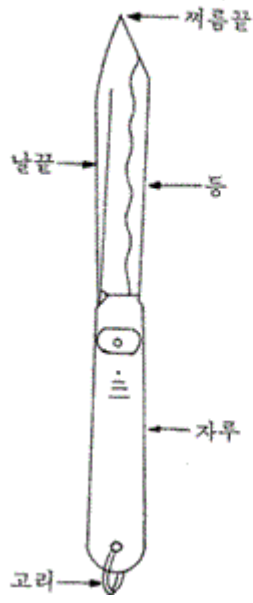
(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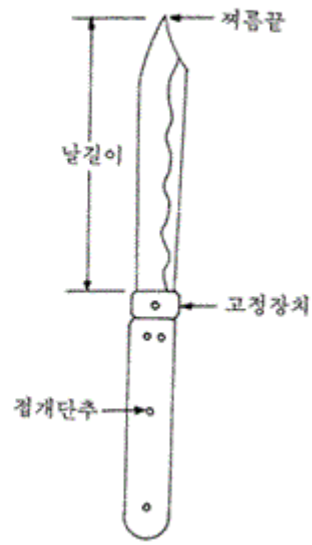
(비수)



2.칼날의 길이 15cm 이하의 도검류
(재크나이프)



(비출나이프)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1996.6.20>

화약류의 환산기준(제6조관련)

화약 및 화공품의 종류	폭약 1톤으로 환산하는 수량
화약	2톤
실탄 또는 공포탄	200만개
신관 또는 화관	5만개
총용뇌관	250만개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	100만개
신호뇌관	25만개
도폭선	50킬로미터
미진동파쇄기	5만개
그 밖의 화공품	당해 화공품의 원료가 되는 화약 2톤 또는 폭약 1톤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의 제조시설 작업장 설비기준

(제8조제2호가목 관련)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의 제조시설 작업장 설비기준

종별	공작설비		검사설비	보관설비
	특정설비	일반설비		
권총	심공드릴링머신 (구멍 뚫는 기계) 총신리마반 총신라이플반 약실선반	선반 드릴링머신 후라이스반 연마반 형삭반	경도(단단한 정도) 시험기 충격치시험기 인장강도측정기 부록게이지 정밀비교측정기 투영기 용수철시험기	철제금고 또는 철제캐비닛, 총 기격납고
소총	심공드릴링머신 총신리마반 총신라이플반 총신랩프반 약실선반 총신선반	선반 드릴링머신 후라이스반 연마반 형삭반 입삭반 중고반	경도시험기 충격치시험기 인장강도측정기 부록게이지 정밀비교측정기 투영기 용수철시험기	철제금고 또는 철제캐비닛, 총 기격납고
기관총	심공드릴링머신 총신리마반 총신라이플반 총신랩프반 약실선반 후라이스반 전기용접장치	선반 드릴링머신 후라이스반 연마반 형삭반	경도시험기 충격치시험기 인장강도측정기 부록게이지 정밀비교측정기 투영기	철제금고 또는 철제캐비닛, 총 기격납고
소구경포	총신중고반 심공드릴링머신 총신리마반 포신라이플반 중고반 후라이스반	선반 드릴링머신 연마반 입삭반 형삭반 평삭반 전기용접장치	금속현미경 경도시험기 충격치시험기 인장강도측정기 부록게이지 정밀비교측정기 투영기	포격납고
중구경및	포신중고반 포신라이플반	선반 드릴링머신	용수철시험기 포공측정기	포격납고

대구 경포	포신선반	후라이스반 연마반 입삭반 형삭반 평삭반	초공검사기	
업 총 · 산업 용총	심공드릴링머신 총신리마반 총신선반 총신연마반 약실선반	선 반 드릴링머신 입삭반 밀링머신 형삭반 용접장치	경도시험기 정밀비교측정기 확대경 장력측정기 일반검사공구	총기격납고
공 기 총	총신라이플반	선 반 드릴링머신 입삭반 밀링머신 용접장치	정밀비교 측정기 장력측정기 고압공기충전기 탄속시험기(시사대) 일반검사공구	총기격납고
도검	단조(鍛造: 금속 을 두들기거나 늘 려서 필요한 형체 로 만드는 일을 말한다)설비 (대장간) 열처리 설비 (화독·물통)	드릴링머신 후라이스반 구라인다 바이즈 도금설비 용접설비	경도시험기 충격치시험기 인장강도측정기	도검격납고
탄 알 및 산 탄 (납 알)	제련로 낙하탑 (장구탄의 경우 제외)	납제형기 납신안정기 연마기 납알선별기 광택기 열처리장치	경도시험기 중량시험기 탄알치수검사기	철제캐비닛, 실 포저장고
분사기	금형 및 부품제작 절삭가공기	선반 밀링머신 드릴링머신용접 기 건조기(분말분 사기의 경우 에 한한다)	내압시험기 약제분석기 전자저울 일반검사공구	철제금고 또는 철제캐비닛, 분 사기 격납고

		분말약제가공설비(분말분사기의 경우에 한한다) 내압충전기(액체분사기의 경우에 한한다) 후드 각인 장치		
전자 충격기	초음파용착기 및 콤프레서 진공함침기	직류전류전압 시험기 오실로스코프 디핑기 엘·씨·알메타 피스톤브리지 권선기 건조기	절연시험기 고압측정봉 다기능시험기	철제금고 또는 철제캐비닛 전자충격기격납고
조준경	렌즈연마기 코팅기 조정기 질소가스주입기 금형 및 부품제작 절삭가공기	선 반 밀링머신 드릴링머신 콤프레서 및 스프레이건건조기	방수시험기 습기시험기 충격시험기 십자선검사기 초점조정현미경	철제금고 또는 철제캐비닛, 조준경격납고
석공	고주파접착기 또는 열건조기	선반 그라인더(절삭·연마기) 벤치레스 씨빙기 소형밀링머신	한계점 시험기 압력게이지 정밀비교측정기	철제금고 또는 철제캐비닛(석공 격납고)

2. 총포의 개조·수리시설 작업장 설비기준

종별	공작 설비		검사 설비	보관설비
	일반 설비(이상)			
총포	드릴링머신(공기총·산업총의 경우 제외) 그라인더 전기드릴 핸드 바이스(hand vise: 가공물 고	경우	압력측정기 부록게이지 (공기총·산업총의 경우 제외)	철제금고 또는 캐비닛, 총기격납고

정을 위한 기구를 말한다)		
----------------	--	--

■ 송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위험공실등과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8조제5호관련)

구분	1				2			
	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글리콜 또는 그 혼합물의 위험공실				폭약탄약의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다른 란에 기재한 위험공실 및 화약류 일시저치장을 제외한다)			
	제1종 보안 물건	제2종 보안 물건	제3종 보안 물건	제4종 보안 물건	제1종 보안 물건	제2종 보안 물건	제3종 보안 물건	제4종 보안 물건
보안물건의 공류								
단위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정체량(폭약) 단위는 킬로그램								
4.000	550	380	250	130	380	290	190	95
3.500	490	360	240	120	360	270	180	90
3.000	460	350	230	120	350	260	170	85
2.500	430	330	220	110	330	240	160	80
2.000	400	300	200	100	300	230	150	75
1.500	370	270	180	90	270	210	140	70
1.000	320	240	160	80	240	180	120	60
900	310	230	150	75	230	170	120	55
800	300	220	150	75	220	170	110	55
700	280	210	140	70	210	160	110	55
600	270	200	130	65	200	150	100	50
550	260	200	130	65	200	150	100	50
500	250	190	130	65	190	140	95	45
450	250	180	120	60	180	140	90	45
400	240	180	120	60	180	130	90	45
350	230	170	110	55	170	130	85	40
300	210	160	110	55	160	120	80	40
250	200	150	100	50	150	110	75	35
200	190	140	95	45	140	110	70	35
150	170	130	85	40	130	95	65	30
100	150	110	75	35	110	85	55	25
80	140	100	70	35	100	75	50	25
60	130	95	60	30	95	70	45	25
40	110	80	55	25	80	60	40	20
30	100	75	50	25	75	55	35	20

구분	3				4			
	화약·탄약의 약통, 약포 또는 특수 탄의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 치장				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글리콜 및 과염소산염을 함유하지 아니하거 나 니트로화합물이 10퍼센트 이하 인 초안폭약의 위험공실 또는 화 약류 일시저치장			
	제1종 보안 물건	제2종 보안 물건	제3종 보안 물건	제4종 보안 물건	제1종 보안 물건	제2종 보안 물건	제3종 보안 물건	제4종 보안 물건
정체량(폭약)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4.000	290	210	140	70	250	190	130	65
3.500	270	200	140	70	240	180	120	60
3.000	260	190	130	65	230	170	120	55
2.500	240	180	120	60	220	160	110	55
2.000	230	170	110	55	200	150	100	50
1.500	210	150	100	50	180	140	90	45
1.000	180	140	90	45	160	120	80	40
900	170	130	85	45	150	120	75	40
800	170	130	85	40	150	110	75	35
700	160	120	80	40	140	110	70	35
600	150	110	75	35	130	100	65	35
550	150	110	75	35	130	100	65	30
500	140	110	70	35	125	95	65	30
450	140	100	70	35	120	90	60	30
400	130	100	65	35	120	90	60	30
350	130	95	65	30	110	85	55	30
300	120	90	60	30	110	85	55	25
250	110	85	55	30	100	75	50	25
200	110	80	50	25	95	70	45	25
150	95	70	45	25	85	65	40	20
100	85	60	40	20	75	55	35	20
80	75	60	40	20	70	50	35	20
60	70	50	35	20	70	50	35	20
40	70	50	35	20	70	50	35	20
30	70	50	35	20	70	50	35	20

구분 보안물건의 종류 단위 정체량(폭약) 단위는 킬로그램	5				6			
	니트로기 3 이상을 함유한 니트로 화합물 또는 펜타에리스캇테트라 나이트레이트의 초화공실				수분 또는 알콜분이 10퍼센트를 넘는 기폭약의 위험공실 등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			
	제1종 보안 물건	제2종 보안 물건	제3종 보안 물건	제4종 보안 물건	제1종 보안 물건	제2종 보안 물건	제3종 보안 물건	제4종 보안 물건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4.000	100	100	50	50				
3.500	100	100	50	50				
3.000	100	100	50	50				
2.500	100	100	50	50				
2.000	100	100	50	50				
1.500	100	100	50	50				
1.000	100	100	50	50				
900	50	50	25	25				
800	50	50	25	25				
700	50	50	25	25				
600	50	50	25	25				
550	50	50	25	25				
500	50	50	25	25				
450	50	50	25	25	180	140	90	45
400	50	50	25	25	180	130	90	45
350	50	50	25	25	170	130	85	40
300	50	50	25	25	160	120	80	40
250	50	50	25	25	150	110	75	35
200	50	50	25	25	140	110	70	35
150	50	50	25	25	130	95	65	30
100	50	50	25	25	110	85	55	25
80	50	50	25	25	100	75	50	25
60	50	50	25	25	95	70	45	25
40	50	50	25	25	80	60	40	20
30	50	50	25	25	75	55	35	20

구분	7				8			
	수분 또는 알콜분이 10퍼센트 이하의 기폭약 또는 화관신관·공업뇌관·전기뇌관·도폭선·폭발천공기 그밖의 화공품(다른 란에 기재된 화공품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의 일시저치장				실포·공포·총용뇌관·신호뇌관·도화선 또는 전기도화선의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도화선 또는 전기도화선만의 화약류 일시저치장을 제외한다)			
	제1종 보안 물건	제2종 보안 물건	제3종 보안 물건	제4종 보안 물건	제1종 보안 물건	제2종 보안 물건	제3종 보안 물건	제4종 보안 물건
정체량(폭약)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180	140	90	45
900					170	130	85	45
800					170	130	85	40
700					160	120	80	40
600					150	110	75	35
550					150	110	75	35
500					140	110	70	35
450					140	100	70	35
400					130	100	65	35
350					130	95	65	30
300	160	120	80	40	120	90	60	30
250	150	110	75	35	110	85	55	30
200	140	110	70	35	110	80	50	25
150	130	95	65	30	95	70	45	25
100	110	85	55	25	85	60	40	20
80	110	75	50	25	75	60	40	20
60	95	70	45	25	70	50	35	20
40	80	60	40	20	70	50	35	20
30	75	55	35	20	70	50	35	20

구분	9	10			
	도화선 또는 전기도화선만의 화약류 일시저치장 또는 일광건조장	폭발시험장 또는 폐약 소각장			
	단위	제1종 보안물건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제4종 보안물건
정체량(폭약)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4.000	10				
3.500	10				
3.000	10				
2.500	10				
2.000	10				
1.500	10				
1.000	10				
900	10				
800	10				
700	10				
600	10				
550	10				
500	10				
450	10				
400	10				
350	10				
300	10				
250	10				
200	10				
150	10				
100	10				
80	10				
60	10	120	90	60	30
40	10	100	75	50	25
30	10	80	60	40	20

구분	11				12			
	연소시험장				발사시험장			
	제1종 보안물건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제4종 보안물건	제1종 보안물건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제4종 보안물건
보안물건의 종류								
단위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정체량(폭약) 단위는 킬로그램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900								
800								
70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120	90	60	30				
200	120	90	60	30				
150	120	90	60	30				
100	120	90	60	30				
80	120	90	60	30				
60	120	90	60	30				
40	120	90	60	30	120	90	60	30
30	120	90	60	30	120	90	60	30

■ 송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꽃불류등의 위험공실과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8조제5호관련)

구분	1				2			
	폭발의 위험있는 공실(장난감용 꽃불류의 폭발의 위험있는 공실을 제외한다).일광건조장 또는 폐약소각장				장난감용 꽃불류의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공실 등			
	제1종 보안 물건	제2종 보안 물건	제3종 보안 물건	제4종 보안 물건	제1종 보안 물건	제2종 보안 물건	제3종 보안 물건	제4종 보안 물건
보안물건의 공류								
단위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정체량(폭약) 단위는 킬로그램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130	100	65	35				
250	130	95	60	30				
200	120	85	60	30				
180	110	85	55	30				
160	110	80	55	25				
140	100	75	50	25				
120	100	75	50	25				
100	90	70	45	25				
90	90	65	45	20				
80	85	65	45	20				
70	80	60	40	20				
60	80	60	40	20				
55	75	55	40	20				
50	75	55	35	20				
45	70	55	35	15				
40	70	55	35	15				
35	65	50	30	15				
30	60	50	30	15	60	45	30	15
25	60	45	30	15	60	45	30	15
15	60	45	30	15	55	40	25	15
15	60	45	30	15	48	36	24	12

구분	3				4			
	발화의 위험이 있는 공실등(장난감용 꽃불류의 발화의 위험있는 공실을 제외한다) 또는 일광건조장				장난감용 꽃불류의 발화의 위험이 있는 공실(조립포장·수함·도약압출 또는 질산염을 주로하는 화약의 배합공실을 제외한다)			
	제1종 보안 물건	제2종 보안 물건	제3종 보안 물건	제4종 보안 물건	제1종 보안 물건	제2종 보안 물건	제3종 보안 물건	제4종 보안 물건
보안물건의 공류								
단위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정체량(폭약) 단위는 킬로그램								
1.000								
900								
800								
700								
600								
500	130	95	65	30				
400	120	90	60	30				
300	110	80	55	25				
250	100	75	50	25				
200	95	70	45	20				
180	90	65	45	20				
160	85	65	45	20				
140	85	60	40	20				
120	80	60	40	20				
100	75	55	35	15				
90	70	55	35	15				
80	70	50	35	15				
70	65	50	30	15				
60	60	45	30	15				
55	60	45	30	15				
50	60	45	30	15	60	45	30	15
45	60	45	30	15	55	40	30	15
40	60	45	30	15	55	40	25	15
35	60	45	30	15	50	40	25	15
30	60	45	30	15	50	36	25	15
25	60	45	30	15	48	36	24	12
15	60	45	30	15	48	36	24	12
15	60	45	30	15	48	36	24	12

구분	5				6			
	장난감용 꽃분류의 포장조립수합·도약·압출하는 공실 또는 질산염을 주로하는 화약의 배합공실				장난감용 꽃분류의 원료 화약류 일시저치장			
	제1종 보안 물건	제2종 보안 물건	제3종 보안 물건	제4종 보안 물건	제1종 보안 물건	제2종 보안 물건	제3종 보안 물건	제4종 보안 물건
보안물건의 종류								
단위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정체량(폭약) 단위는 킬로그램								
1.000					120	90	60	30
900					120	85	55	30
800					110	85	55	25
700					110	80	55	25
600					100	75	50	25
500					95	70	45	25
400					90	65	45	20
300					80	60	40	20
250					80	60	40	20
200					80	60	40	20
180					80	60	40	20
160					80	60	40	20
140					80	60	40	20
120					80	60	40	20
100	55	40	25	15	80	60	40	20
90	55	40	25	15	80	60	40	20
80	50	40	25	10	80	60	40	20
70	50	35	25	10	80	60	40	20
60	45	35	25	10	80	60	40	20
55	45	35	20	10	80	60	40	20
50	45	35	20	10	80	60	40	20
45	40	30	20	10	80	60	40	20
40	40	30	20	10	80	60	40	20
35	40	30	20	10	80	60	40	20
30	40	30	20	10	80	60	40	20
25	40	30	20	10	80	60	40	20
15	40	30	20	10	80	60	40	20
15	40	30	20	10	80	60	40	20

모의총포 등의 기준(제1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모의총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모의총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 1) 발사하는 물체(이하 "발사체"라 한다)의 크기가 지름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 2) 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 3)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
 - 4)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 5)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2.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발사장치의 기준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사장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격발장치(擊發裝置, 방아쇠를 당기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발사체를 발사하도록 하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
- 2) 화살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된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목에 따른 발사장치에서 제외한다.

-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인명구조용으로

-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 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 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명구조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에 따른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대응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 5) 농림용·축산용·수산용 또는 그 밖에 산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제27조관련)

저장 또는 사용자 등의 구분	1	2		3		4	5
	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하여 저장하는 경우	토목 그 밖의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저장하는 경우 (화약류저장소가 있는 자에 한함)	6월 이내 종료하는 사업의 경우	그 밖의 사업인 경우	장난감용 꽃불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위하여 화약류를 사용하는 자가 저장하는 경우	총포소지가 수렵 또는 사격을 위하여 저장하는 경우
화약류의 종류					불꽃을 내는 것	폭발음을 내는 것	
화약 (kg)	10	5	2			2	0.2
폭약 (kg)	5	3	1			1	
공업용 뇌관 및 전기뇌관 (개)	500	100	50				
도폭선 (m)	300	100	50				
도화선 (m)	1,000	1,000	100				
전기도화선 (m)	2,000	2,000	100				
총용뇌관(개)	3,000						200
실탄 (개)	20,000					20,000	500(수렵용의 경우 200)
공포탄(타정총용 공포탄을 제외한다) (개)	20,000					20,000	500
약액주입용 약포(개)	200						
타정총용 공포탄(개)	100,000	80,000	50,000				
미진동파쇄기 (개)	40	40	3				
출발사용 로켓(개)	50	50	25				
광쇄기폭발			50				

천공기(개)							
폭발정(개)			1,000				
유정용화공품 (개)	1,000		100				
신호뇌관(개)	100						
철도차량용· 선박용·항공 기용 화공품 (개)	1,000						
신호염관· 신호화전(개)	10						
꽃불류(장난감 용 꽃불류제외) (kg)	25		25				
장난감용 꽃불류 (kg)				500	250		
화약을 장전 하지 아니한 총용뇌관이 달린 화약통(개)	10,000						800
그 밖의 화공품(kg)	50	50	25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1996.6.20>
화약류저장소별로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제28조제3항관련)

저장소의 종 별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	동일 저장소 내의 저장금지화약류
1급 저 장 소	1. 화약(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의 원료용 화약을 제외한다) 2. 폭약(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의 원료용 폭약을 제외한다) 3. 화공품(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를 제외한다) 4.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와 이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	1. 화약 또는 폭약과 화공품(공포탄·미 진동파쇄기·도폭선· 전기도화선 및 도 화선과 포장된 실 탄제외)을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여 서는 아니된다. 2. 신호염관·신호화 전 및 꽃불류와 이 의원료용 화약 및 폭약은 동일한 저 장소 내에 다른 화 약류와 함께 저장 할 수 없다.
2급 저 장 소	1. 화약(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의 원료용 화약을 제외한다) 2. 폭약(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의 원료용 폭약을 제외한다) 3. 도폭선·전기도화선·도화선 및 미진동파 쇄기 4. 공업뇌관·전기뇌관 및 타정총용공포탄	화약 또는 폭약과 공 업뇌관·전기뇌관·타 정총용공포탄 및 미 진동파쇄기를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여서 는 아니된다.
3급 저 장 소	1. 화약(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의 원료용 화약을 제외한다) 2. 폭약(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의 원료용 폭약을 제외한다) 3. 화공품(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를 제외한다) 4.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와 이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	1. 화약 또는 폭약과 화공품을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 만, 저장소 내에 격벽을 설치하여 이를 저장할 수 있 다. 2. 신호염관·신호화 전 및 꽃불류와 이 의원료용 화약 및 폭약은 동일한 저 장소 내에 다른 화 약류와 함께 저장 할 수 없다
수중저장소	1. 무연화약	무연화약과 제2호의

	2. 트리니트로트루엔, 트리메치렌, 트리니트로아민 및 이들의 혼합물과 이들을 주로 하는 폭약	화약류를 동일한 저장소 내에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실탄저장소	실탄 및 공포탄	
꽃 불 류 저 장 소	1. 신호염관·신호화전·꽃불류·전기도화선 및 시동약 2. 신호염관·신호화전·꽃불류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미진동파쇄기	
장난감용꽃 불류저장소	장난감용꽃불류	
도 화 선 저 장 소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간이저장소	1. 타정총용공포탄 2. 화약·폭약·도화선·공업뇌관 및 전기뇌관 3.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와 이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	3급저장소에 준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1996.6.20>
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30조제1항관련)

구분	보안물건의 종류 및 보안거리				저장화약류의 수량	
	제 1 종 보안물건	제 2 종 보안물건	제 3 종 보안물건	제 4 종 보안물건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1급저장소 · 2급저장소 또는 실험장소	550	480	270	170	폭약 40톤 (이하)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무제한
	520	460	260	160	35	
	500	440	250	160	30	
	470	410	230	150	25	
	440	380	220	140	20	
	430	370	210	130	19	
	420	370	210	130	18	
	420	360	210	130	17	
	410	350	200	130	16	
	400	350	200	120	15	
	390	340	190	120	14	
	380	330	190	120	13	
	370	320	180	110	12	
	360	310	180	110	11	
	340	300	170	110	10	
	330	290	170	100	9	
	320	280	160	100	8	
	310	270	150	95	7	
	290	250	150	90	6	
	280	240	140	85	5	
260	220	130	80	4		
230	200	120	70	3		
200	180	100	60	2		
실험장소	160	140	80	50	1	
	140	120	70	45	0.7	
	130	110	65	40	0.5	
	110	95	55	35	0.3	
수중저장소	200	200	100	100	200	
	100	100	50	50	50	

3 급 저 장 소	10	10	10	10	폭약 25kg 이하, 화약 50kg 이하, 공업용 뇌관· 전기 뇌 관 및 신호 뇌 관 10만개 이하, 총용 뇌관 10만 개 이하, 실 탄 및 공포 탄 6만개 이하, 도폭 선 1,500미 터 이하, 신 관·화관 3만 개 이하	도 화 선 및 전 기 도 화 선 무 제 한
꽃 불 류 저 장 소	150	110	75	35	화약 또는 폭약 2,000 kg 이하	도 화 선 및 전 기 도 화 선 무 제 한
	140	100	70	35	1,700	
	130	100	65	35	1,400	
	120	90	60	30	1,100	
	110	85	55	30	800	
	100	80	50	25	700	
	90	70	45	20	500	
	80	60	40	20	300	
장 난 감 용 꽃 불 류 저 장 소	7	7	7	7	2,000	
도 화 선 저 장 소	5	5	5	5		도 화 선 및 전 기 도 화 선 무 제 한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1996.6.20>

저장소와 보안물건 사이에 흠독을 쌓은 경우의 보안거리(제30조제3항관련)

구 분	보안물건의 종류 및 보안거리			저장화약류의 수 량
	제 2 종 보안물건	제 3 종 보안물건	제 4 종 보안물건	
	미터 이상	미터 이상	미터 이상	
1급저장소·2급저장소 및 실탄저장소	340	170	140	폭약 40톤(이하)
	330	160	130	35
	310	160	130	30
	290	150	120	25
	270	140	100	20
	270	130	100	19
	260	130	95	18
	260	130	95	17
	250	130	95	16
	250	120	90	15
	240	120	90	14
	240	120	85	13
	230	110	85	12
	220	110	80	11
	220	110	80	10
	210	100	75	9
	200	100	75	8
	190	85	70	7
	180	90	65	6
	170	85	65	5
	160	80	60	4
	140	70	50	3
	130	60	45	2
	100	50	40	1
90	45	35	0.7	
80	40	30	0.5	
65	35	25	0.3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무제한

꽃 불 류 저 장 소	75	35	30	화약 또는 폭약 2,000kg(이하)	
	70	35	30	1,700	
	65	35	25	1,400	
	60	30	25	1,100	
	55	30	25	900	
	50	25	20	700	
	45	20	20	500	
	40	20	20	300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저장소의 지반의 두께기준(제33조제5호관련)

저장하는 폭약	지 반 의 두께	저장하는 폭약	지 반 의 두께
톤(이하)	미터(이상)	톤(이하)	미터(이상)
40	29.0	12	17.0
35	28.0	11	16.5
30	26.0	10	15.5
25	24.0	9	15.0
20	21.5	8	14.0
19	21.0	7	13.0
18	20.5	6	12.0
17	20.0	5	11.0
16	19.5	4	9.5
15	19.0	3	8.0
14	18.0	2	6.0
13	17.5	1	3.5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2급저장소의 상호간의 거리기준(제34조제4호관련)

저장하고자 하는 폭약	저장소상호간의 거리	비 고
톤(이하)	미터(이상)	저장하는 폭약의 양은 저장소의 저장량 중 가장 많은 양을 저장한 저장소의 저장량을 기준으로 한다.
10	33	
9	32	
8	30	
7	29	
6	28	
5	26	
4	24	
3	22	
2	19	
1	15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개정 1996.6.20>

화약류저장소 및 화약류저장량(제45조제1항관련)

저장소의 종류 화약류 의종류	1 급 저장소	2 급 저장소	3 급 저장소	수 중 저장소	실 탄 저장소	꽃불류 저장소	장난감 용꽃불 류저장 소	도화선 저장소	간 이 저장소
화 약	80톤	20톤	50kg	400톤	/	/	/	/	30kg
폭 약	40톤	10톤	25kg	200톤	/	/	/	/	15kg
공업뇌관및 전기뇌관	4,000 만개	1,000 만개	1만개	/	/	/	/	/	5,000 개
신 호 뇌 관	1,000 만개	/	1만개	/	/	/	/	/	5,000 개
도 폭 선	2,000 km	500 km	1,500 m	/	/	/	/	/	1,000 m
총 용 뇌 관	5,000 만개	/	10만개	/	/	/	/	/	30,000 개
실탄및공포탄	8,000 만개	2,000 만개	6만개	/	8,000 만개	/	/	/	30,000 개
신관및화관	200 만개	/	3만개	/	/	/	/	/	10,000 개
미 진 동 파 쇠 기	400 만개	100 만개	1만개	/	/	25만개	/	/	300개
신호염관·신 호화전 및 꽃불류와 이 의 원료용화 약 및 폭약	80톤	/	100kg	/	/	5톤	/	/	50kg
장 난 감 용 꽃 불 류	/	/	/	/	/	/	10톤	/	/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	/	무제한	/	무제한	10,000 m
타 정 총 용 공 포 탄	8,000 만개	2,000 만개	30,000 개	/	8,000 만개	/	/	/	30,000 개

(주) 위의 저장량은 최대저장량을 뜻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1996.6.20>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
(제48조관련)

화 약 류 구 분		수 량	
화 공 품	총 용 뇌 관	10만개	
	포경용뇌관·포경용화관	3만개	
	실 탄	1개당 장약량 0.5그램이하	10만개
	공포탄	1개당 장약량 0.5그램이상	5만개
	도 폭 선		1,500미터
	폭 발 천 공 기		600개
	미 진 동 파 쇠 기		5,000개
	꽃 불 류	장 난 감 용 꽃 불 류	500kg
		기 타 의 꽃 불 류	150kg
		상 기 이 외 의 화 공 품	25kg
비 고	이 표에서 정한 다른 종류의 화약류를 동시에 운반할 경우의 수량은 각 구분마다 화약류의 운반하려는 수량을 각각 당해 구분에 정한 수량으로 나눈 수를 합한 수가 1이 되는 수량으로 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삭제 <2025. 12. 16.>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제54조제1항관련)

구 분		제조수량	제조보안책임자의 자격
제조(변형 및 가공 제외)	화약 및 폭약(초유폭약 및 기폭약 제외)	1일 1톤 이상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1일 1톤 미만	2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초 유 폭 약	1일 7톤 이상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1일 7톤 미만	2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기 폭 약	1일 50kg 이상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1일 50kg 미만	2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화공품(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를 제외)		2급 또는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	1일 300kg 이상	2급 또는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1일 300kg 미만	3급·2급 또는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변형 및 가공	화약·폭약 및 화공품(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 제외)	1일 1톤 이상
1일 1톤 미만			2급 또는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			3급·2급 또는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득자
비고	①신호염관·신호화전 또는 꽃불류만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원료를 1일 50kg에 미달하는 화약 또는 폭약(기폭약을 제외한다)을 제조할 경우에는 신호염관·신호화전 또는 꽃불류만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②1일 50kg을 초과하여 화약 또는 폭약(기폭약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제조소에서 이를 원료로 하여 신호염관·신호화전 또는 꽃불류만을 제조할 경우에는 3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변형 및 가공란중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를 제외한 화공품은 그 원료가 되는 화약 또는 폭약의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제55조관련)

구 분	저장또는사용합계량	관 리 보 안 책 임 자 의 자 격
화약류저장소(꽃불류저장소·장난감용꽃불류저장소 및 도화선 저장소를 제외)의 설치자	연중 40톤 이상의 폭약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연중 40톤 미만의 폭약	2급 또는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꽃불류저장소·장난감용꽃불류저장소 또는 도화선 저장소의 설치자		2급 또는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사 용 자	월중 2톤이상의 화약 또는 폭약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월중 50킬로그램 이상 2톤미만의 화약 또는 폭약	2급 또는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월중 50킬로그램 미만이나 6월이상 장기 사용시	3급·2급 또는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p>비고 : 사용자는 화약류사용장소마다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화약류사용장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에 있어 그 화약류사용장소의 상호간의 거리 및 화약류의 사용량으로 보아 1인으로 가능하거나 그 화약류사용장소의 수보다 적은 수의 관리책임자로서 관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밤낮을 계속하여 작업하는 사용장소에는 2인이상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p>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의2] <개정 2025. 12. 16.>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제70조제2항 관련)

보유기관	보유내용	근거 법조문
1.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료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2. 병무청장	징병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한 자료	「병역법」 제12조 및 제14조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정신질환으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입원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및 정신질환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

<p>8.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p>	<p>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또는 정신발육지연, 뇌전증으로 인한 의료급여 대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p>	<p>「의료급여법」 제11조,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p>
------------------------	---	---

※ 비고

위 표에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관의 보유내용 중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마약류 등 관련 장애(니코틴 관련 장애는 제외한다), 알코올 관련 장애, 뇌전증 등에 관한 정보로 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19. 9.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4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총 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 총격기	석궁	모의 총포 등
		권총, 소총	권총, 소총 외의 총						
1.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화약류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 제1호				150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모의총포 등 제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 제1호								150
3.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총포 등을 휴대·운반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 제2호	30	20	10		10	10	10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총포의 보관·휴대 또는 운반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제1항 제2호	20	10						
5.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폐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 제1호				100				
6.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 폐기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 제3호				100				
7.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제1항 제4호				30				
8.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해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 제1호				100				
9.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화약류 안정도시험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법 제74조제1항 제5호				100				

로 보고한 경우									
10.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 미달 화약류를 폐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2호				150				
11.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화약류를 양도·폐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2호				100				
1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도난·분실(총포는 제외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1호			20	50	20	20	20	
13.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2호	100	100	50	100	50	50	50	
14.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2호	100	100	50	100	50	50	50	
15.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 사용자의 자체안전교육계획 수립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3호				100				
16.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5호				50				
17.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해예방 등을 위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소지 외의 허가를 받은 경우 나.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5호	30	20	15	30	15	15	15	
		15	10	10	15	10	10	10	
18.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총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5호	30	20						
19.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총포 등 소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6호	50	20	10	30	10	10	10	
20. 법 제63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지	법 제74조제1항제2호	70	50	50	70	50	50	50	

않은 경우									
21.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4 조제1항 제2호	50	25	25	50	25	25	25	
22.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 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가. 소지 외의 허가·면허 를 받은 경우 나.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74 조제1항 제2호	50	30	20	50	20	20	20	
23. 법 제66조에 따른 폐업 · 휴업 등 신고를 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4 조제1항 제1호	50	30	30	50	30	30	30	



[2026. 1. 8.] [602 , 2026. 1. 8.,]

() 02 - 3150 - 1361

1 () 「 . . 」 . < 1990. 4. 2., 2006. 2. 22., 2009. 9. 30., 2016. 1. 12.>

2 () 「 . . 」 (“ ”) 3 1 . < 1989. 3. 14., 1990. 4. 2., 1996. 7. 29., 1999. 7. 15., 2001. 4. 12., 2004. 2. 2., 2006. 2. 22., 2009. 9. 30., 2016. 1. 12., 2021. 12. 31.>

- 1. . . .
- 2. .
- 3. 3 (5.5
- 4. 6.4) (가 . 가)
- 가. 가 1 180

. <1996. 7. 29.>

. 500
. 80 120

. 2 2 , 2 2

. 1 ,

. . . . (KS)D3752

SM45C

. <2004. 2. 2.>

1

3 1 3

2

.< 2004. 2. 2.>

2 2() 6 2

. , 9 3 1

. < 1991. 9. 19., 1997. 4. 16., 1999. 7. 15., 2004. 11.

1.,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가.

. 가

가

. , 가

. 5 .

. 가

. 가 가 가 17

. 120 ,

. (2)

2.

가.

. 가 가 가

가 1 8 . , 가

1 . .

. 1 15 (가 1

20)

. (2)

, 7 . , 10

.< 2004. 11. 1.>

[1990. 4. 2.]

2 3() 6 3

. < 1997. 4. 16.>

1.

2. (2)

2 3

[1990. 4. 2.]

2 4() 6 4

1.

2.

2 4

[1996. 7. 29.]

3 <2004. 2. 2.>

4 () 「 . . 」 (“ ”) < 2004. 2. 2., 2009. 9. 30., 2016. 1. 12., 2021. 12. 31.>

1.

가.

15

, 가 10

10

, 가

10 (30 15)

가

10

가

0.5

2.

가.

4 (

3.9 , 0.1)

4 (3.9

, 0.1)

. 1 (0.9 , 0.1)

3.

가.

2

0.5 , 1.5

.

1.5

.

1 (0.9 ,

0.1)

1

4.

가.

가 0.5 ,

2

.

가

2 (1.9

, 0.1)

.

1.5

5.

가.

(

)

10

.

1

, 15

10

6.

가.

1

,

0.12

(

)

.

(

)

4

1

, 0.05

(

)

.

1

1

0.08

.

0.05

.

4.5

,

1

0.01

3.5

,

0.7

0.04

. () 4 20
1 가 1 , 0.05

7.

가. 15
5

8.

5

9.

15

10.

()

0.18

11.

15

1

.<

[1999. 7. 15., 2004. 2. 2.>](#)

1.

가 180

2.

가 5

3.

10

4.

가 5

5.

가 10

85

6.

()

[

2004. 2. 2.]

4 2()

2 7

(裝藥銃砲)

1. “ ”

“ KOREA ”

2.

3.

(2 , 2

6) 10

1 3 2 5 1 ()

가

20

가

[

2016. 1. 12.]

4 3(가)

3 2 “ ”

1.

가.

(BAM: Bundesanstalt für Materialforschung und-prüfung)

.

(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CE: Conformité Européenne)

. 가

2. 가 , 가

가

가 . .

[2019. 9. 19.]

5 (. . . . 가) 4 1

2

(“ ”) . 가 가

1 가 가

. < 1990. 4. 2., 1991. 9. 19., 1996. 7. 29., 2004.

2. 2., 2020. 12. 31.>

1 가

. < 1989. 3. 14., 1990. 4. 2.,

1996. 7. 29., 2004. 2. 2., 2006. 9. 7., 2026. 1. 8.>

1. (「 」 14 가

3)

2.

3.

4. . . . , .

5. . . . ,

6. . (“ ”) (가 가

)

7. ()

2

. (82

) 「 」 36 1

() .

< 2006. 9. 7., 2008. 12. 5., 2009. 9. 30., 2010. 9. 10., 2020. 12. 31.>

[1990. 4. 2., 1996. 7. 29.]

5 2() 4 2 3 (6 4 25 2

)

1 2

가

. < 2013. 10. 22., 2026. 1. 8.>

1. (「 」 14
3)

2. 가

3.

가. : .
. :가
.가 :

[2009. 9. 30.]

6 (. 가) 4 1 .
가 2 . 가 .
가 .

. < 1989. 3. 14., 1990. 4. 2., 1991. 9. 19., 1996. 7. 29., 2004. 2.
2., 2004. 12. 10., 2006. 2. 22., 2006. 9. 7., 2020. 12. 31., 2026. 1. 8.>

1. (「 」 14 가
3)

2.

3.

4.

5. ()

1 . (82
) 「 」 36 1
() .

< 2006. 9. 7., 2008. 12. 5., 2009. 9. 30., 2010. 9. 10., 2020. 12. 31.>

7 (가) 4 1 2
. 가
. 가 가 3
가 가

. < 1990. 4. 2., 1991. 9. 19., 1996. 7. 29., 2020. 12.
31.>

1 가 . < 1989. 3. 14., 1999. 7.
15., 2004. 2. 2., 2026. 1. 8.>

1. 가

2.

3. (가 가)

4.

8 () 8 5 “
” 4 1. . 3
2 1 . , 4 1 . <

[1999. 7. 15.,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9 () 8 7
“ ” 4 2. .
3 4 1 . < [1999. 7. 15.,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1
. < [1996. 7. 29.>](#)

1.

2.

3.

가.

300) (. ,
10 .
300 .
3 ()
600 .
600 ()
() (6 ,
2))
(10)
3)

.
. .
. .
. .
. .
. .
. .
. .
. .

(300) 600

300

(“ ”)

) (

10 () 9 2

1.

2.

3

가

가 가

1. 9 2 1

1

50

2. 9 2 2

50

50

가

가

(L

가

3. 9 2 3

3

11 () 8 10

. < 1996. 7. 29.>

1.

2.

3.

- 4.
- 5.
- 6.
- 7.
- 8.
- 9.

10.

11. 100 ()

12. 15 (15 30)
()

13. 5

14. 600 ()

15. 500

16. 600

17. 300

18. 60

19. 20 (1

10 • 16 18)

1

1.

2. 3 1 11 (10
) 50 ,

4

3. 1 11 (10 , 50
) , 30 ,

,

,

12 () 8 10

1. 11 1 1 10 • 12 • 13 • 17 19

2. 10 ()

1

1.

2. 3 5

3. ,

,

4. 1.5 L
1

.
1.

2. 2

가. 30 15

20

. 30 10 15

3. 1 ,

,

13 () 8 11

37 . < 1989. 3. 14.>

8 30 .

1.

2. . 0.35

3. 50 ,

14 () 8 33

. < 2008. 3. 17., 2021. 12. 31.>

1.

2.

3. ,

, 50

4. . . 가

5. ()

8 33

1. 가 가 ,

2. 가 200 80 가 (.)

1 1 . 4 5 .

15 (. . .) 9 2 1

1 6 . < 1996. 7. 29.>

9 2 3 9 . . 7 .<

1996. 7. 29.>

16 (가) 6 1 가 4 () 가 . < 1990. 4. 2., 1991. 9. 19., 1996. 7. 29., 2016.

1. 12., 2020. 12. 31.>

1 가 .< 1989. 3. 14., 2004. 2. 2., 2006. 9. 7., 2026. 1. 8.>

1. (「 」 14 가 3)

2.

3. (가 가 ,)

4. () 2 . (82) 「 」 36 1 () .< 2006. 9. 7.,

2008. 12. 5., 2009. 9. 30., 2010. 9. 10., 2020. 12. 31.>

[2016. 1. 12.]

16 2(가) 6 2 가 가 4 2 () 가 .

1. 가

2. .

3. (가 가)

6 2 “ ”

1. ()

2. . (. 30) , . 44)

3. 1 . 2

6 2 2

4 2 .

. 3 4 3

. 4 2 10

[2026. 1. 8.]

16 3(가) 6 3 1 . 가 가

2 () 가 4 () 가 4 .

. < 2020. 12. 31., 2026. 1. 8.>

1 가 가

16 16 2 .

[2016. 1. 12.]

16 4() 6 3 1 . 가

. < 2026. 1. 8.>

[2016. 1. 12.]

17 (가) 9 1 2 . . 가 5

가 가

. < 1990. 4. 2., 1991. 9. 19., 1996. 7. 29., 2020. 12.

31.>

1 가 .< 1990. 4. 2., 1996. 7.

29.>

1.
.

2. .
. .

3.

2

가 .< 2016. 1. 12.>

1. 가

2. 가 3

3 2 2 .< 2016. 1.

12.>

9 5 6

.< 1996. 7. 29., 2016. 1. 12.>

9 5 가

24 .<

1989. 3. 14., 1996. 7. 29., 2016. 1. 12.>

18 ()

. < 1990. 4. 2.,

1996. 7. 29.>

1

. < 1990. 4. 2., 1996. 7. 29.>

.

. ,

. < 1990. 4. 2., 1996. 7. 29.>

2

6

. . 46 6 .< 1990. 4. 2., 1996. 7.

.

29.>

19 () 12 1 2
7

- 1. ()
- 2.

1 8

20 () 12 2
8

20 2() 11 3 (5 2 1
2)
8 2
3 . < 2004. 12. 10., 2006. 2. 22.,
2006. 9. 7., 2013. 10. 22., 2019. 9. 19.>

- 1.
- 2.
- 3.
- 4. ()
1 「 」 36 1
()

.< 2006. 9. 7., 2008. 12. 5., 2009. 9. 30., 2010. 9. 10.>

1 8 3

.< 2019. 9. 19.>

3 가

15

.< 2019. 9. 19.>

< 2006. 9. 7., 2019. 9. 19.>

[1989. 3. 14.]

21 (. . . . 가) 12 1
가 9 가 가

.< 1991. 9. 19., 1996. 7. 29.,

2011. 2. 22., 2020. 12. 31.>

12 1 가 10
가 14 () 가

.< 2011. 2. 22.>

12 1 , , 가
10 2 , , 가

.< 2011. 2. 22.>

1 3 가

.< 1990. 4. 2., 1996. 7. 29., 1999. 7. 15., 2004. 11. 1., 2006. 2. 22., 2006. 5. 30., 2011. 2. 22., 2015. 11. 20., 2016. 1. 12., 2026. 1. 8.>

1. (「 」 14 가
3 , .가 . .

가 「 」 80 가
)

2.

3. ()

가. : 24 가
. : 「 」 57 3

1 61 1 1
. : 「

」 30 2 가 (가)
. :

4. (가 2.5 , 3)

5. () . .
(가 3

)
6. 10 3 (病歷) ()

. .
12 2 . . ,

, 가 , 3 1 1 (“ ”),
가 10 4

, , 가 , , 가

.< 1996. 7. 29., 2004. 11. 1., 2004. 12. 10., 2006. 2. 22., 2006. 5. 30., 2006. 9. 7., 2011. 2. 22., 2016. 1. 12., 2019. 9. 19., 2026. 1. 8.>

1. (「 」 14
 가 3 , 「 」
 80 가 가 . .
)

2. , , 가 , ,

3.

4. (, , 가)

5. 10 3
 5 「 」 36 1
 ()

.< 2006. 9. 7., 2008. 12. 5., 2009. 9. 30., 2010. 9. 10.>

가 10 3

3 5 . . . 1
 .

(가 3 .) 가
 . 1 3 5
 가 .<

2011. 2. 22., 2015. 11. 20., 2026. 1. 8.>

[1989. 3. 14., 1990. 4. 2., 1996. 7. 29.]

21 2(.) 12 3 가
 [가 . . . (

“ ”)]

.< 2020. 12. 31.>

1. 2 가
 2. , , , 가

3.

4. 가

5.

6. 가 . .

[2016. 1. 12.]

21 3() 12 3 가 2
21 2

[2016. 1. 12.]

22 (가) 14 1 1
가
가

23 () 14 1 3 “
” . < 1999. 7. 15.,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31.>

1. ()
가
2. 가
3. 가 (가)
가

24 () 14 1 5
. < 1990. 4. 2., 2001. 4. 12.>

- 1.
2. ,
3. <1990. 4. 2.>

25 (가 . . 가)
14 1 가 . .
가

. < 1991. 9. 19., 1996. 7. 29.,
2020. 12. 31.>

1. . . .
2.
1 가 6

[1996. 7. 29.]

26 (가) 14 2 ()
() . 가
() .

. < 1991. 9. 19., 1996. 7. 29., 2020. 12. 31.>

1 . . 가 가
11 . . 가

.< 1991. 9. 19., 1996. 7. 29., 2020. 12. 31.>

1.
2. . . 2 12

.< 1991. 9. 19., 1996. 7. 29., 2020. 12. 31.>

1 가 가 1

.< 1996. 7. 29.>

1.
2.
3.
4. (. .)
5. . .

26 2() 14 4 1 12 2

. < 2019. 9. 19.>

[2015. 10. 30.]

26 3() 14 4 3 12 3

. < 2019. 9. 19.>

[2015. 10. 30.]

26 4() 14 4 3 3 “

” 12 4 .

[2019. 9. 19.]

27 (.) 15 “

” . < 1996. 7. 29., 1999. 7. 15.,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 () :400

2. :5

3. . () :200

4. :100

5. :

28 (. . . 가) 16 1 .
 2 . . . 가
 13 . . .
 . 가 가
 . , .
 , 가 14 2

47 2
 가 . < 1990. 4. 2., 1996. 7. 29., 2004. 2. 2., 2011. 2. 22., 2015. 11. 20., 2026. 1. 8.>

1. 21 4 1 5 1
2. (가 2.5 , 3)
3. . . . 가
4. 21 4 3 5 4
5. 21 4 5
6. 21 4 6 5 5 10 3
 (21 1 3 가 가)

1 . . . 가
 21 7 .< 2011. 2. 22., 2026. 1. 8.>
 가 1 4 가
 가 .< 2011. 2. 22.>
 1 가

13 2
 가 가 , 가
 가 3 가 .< 1990. 4. 2., 2004. 2. 2., 2011. 2. 22., 2015. 11. 20., 2026. 1. 8.>

[1989. 3. 14.]
 [2026. 1. 8.]

28 2(. . . 가) . . .
 . 가 가
 30 가 .<
 2004. 2. 2., 2020. 12. 31., 2026. 1. 8.>
 [1996. 7. 29.]
 [2026. 1. 8.]

29 (가) 18 1 가 가
 14 () 가
 . , 가 2
 ,
 가 가 . < 1989. 3. 14.>
 1 가 .<
 1989. 3. 14.>

1. 가
 가.
 . <2013. 10. 22.>
 . <2013. 10. 22.>
 .

2. 가
 가.
 . 가

29 2() 18 4 ()
)

1. ,
 . , .

2.

3. , (穿孔:)

4.

5. .가

6.

7.

8. 가

9.

10. 100

11.

12.

. . ,
. . ,

13.

14.

1 가 1.5 10 , 1.5
5 , 0.5

15.

16.

. 27 1
가 .
18 4 .

1.

가 가

2.

3.

가 (空洞)

4.

5.

가 (疏散:)

6.

.

7.

8.

9.

가

10.

11.

가

12.

13.

가 가 가 0.5

14.

가

15.

가 가

16.

[2026. 1. 8.]

29

3()

29

2

1. , 가

2. 가

3. 30 ,

4. (心線) 가 ,

5. 가

6.

7. . . .

8. 가 ,

9. 가 ,

10. 30 (導通)

[2026. 1. 8.]

29 4() 300
(가 300) 29 2 29 3

1. 가

2. 1

3. . . , , , ,

4. (掘進:) 가

5.

- 6. 가
- 7. (藥包) 가
- 8.

9.

10.

,

[2026. 1. 8.]

29 5() 가
 가 15 (29 3
 가 5)
 가 .

1. 60 (30
)

2.

3.

4. 1 3

[2026. 1. 8.]

29 6() 가 가
 (天盤:), ,
 . (29 4 30
)가 .

[2026. 1. 8.]

29 7() 가
 1. 가
 2. 10
 3.

4.

5. () ,

6.

7. 가 20

8. 20

9. 가

10.

11. 가 가

12.

13.

14. 가 10

[2026. 1. 8.]

30 (.) 20 1

가 14 2

. < 2019. 9. 19.>

20 3

15

. < 2019. 9. 19.>

. < 2019. 9. 19.>

[2019. 9. 19.]

30 2() 20 5

1.

(3)

2. 500

3. ()

4.

5.

1

1. 가 2

2. ,

3. ,

가

4. ,

5.

2 16 1 1 5

7 . 8

1 3

29 2 1 11 29 3 1 9 .

[2026. 1. 8.]

31 (. 가) 21 1
가 ,

가

)

가

(
. < [1996. 7. 29.>](#)

1

가

16

. 가 ,

. < [1996. 7. 29.>](#)

1. 가

2. 가 . 가 가 (

)

가 1 , 1 가

1

39

가 . ,

39

. 가 .

.< 1996. 7. 29., 2021. 12. 31.>

32 () 22

9 .

1

10

.< 1989. 3. 14., 1991. 9. 19., 2020. 12. 31.>

33 () . 22

20 .

, 22 3

.< 1989. 3. 14., 1991. 9.

19., 2020. 12. 31.>

22

17 .

.< 2010. 9. 10., 2020. 12. 31.>

2 .

「 」 36

1

가 (. 가

) ,

가

.< 2010. 9. 10., 2020. 12. 31.>

22 2

18 . .

.< 2010. 9. 10.>

33 2(가) 26 1 1 가 (

“ ”) , 가

70 ,

가

60 .

.< 2026. 1. 8.>

1. . .

2.

3. .

.

.< 2020. 12.

31.>

17 2 (

.) 가 가 .

[2008. 3. 17.]

34 (가) 25 1

가

19

() 가

• (3)

. < 1991. 9. 19., 2020. 12. 31.>

1 가

.< 1989. 3. 14., 2004. 2. 2.,

2026. 1. 8.>

1. (「 」 14 가

3)

2.

3. (4 500) (가

)

4. (가 가)

5.

35 () 30 5

8 3

2 1

. , 8 1 .

36 () 41 . .

. < 2008. 3. 17., 2021. 12. 31.>

1. . 가 (

가 .)

2. 가

가. (“ ”)

가 가

2.5

. 가 .

. 가

3

3.

가. 2 . ,

가 41

. 20

, 가

. 30
 . 가 가 가 가
 가 1 , 가

,
 가 가 가 가

. 1 ,
 14

4. 가 가
 가. 12 , 가 30

. , 가

. 3 가
 . 가 가
 . 가 가 45 ,

가 60 가 .
 (1) 1 2 2
 30

(2) 2 2 가 가

5. 가
 가. 1 가 1
 . 가 1
 . () 2
 . 1 20 , 1 10 . ,
 가 .
 30 , 5 4
 50 .

37 () 44

1. 가 2

2. 15 20

3. (2.5)

4.

38 () 26 1 20

1

. < 1989. 3. 14., 2014. 10. 28.>

<1989. 3. 14.>

1

47

39 () 38

21

38

3

. <

2021. 12. 31.>

1

. < 2021. 12. 31.>

[2021. 12. 31.]

40 () 39 1

. < 2021. 12. 31.>

1.

2.

3.

1

, 1 3

. < 1989. 3. 14., 2021. 12. 31.>

[2021. 12. 31.]

40 2() 26 4

- 1. 가
- 2.
- 3. (. .) 80
()

- 4. 가.
 . 가
 . .
 . .
 1 4 1
- 3 . , 13 10
 1 4 .
 가 . , 10 2

[2026. 1. 8.]

- 40 3() 26 4
 . , 1 . 2 . 4 5
 13 .
 1. (2 .) ,
 200
 1 . , 「 」
 21 23

- 2. . ,
 가 .
 가. . 가 1 1
 . 「 」 32 1 2
 가

- 3.
- 4. 15

- 5. () 100 ,
 50

- 6.

7.

8.

9.

10.

11.

12.

25

13.

20

14.

23

15.

15

16.

가

26 4

가

1.

3.5

2.

가 가

3.

가

가

가

[2026. 1. 8.]

40

4()

1.

가 .

35

“ ”

가

2.

1

, 150

13

1

2

1. 10

2. 5

3. 100

4. 1

5. 1 .

6. 100

[2026. 1. 8.]

40 5() 28 1

[2026. 1. 8.]

41 (.) 27 1 2

22 () () .
가 1 .< 1989. 3. 14.>

42 () 28 1
23 ()
. < 1990. 4. 2., 1991. 9. 19., 2011. 2. 22., 2020. 12. 31.>

1 . (.)
82) 「 」 36
1 가 ,

.< 1999. 7. 15., 2010. 9. 10., 2020. 12. 31., 2026. 1. 8.>

1. (「 」 14
3)

2. <2010. 9. 10.>

3. (가 3 , 4)
. 1 29

.< 1990. 4. 2., 2011. 2. 22., 2020. 12. 31.>

43 (.) 28 4

23 ()

가 「

」 36 1

가

. < 1989. 3. 14., 1990. 4. 2., 1999. 7. 15., 2004. 2. 2., 2011. 2. 22., 2026.

1. 8.>

1. (「 」 14
3)

2. (가 3 , 4)

3.

4. <1990. 4. 2.>

1

.< 2011. 2. 22., 2026. 1. 8.>

3

24 2 ()

가 3

.< 1990. 4. 2., 2004. 2. 2., 2011. 2. 22., 2026. 1. 8.>

가 1

29

.< 2011. 2. 22.>

44 () 59 2 4

11 2 . < 2004. 2. 2.>

63

.<

1999. 7. 15.,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2015. 10. 30., 2017. 7. 26., 2021. 12. 31.>

1.

2. 가 (,
.)

3.

11

4.

가 10

40

[2004. 2. 2.]

45 () 34 1 9 21
14 12 .

45 2(.) 64 2 2 “
” 24 3 .

[2019. 9. 19.]

46 () 36
25 .

47 () 38 1
13 .

48 () 39 1
14 .

49 () 40 1
15 .

1 • 2 3

가 1

40 2

26

50 (. . .) 42 1 6
16, 16 2, 16 3,
16 4 , . < 1990. 4. 2., 1996. 7.

29., 2021. 12. 31.>

1. (가 . . .)
2. (1 . . .)
3. (가 . . .)
4. (가 . . .)

.< 1990. 4. 2., 1996. 7. 29.,

1999. 7. 15., 2021. 12. 31.>

1.
 . , . 1 1
 2 , 1 2

2. . , . .

3. . . .

4. . .

5. . . .

. , . . 1
 . . . 47 2

.< 1990. 4. 2., 1996. 7. 29.>

42 3 가 . . .

16 5 .< 1990. 4. 2., 1996.

7. 29.>

[1989. 3. 14.]

[1990. 4. 2., 1996. 7. 29.]

51 ()
 가 27
 43 . ,

. < 2004. 2. 2.>

1.
 2. (가 가)

1 28

1
 27 2
 가

.< 2004. 2. 2.>

[1989. 3. 14.]

52 () 30 . 45 46 1

17 . < 1989. 3. 14., 1996. 7. 29.>

52 2(. .) 68 3 “ . . . ” 28 2 . .

[2019. 9. 19.]

[52 2 52 3 <2019. 9. 19.>]

52 3() 70 1 28 3
가 가

. < 2019. 9. 19.>

[2015. 10. 30.]

[52 2 <2019. 9. 19.>]

53 (가) 46 4
29

. < 1990. 4. 2., 1996. 7. 29.>

1 .

1. 가

2. 가

1 가

. 가 <

1990. 4. 2., 1996. 7. 29.>

[1990. 4. 2., 1996. 7. 29.]

54 (가) 46 5

. . 14

가 . < 1990. 4. 2., 1996. 7. 29.>

46 5

가 14 . < 1990. 4. 2., 1996.

7. 29.>

2 . < 1990. 4. 2., 1996. 7. 29.>

1.

2. .

3.

4.

[1990. 4. 2., 1996. 7. 29.]

54 2() 70 2 2
29 2 .

[1997. 4. 16.]

[54 2 54 3 <1997. 4. 16.>]

54 3(.) 47
3

. < 2015. 11. 20., 2019. 9. 19.>

1. 가

2. .

3.

4. 17 2

5.

6. .

[1996. 7. 29.]

[54 2 <1997. 4. 16.>]

55 (. .) 71
. 30

. < 1990. 4. 2., 1996. 7. 29., 2019. 9. 19.>

56 () 81 1 .

< 2026. 1. 8.>

1. : 31

2. : 32

3. : 33

4. : 33 2

5. : 34

6. . : 34 2

7. . : 34 3

8. : 34 4

[2016. 1. 12.]

57 (가) 65 가 .
 1. (.) 가 :
 35
 2. 가 : 36
 3. 가 : 37
 4. 가 : 38
 5. . . 가 : 38 2
 6. 가 : 40
 7. () 가 : 41
 8. () : 42
 [2016. 1. 12.]

58 (가) 65 2 가
 43 가() , 가가
 가
 . < 1990. 4. 2., 1996. 7. 29.>

59 (가) 65 3 가
 가 44 가(
) 가 가 30
 가 . , 가 .
 가 .
 < 1989. 3. 14., 1990. 4. 2., 1991. 9. 19., 2009. 9. 30., 2020. 12. 31.>
 1 47 2 가
 ()
 . ,
 가 .< 2009. 9. 30.>

60 (가) 가 65 4
 가
 45 가()
 가 .
 1. :
 2. : 가

61 () 66
 . , 가
 1

가 46 가
 가 . < 2016. 1. 12.>
 [2013. 10. 22.]

62 () 58 1 2 .
 18 .
 67 가 . 19 .
 1 .
 , 2 가 .

.< 2004. 12. 10.>

62 2() 69 1 . . .
 31 . . .
 , 7

[2016. 1. 12.]

[62 2 62 3 <2016. 1. 12.>]

62 3()
 3 (3)

1. 20 2 : 2014 1 1

2. <2019. 12. 31.>

3. 38 : 2014 1 1

4. <2019. 12. 31.>

[2014. 1. 8.]

[62 2 <2016. 1. 12.>]

63 () 74 1
 47 .

74 1 48

49 . .< 2020. 12. 31.>

[2008. 12. 5.]

< 427 ,1985. 2. 6.>

()

()

6

< 487 ,1989. 3. 14.>

()

()

50

< 505 ,1990. 4. 2.>

()

()

가

(

)

3 1

()

50

< 543 ,1991. 9. 19.> ()

1 ()

, 1991 7 31

2

3 1

“

•

(

”

•

”

”

”

,

2

3

“

•

”

“

”

26

1

“

”

“

”

,

2

“

•

”

“

”

3

“

”

“

”

2

2 1

,

5

1

,

7

1

17

1

•

5

“

”

“

”

6 , 16 1 , 16 2 1 , 21 1 , 25 1 , 32 2 ,
33 1 . 2 , 34 1 , 42 1 59 “ . ”

“ ” .

[14] 3 가 “ . ” “ ” .

[15] 2 가 “ ” “ ” , “ . ” “ ”

” .

[16 2] 2 가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1 2] “ ” “ ” .

.

[1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4 2]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8 2] “ ” “ ” .

[9]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10 2] “ ” “ ” .

[11] “ ” “ ” ,
“ ” “ ” , “ () ” “ () ” .

[12] “ ” “ ” .

[13] “ ” “ ” ,
“ ” “ ” , “ () ” “ () ” .

•

[13 2] “ ” “ ” ,
“ ” “ ” , “ () ” “ () ” .

•

[14] “ ” “ ” .

[15] “ ” “ ” , “ () ”
“ () ” .

[16] “ ” “ ” .

[17] “ ” “ ” .

•

[18] “ ” “ ” .

•

[19] “ () ” “ () ” ,
“ ” “ ” , “ () ” “ () ” .

[22] “ ” “ ” ,
“ ” “ ” , “ () ” “ () ” .

•
 [23] “ . ” “ ” ,
 “ ” “ ” , “ () ” “ () ” .

[24] “ . ” “ ” ,
 “ ” “ ” , “ () ” “ () ” .

[24 2] “ . ” “ ” ,
 “ ” “ ” , “ () ” “ () ” .

[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 . ” “ ” .

[29] “ ” “ ” ,
 “ ” “ ” , “ () ” “ () ” .

•
 [30] “ . ” “ ” .

[35] “ . ” “ ” .

[36] “ . ” “ ” .

[37] “ ” “ ” .

•
 [41] “ . ” “ ” .

[42] 3 “ . ” “ ” .

[43] “ . ” “ ” .

[44] “ . ” “ ” ,
“ ” “ ” “ ” “ ” “ ”
” “ ” “ ” “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46] “ . ” “ ” .

[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692 ,1996. 7. 29.>

() .

() 가

1997 1 1 2 1 4

() 2 1 4

1996 12 31 .

()

() 가 50

() 39 가 . . 가
39 가 .

< 709 ,1997. 4. 16.>

() 1997 7 1 . , 54 2 • 54 3
29 2 .
() 가
29 2 .

< 57 ,1999. 7. 15.>

() .
()
()

< 132 ,2001. 4. 12.>

() .
()
4 2 2 • 4 5

< 256 ,2004. 11. 1.>

() . , 2 2 16 2
1 .
() 1
2 2 16 2

(.) 1
가 2 2 16 2 ,

() , .

< 259 ,2004. 12. 10.> ()

< 320 ,2006. 2. 22.>

< 329 ,2006. 5. 30.> ()

1 () 2006 6 1 .
2 7
8 ()

21 4 1 5 1 “ 68 ” “ 80 ” .
9 1 , 10 2 10 2
2 “ 68 ” “ 「 」 80 ” .

1^

< 345 ,2006. 9. 7.> ()

< 4 ,2008. 3. 6.> ()

1 () .
2
3 ()

2 2 1 1 44 2 4 “ ” “
 ” .
 8 , 9 1 , 23 27 “
 ” “ ” .

< 6 ,2008. 3. 17.>

< 43 ,2008. 12. 5.> ()

< 108 ,2009. 9. 30.>

1 ()

2 () 5 2

59 2

3 ()

< 161 ,2010. 9. 10.> ()

< 196 ,2011. 2. 22.>

1 () 1

2 (가) 21 4 7 28

1 3 가

가

3 () 42 1 43

< 297 ,2012. 5. 31.> ()

1 ()

2 ()

2012 8

31

< 301 ,2012. 6. 8.>

< 2 ,2013. 3. 23.> ()

1 ()

2

3 ()

2 2 1 1 44 2 4 “ ” “
”
8 , 9 1 , 23 27 “
” “ ”

< 20 ,2013. 10. 22.> ()

< 50 ,2014. 1. 8.> ()

< 97 ,2014. 10. 28.>

< 2 ,2014. 11. 19.> ()

1 ()

2

3 ()

. .

2 2 1 1 44 2 4 “ ” “
”

8 , 9 1 , 23 27 “
” “ ”

< 40 ,2015. 10. 30.>

2015 11 2 .

< 45 ,2015. 11. 20.>

.

< 58 ,2016. 1. 12.>

1 ()

2 ()

4 2 1

< 95 ,2016. 12. 29.> ()

. < >

< 3 ,2017. 7. 26.> ()

1 ()

2

3 ()

. .

2 2 1 1 44 2 4 “ ” “
 ” .
 8 , 9 1 , 23 27 “
 ” “ ” .

< 31 ,2017. 12. 29.>

< 137 ,2019. 9. 19.>

2019 9 19 .

< 154 ,2019. 12. 31.> (3)

2020 1 1 .

< 158 ,2020. 2. 13.>

< 224 ,2020. 12. 31.> ()

1 () 2021 1 1 .

2 ()

. .

5 1 • 3 , 6 1 , 2 , 7 1 , 16 1
 • 3 , 16 2 1 , 16 3 1 , 17 1 , 21 1 , 21 2 6 ,
 25 1 , 26 1 • 3 , 28 2, 32 2 , 33 1
 , 2 , 3 , 33 2 3 , 34 1 , 42 1 ,
 2 , 3 , 59 1 , 63 3 , 14
 3 가 , 15 2 가 , 17 2 2 , 1
 . , 1 2 , 2 . , 3
 . , 4 . , 4 2 . , 5 .
 , 9 . , 10 3 , 11 , 12
 , 13 . , 13 2 . , 14 2 ,

17 , 19 . , 22 . , 23
. , 24 2 . , 27 . , 27
2 . , 28 , 28 2 1 4 ,
29 , 30 , 35 , 36 , 37 ,
41 , 42 1 . 3 , 43 , 44 ,
45 , 46 47 “ ” “ .
” .
26 2 “ ” “ . ”
.
1 , 3 , 4 , 4 2 ,
5 , 9 , 13 , 13 2
, 19 , 22 , 23 , 24 2
, 27 27 2 “ (.
) ” “ . (.) ” .
1 2 “ ” “ . ” .
14 2 “ . ” “ . ” .
29 “ ” “ . ” .
44 45 “ () ” “ (.) ”
.
4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8 ,2021. 12. 31.> (11)

< 466 ,2024. 3. 8.> (가 2)

< 505 ,2024. 7. 30.> ()

3

< 602 ,2026. 1. 8.>

1 () 2026 1 8 .

2 () 5 2 1 , 5 2 1 (6 4
 25 2), 6 1 1 , 16 2 1 ,
 21 4 1 , 5 1 , 28 1 1 , 34 2 1 , 42 2
 1 , 43 1 1 , 1 , 1 2 , 2
 , 4 , 9 , 10 , 10 2
 , 10 4 , 13 , 14 , 19
 23
 가

3 (.) 21 4 5 ()
 28 1 5), 7 (28 2
), 9 , 10 10 2

()
 가 가 .

4 (.) 21 4 5 (28 1 5 , .
 가), 6 (21 1 6) 5
 , . 가

5 (21 1 6 , .)
 가) . . .
 가 가 .

5 (가 .) 28
 1 , 4 , 43 1 3 .
 4 가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2. 31.>

총의 성능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장약총

총의 종류	탄알	유효사거리 (m 이내)	최대도달거리 (m 이하)
산탄총	18.3mm이하	60	560
강선총	22호	100	1,600
	30호	300	2,000
	38호	300	4,000

2. 공기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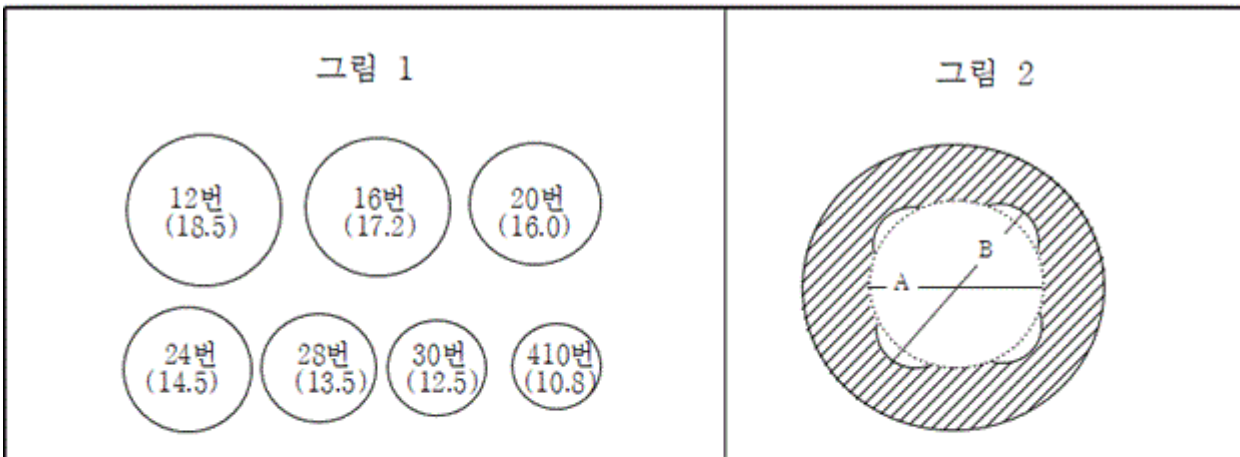
총의 종류	구 경	연지탄의 에너지	압축실 실린더 전체체적
단탄총	4.5mm	60J이하	500cm ³ 이하
	5.0mm	"	"
	5.5mm	"	"
산탄총	5.5~6.4mm	"	"

산탄탄알 및 연지탄의 명칭과 규격(제2조3항관련)

1. 산탄탄알의 규격

구분	탄알의 표준 지름	탄알의 수	탄알의 형태
장약총용	18.3mm이하	2개 이상	원형
공기총용	2.9mm이하	2개 이상	원형

2. 산탄총 변경의 크기



- ※ ① 그림 1은 산탄총의 변경으로서 ()안의 숫자는 밀리미터를 표시하는 것
- ② 그림 2는 라이플총의 4조 우선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A는 좁은 지름(산모양), B는 넓은 지름(골모양)임
- ③ 총의 구경을 표시할 때 제조업소에 따라 좁은 지름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넓은 지름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음

3. 공기층 연지탄(납알)의 규격

명칭	중량	탄알의 표준 지름
연지탄 1호 5.5mm	1.7g이하	5.5 ± 0.1 ↔  ↔ 5.7 ± 0.1 5.5mm탄의 지름
연지탄 2호 5.0mm	1.5g이하	5.0 ± 0.1 ↔  ↔ 5.2 ± 0.1 5.0mm탄의 지름
연지탄 3호 4.5mm	1.3g이하	4.5 ± 0.1 ↔  ↔ 4.7 ± 0.1 4.5mm탄의 지름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 삭제 <2004.11.1>

■ 송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 <개정 1996.7.29>
전자충격기의 성능기준(제2조의3제2항관련)

구 분	성 능
실 효 전 력	10W 이내일 것
절 연 상 태	AC 5,000V에서 0.5mA 이내일 것
실 효 전 류	0.05A 이내일 것
최 대 전 압	60,000V 이내일 것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4] <개정 1999.7.15>

석궁의 성능기준(제2조의4제2항관련)

구 분	성 능
탄 력 성	68kg 이하일 것
유효사거리	30m 이내

격벽의 설치기준(제10조제2항제3호관련)

위험공실등의 구분			격벽의 구조
꽃불류외의 화약류의 위험공실등	폭발의 위험있는 위험공실등	정체량 300킬로그램 초과인 경우	두께 5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정체량 100킬로그램 초과, 3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정체량 1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불이 날 위험있는 위험공실등	정체량 2,000킬로그램 초과인 경우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정체량 600킬로그램 초과, 2,0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정체량 6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꽃불류등의 위험공실등	폭발의 위험있는 위험공실등	정체량 30킬로그램 초과인 경우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정체량 3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불이 날 위험있는 위험공실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망시멘트 모르타르칠,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화성이 있는 구조	

주

1. 이 표의 기준에 있어서의 정체량의 화공품은 그 원료가 되는 화약 또는 폭약의 수량을 말한다.
2. 격벽은 위험공실 등의 구분에 알맞은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험공실 등의 구분에 있어서 다른 구분에 속하는 위험공실 등을 연결할 때에는 각각 그 위험공실의 구분에 따른 격벽구조의 양쪽을 충족시키는 구조로 할 것
3. 격벽의 기초는 폭발 또는 발화할 때 전도되지 못하도록 할 것
4. 격벽은 양쪽 벽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그 꼭대기에는 위험공실 등의 지붕표면(지붕의 표면을 연장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연장한 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할 것

방폭면외의 3면의 방폭식벽의 구조기준

(제11조제2항제2호관련)

위험공실의 구분			방폭면외의 3면의 벽의 구조
화약류(꽃 불류·신호 용염관·신 호용화전과 이들의 원 료용 화약 및 폭약을 제외한다) 의 위험공 실	폭발의 위 험있는 위 험공실	정체량 300킬로 그램 초과 의 경우	두께 5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 트조
		정체량 100킬로 그램 초과 300 킬로그램 이하 의 경우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 트조
		정체량 4킬로그 램 초과 100킬 로그램 이하의 경우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 트조
	불이 날 위 험있는 위 험공실	정체량 4킬로그 램 이하의 경우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 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정체량 600킬로 그램 초과 의 경우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 트조 또는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정체량 600킬로 그램 이하 의 경우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 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꽃불류등의 위험공실	폭발의 위 험있는 위 험공실	정체량 30킬로그 램 초과 의 경우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 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정체량 30킬로 그램 이하 의 경우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 트조 또는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블록조
	불이 날 위 험있는 위 험공실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망시멘트 모르타르칠,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강도 및 내화성이 있는 구조

방폭면의의 3면의 준방폭식 벽의 구조기준

(제12조제2항제2호관련)

위험공실의 구분			방폭면의의 3면의 벽의 구조기준
화약류(꽃불류등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폭발의 위험있는 위험공실	정체량 4킬로그램 초과인 경우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정체량 4킬로그램 이하의 경우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불이 날 위험있는 위험공실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꽃불류등의 위험공실	폭발의 위험있는 위험공실	정체량 30킬로그램 초과인 경우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정체량 30킬로그램 이하의 경우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불이 날 위험있는 위험공실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망시멘트 모르타르칠,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블록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화성이 있는 구조

(주) 이 기준의 정체량은 화공품에 있어서는 그 원료가 되는 화약 또는 폭약의 수량을 말한다.

화공품의 1일제조최대수량(제15조제1항)

1. 꽃불류의 1일 최대제조량

구분	세부기준					
1. 쏘아올리는 꽃 불류의 경우	가. 연간 생산할 예정수량을 정하고, 퍼지는 것, 소리를 내는 것 또는 빛을 내는 것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별로 정해진 화약 또는 폭약류의 함유량으로 곱하여 1년에 사용할 화약·폭약량을 산출할 것 나. 1년간 사용할 화약 또는 폭약량을 작업예정일수로 나눈 화약 또는 폭약량을 1일 최대제조량으로 할 것 다. 쏘아올리는 꽃불의 표준 함유 화약 또는 폭약량 및 총중량					
	구슬의 크기		퍼지는 것		소리 또는 빛을 내는 것	
	호수	구슬의 외경 (cm)	함유화약·폭약량 (g)	총중량 (g)	함유화약·폭약량 (g)	총 중량 (g)
	2호	약 7.5	약 40	약 120	약 25	약 80
	3호	약 9	약 120	약 230	약 70	약 150
	4호	약 12	약 350	약 550	약 130	약 260
	5호	약 15	약 630	약 1,100	약 240	약 500
	6호	약 18	약 1,100	약 1,800	약 450	약 900
	7호	약 21	약 1,500	약 2,700	약 750	약 1,500
	8호	약 24	약 2,600	약 4,000	약 1,200	약 2,400
9호	약 30	약 4,400	약 6,500	약 1,600	약 3,200	
2. 장난감꽃불류및 거는꽃불의경우	1. 원료화약 또는 폭약의 1일의 배합량의 합계량을 1일 최대 제조량으로 할 것					
3. 쏘아올리는 꽃 불류를 하도급을받아 자가제조하는경우	1. 1일의 배합량을 1일 최대제조량으로 할 것					
4. 거는 꽃불의조립의경우	1. 1일에 조립하는 수로 할 것					

5. 그밖의 화공품 류	1. 해당 화공품의 제조수를 그 제조에 요하는 일수로 나누 수로 할 것
-----------------	--

2. 꽃블류의 원료용 화약 또는 폭약의 1일 최대제조량을 배합하는 날 [1(쏘아올리는 꽃블) + 5(그밖의 화공품)]의 1일 배합량과 [2(장난감꽃블 및 거는 꽃블) + 3(쏘아올리는 꽃블)]의 1일의 배합량의 합계를 원료용 화약 또는 폭약의 1일 최대제조량으로 할 것

■ 송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1. 12. 31.>

위험공실등의 정원·정체량·최대저장량·보안간격등의 기준(제15조제2항관련)

위험공실등		정체량의 범위	동시에 저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최대수량의 범위	정원의 범위			위험공실등에 대한 보안간격	
				작업자	운반자	시채취료자		
		킬로그램 (이하)	일분 (이하)	인 (이하)	인 (이하)	인 (이하)	미터 (이하)	
1	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글리콜 또는 이들의 혼합물	초화공실	2,000	1일분	4	2	0	$3.4 \times^3 \sqrt{\text{정체량}}$
		세정공실	4,000	/	3	2	1	$3.4 \times^3 \sqrt{\text{정체량}}$
		폐산분리공실	10	/	2	0	0	$3.4 \times^3 \sqrt{\text{정체량}}$
2	니트로셀룰로오스 그밖의 질산에스텔(다른 난에 기재한 것을 제외한다)	풍건공실(바람을 쐬어 말리는 작업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0	/	5	3	1	$3.0 \times^3 \sqrt{\text{정체량}}$
		사분공실(일정한 크기의 화학류 알갱이를 걸러내기 위해 체로 고르는 작업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500	/	4	2	1	$3.0 \times^3 \sqrt{\text{정체량}}$
		분상약 건조공실(수	500	/	5	3	1	$3.0 \times^3 \sqrt{\text{정체량}}$

		분이 함유된 가루형태의 화약류를 건조하는 작업실을 말한다)						
		고형약건조공실	3,000	/	4	2	1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계량공실	500	/	4	2	1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일시저치장	5,000	/	0	4	1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3	다이나마이트 그밖의 질	배합공실	200	1일분	3	2	0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산에스텔을 주로 하는폭약(니트로글리세린 및 니트로글리콜 함유 폭약을 포함한다)	교화공실	600	/	3	2	0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배합교화공실	500	/	4	2	0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날화공실(점도가 높은 재료를 섞거나 반죽하는 작업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1,500	0.5일분	5	1	1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예날화공실(온도를 높이는 등 날화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실을 말한다)	600	1일분	4	2	1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교화약이체공실	200	/	3	2	1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압신공실(화약류에	600	0.5일분	10	2	1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압력을 가하여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작업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동포장공실	1,600	/	13	4	1	$3.0 \times^3 \sqrt{\text{정체량}}$
		전약공실(화약 제조실)	600	/	16	3	1	$3.0 \times^3 \sqrt{\text{정체량}}$
		자동전약포장공실	600	/	7	4	1	$3.0 \times^3 \sqrt{\text{정체량}}$
		포장수합공실	600	/	20	4	1	$3.0 \times^3 \sqrt{\text{정체량}}$
		일시저치장	6,000	/	0	3	1	$3.0 \times^3 \sqrt{\text{정체량}}$
4	니트로기를 3이상 함유한 니트로화합물과 이를 주로한 폭약 또는 펜타에리스릿트, 데트라나이트렛트 (니트로글리세린 및 니트로글리콜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또한 니	초화공실	초화 3회분 (연속초화의 경우 는 2,000킬로그램)	1일분	13	2	1	당해 공실 및 당해 공실에 인접한 시설중 최고 동고의 2배

	트로화합물 함유량이 10퍼센트를 초과한 폭약을 포함한다)	풍건공실	500	/	6	3	2	$1.5 \times 3^3 \sqrt{\text{정체량}}$
		분쇄사분공실(입자가 큰 화약류를 적합한 크기로 분쇄한 후 체로 고르는 작업실)	3,000	/	8	2	2	$3.0 \times 3^3 \sqrt{\text{정체량}}$
		후레-킹공실	5,000	/	9	3	2	$3.0 \times 3^3 \sqrt{\text{정체량}}$
		전조공실	4,000	/	6	2	2	$3.0 \times 3^3 \sqrt{\text{정체량}}$
		혼화공실	1,500	0.5일분	6	2	1	$3.0 \times 3^3 \sqrt{\text{정체량}}$
		성형공실	1,000	/	15	3	1	$3.0 \times 3^3 \sqrt{\text{정체량}}$
		전약공실	1,000	/	15	3	1	$3.0 \times 3^3 \sqrt{\text{정체량}}$
		건조취급공실	600	/	6	2	1	$2.8 \times 3^3 \sqrt{\text{정체량}}$
		포장수합공실	2,000	/	20	3	1	$2.8 \times 3^3 \sqrt{\text{정체량}}$
		합수폭약제조공실	3,000	/	15	2	1	$1.0 \times 3^3 \sqrt{\text{정체량}}$
일시저치장	6,000	/	0	3	1	$2.8 \times 3^3 \sqrt{\text{정체량}}$		
5	카릿트 그밖의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폭약(니트로글리세린 및 니트로글리콜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니트로화합물의 함유량이 10퍼센트이하로서 과염소산염을 함유한 폭약을 포함한다)	혼합공실	600	0.5일분	6	3	1	$2.8 \times 3^3 \sqrt{\text{정체량}}$
기계전약공실	600	/	6	3	1	$2.8 \times 3^3 \sqrt{\text{정체량}}$		
수동 전약공실	600	/	10	3	1	$2.8 \times 3^3 \sqrt{\text{정체량}}$		
자동전약포장공실	1,000	/	4	4	1	$2.8 \times 3^3 \sqrt{\text{정체량}}$		
포장공실	600	/	20	4	1	$2.8 \times 3^3 \sqrt{\text{정체량}}$		
수합공실	1,000	/	4	3	1	$2.8 \times 3^3 \sqrt{\text{정체량}}$		
포장수합공실	1,000	/	20	4	1	$2.8 \times 3^3 \sqrt{\text{정체량}}$		

		일시저치장(과염소산염이 10퍼센트이하의 폭약일시저치장을 제외한다)	6,000	/	0	3	1	$2.8 \times^3 \sqrt{\text{정제량}}$
		일시저치장(과염소산염 10퍼센트이하의 폭약 일시저치장에 한한다)	6,000	/	0	3	1	$1.5 \times^3 \sqrt{\text{정제량}}$
6	니트로글리세린 · 니트로글리콜 및 과염소산염을 함유하지 아니한 니트로화합물이 10퍼센트이하인 초안 또는 초산염을 주로 한 폭약	혼화공실	2,000	0.5일분	8	2	1	당해 공실 및 당해 공실에 인접된 시설중 최고높은 동고의 2배
		사분공실	2,000	/	4	2	1	"
		방냉공실	2,000	/	1	2	1	"
		배합공실	1,500	/	3	2	1	"
		전약공실	1,500	/	13	2	1	"
		포장수합공실	1,000		20	2	1	"

		자동전약포장수합공실	2,000		17	1	1	"
		초유폭약일관제조공실	3,000		10	2	1	"
		합수폭약제조공실	3,000	0.5일분	15	2	1	1.5× ³ √정제량
		일시저치장	6,000	/	0	3	1	1.5× ³ √정제량
7	기 폭 약	화성세정공실(디아조디 니트로페놀의 공실을 제외한다)	60	1일분	7	2	1	1.5× ³ √정제량
		디아조디니트로페놀의공실	200	/	7	2	1	1.5× ³ √정제량
		제수공실	20	/	3	2	1	1.5× ³ √정제량
		혼화공실	12	/	3	1	1	1.5× ³ √정제량
		조립공실	6	/	1	1	1	1.5× ³ √정제량
		습약일시저치장	300	/	0	2	1	1.5× ³ √정제량
		풍건공실	30	/	2	2	1	6.0× ³ √정제량
		건조공실	100	/	2	0	0	6.0× ³ √정제량
		불식공실	3	/	1	1	1	6.0× ³ √정제량
		사분공실	1	/	1	1	1	6.0× ³ √정제량
		불식사분공실(습식으로 섞은 폭분을 통풍과 열 풍으로 건조시켜 체로 거르고 소량씩 배분하 는 작업실을 말한다)	4	/	1	1	1	6.0× ³ √정제량
		건조약일시저치장	100	/	0	1	1	6.0× ³ √정제량
		기폭약일관제조공실	30	/	3	2	1	6.0× ³ √정제량

8	무연화학 그밖의 질산 에스테를 주로한 화약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로한 화약	건병혼화공실	300	1일분	2	1	1	$2.8 \times 3 \sqrt{\text{정제량}}$
		습병혼화공실	6,000	/	8	2	1	$2.8 \times 3 \sqrt{\text{정제량}}$
		습병건조공실	1,200	1일분	4	2	1	$2.8 \times 3 \sqrt{\text{정제량}}$
		습병배합공실	6,000	0.5일분	8	2	2	$1.5 \times 3 \sqrt{\text{정제량}}$
		습병숙성공실	20,000	/	3	2	1	$1.5 \times 3 \sqrt{\text{정제량}}$
		습병계량공실	1,000	/	4	2	1	$1.5 \times 3 \sqrt{\text{정제량}}$
		날화공실	300	/	3	2	1	$2.8 \times 3 \sqrt{\text{정제량}}$
		압신공실	200	/	6	2	1	$2.8 \times 3 \sqrt{\text{정제량}}$
		압연공실	200	/	4	2	1	$2.8 \times 3 \sqrt{\text{정제량}}$
		절단공실	600	/	9	4	1	$2.8 \times 3 \sqrt{\text{정제량}}$
		사분공실	1,000	/	3	2	1	$2.8 \times 3 \sqrt{\text{정제량}}$
		조립공실	400	/	6	2	1	$2.8 \times 3 \sqrt{\text{정제량}}$
		표면교화광택공실	1,300	/	4	4	2	$2.8 \times 3 \sqrt{\text{정제량}}$
		봉부공실	800	/	20	4	2	$2.8 \times 3 \sqrt{\text{정제량}}$
		절단완성공실	800	/	20	4	2	$2.8 \times 3 \sqrt{\text{정제량}}$
		검량공실	800	/	30	4	2	$2.8 \times 3 \sqrt{\text{정제량}}$
회수건조공실(질소가스입탱크식공실을 제외한다)	10,000	/	4	2	1	$2.8 \times 3 \sqrt{\text{정제량}}$		

		회수건조공실(질소가 스입탱크식공실에 한 한다)	2,500	/	2	1	1	$2.8 \times 3 \sqrt{\text{정체량}}$
		건조공실	6,000	/	4	2	1	$2.8 \times 3 \sqrt{\text{정체량}}$
		혼동공실	100,000	/	26	4	3	$2.8 \times 3 \sqrt{\text{정체량}}$
		풍서공실	200,000	/	5	4	3	$2.8 \times 3 \sqrt{\text{정체량}}$
		약량조절공실	800	/	20	4	2	$2.8 \times 3 \sqrt{\text{정체량}}$
		포장수합공실	1,000	/	30	4	2	$2.8 \times 3 \sqrt{\text{정체량}}$
		수합공실	2,000	/	20	4	3	$1.5 \times 3 \sqrt{\text{정체량}}$
		일시저치장	20,000	/	0	4	2	$1.5 \times 3 \sqrt{\text{정체량}}$
		주조약제조공실	20,000	0.5일분	4	4	1	$1.5 \times 3 \sqrt{\text{정체량}}$
9	질산에스텔을 주로한 화약(제8호에 기재한 것을 제외한다)	배합공실	6,000	1일분	8	2	1	$1.0 \times 3 \sqrt{\text{정체량}}$
		성형공실	1,000	/	9	4	1	$2.8 \times 3 \sqrt{\text{정체량}}$
		건조공실	1,200	/	4	2	1	$1.5 \times 3 \sqrt{\text{정체량}}$
		정치공실	20,000	/	5	4	2	$1.5 \times 3 \sqrt{\text{정체량}}$
		완성공실	10,000	/	15	4	2	$1.5 \times 3 \sqrt{\text{정체량}}$
		일시저치장	40,000	/	0	4	2	$1.5 \times 3 \sqrt{\text{정체량}}$
10	과염소산염을 주로한 화약 또는 로켓추진 용의 질산염을 주로하 는 화약	배합공실	2,000	1일분	6	5	2	$2.8 \times 3 \sqrt{\text{정체량}}$
		성형공실	2,000	/	12	5	3	$1.0 \times 3 \sqrt{\text{정체량}}$
		완성공실	4,000	/	20	6	2	$1.0 \times 3 \sqrt{\text{정체량}}$
		일시저치장	6,000	/	6	4	2	$1.0 \times 3 \sqrt{\text{정체량}}$

11	흑색화약 그밖의 초산 염을 주로한 화약	삼미혼화공실	500	1일분	2	1	1	$1.4 \times 3 \sqrt{\text{정체량}}$
		압마공실	120	/	2	1	0	$1.4 \times 3 \sqrt{\text{정체량}}$
		파쇄공실	500	/	3	1	0	$1.4 \times 3 \sqrt{\text{정체량}}$
		수압공실	500	/	4	1	0	$1.4 \times 3 \sqrt{\text{정체량}}$
		조립공실	500	/	3	1	0	$1.4 \times 3 \sqrt{\text{정체량}}$
		원형조립공실	700	/	3	1	0	$1.4 \times 3 \sqrt{\text{정체량}}$
		광택공실	700	/	2	1	0	$1.4 \times 3 \sqrt{\text{정체량}}$
		사분공실	700	1일분	2	1	0	$1.4 \times 3 \sqrt{\text{정체량}}$
		건조공실	4,000	/	4	2	0	$1.4 \times 3 \sqrt{\text{정체량}}$
		혼동공실	1,000	/	3	1	0	$1.4 \times 3 \sqrt{\text{정체량}}$
		포장공실	700	/	5	2	1	$1.4 \times 3 \sqrt{\text{정체량}}$
		수합공실	1,000	/	5	2	1	$1.4 \times 3 \sqrt{\text{정체량}}$
		포장수합공실	1,000	/	8	2	1	$1.4 \times 3 \sqrt{\text{정체량}}$
		준비공실	1,000	/	3	2	1	$1.4 \times 3 \sqrt{\text{정체량}}$
		일시저치장	6,000	/	0	3	2	$2.4 \times 3 \sqrt{\text{정체량}}$
12	로켓트	로켓트제조공실	20,000	/	20	6	2	$1.0 \times 3 \sqrt{\text{정체량}}$
		일시저치장	60,000	/	0	6	0	$1.0 \times 3 \sqrt{\text{정체량}}$

13	공업용뇌관	첨장약취급공실	400	/	2	1	1	$4.3 \times 3 \sqrt{\text{정제량}}$
		폭분전약공실	2	/	1	1	1	$4.3 \times 3 \sqrt{\text{정제량}}$
		내관삽입공실	1,000개	/	3	1	1	$4.3 \times 3 \sqrt{\text{정제량}}$
		폭분압착공실	1,000개	/	1	1	1	$4.3 \times 3 \sqrt{\text{정제량}}$
		완성공실	5,000개	/	3	1	1	$4.3 \times 3 \sqrt{\text{정제량}}$
		뇌관전압준비(가치)공실	5,000개	/	0	1	0	$4.3 \times 3 \sqrt{\text{정제량}}$
		포장수합공실	100,000개	/	7	2	1	$4.3 \times 3 \sqrt{\text{정제량}}$
		일시저치장	200,000개	/	0	2	0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14	전기뇌관 또는 전기도화선	원관제습공실	100,000개	/	2	1	1	$0.3 \times 3 \sqrt{\text{정제량}}$
		점화약배합공실	2	2일분	1	1	1	$0.3 \times 3 \sqrt{\text{정제량}}$
		점화약포장공실	3	/	2	1	0	$0.3 \times 3 \sqrt{\text{정제량}}$
		점화약분배공실	2	1일분	1	1	1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습점화약일시저치장	50	/	0	2	1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점화약도포공실(전기뇌관 또는 전기도화선에 점화약을 바르는 작업실을 말한다)	0.5	/	20	2	1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점화약 피막공실(점화약에 막을 씌우는 장소를 말한다)	1	/	6	1	1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점화약건조공실	1	/	1	1	0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점화약 달린 각선검	1	/	0	2	0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사준비(가치)공실						
	니트로셀룰로오스풍	1	/	1	1	1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건공실						

니트로셀룰로오스장입준비 (가치)공실	1	/	0	1	0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점화약장입준비(가치)공실	5	/	0	2	1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점화약장입공실	점화약원관 2,000개	/	2	1	0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점화약도포건조공실(전기 뇌관 또는 전기도화선에 점 화약을 바르고 말리는 작업 실을 말한다)	5	/	12	5	2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각선부침준비(가치)공실	20,000개	/	0	2	0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연시장치부침공실	2,000개	/	3	2	1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점화구달린각선검사공실	1	/	3	3	1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니트로셀룰로오스장입공실	니트로셀룰로 오스 0.1 전기뇌관 2,000개	/	2	1	1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각선부침공실	1,500개	/	2	1	1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장입공실	4,000개	/	2	1	0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저항측정공실	2,500개	/	5	2	1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완성공실	2,000개	/	5	2	1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포장공실	5,000개	/	5	1	1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수함공실	10,000개	/	2	1	0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포장수함공실	5,000개	/	5	1	0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분해공실	500개	/	1	1	1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지발전기뇌관용원관검사공 실	5,000개	/	1	1	1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포장준비(가치)공실	5,000개	/	0	2	1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포장공실	10,000개	/	7	2	1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수합공실	20,000개	/	2	2	0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전기뇌관일관제조공실	30,000개	/	30	3	1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일시저치장	2,000,000개	/	0	2	0	$30 \times 3 \sqrt{\text{정체량}}$
15	총용뇌관	건식계량공실	폭분 0.5kg 뇌관 1,000개	/	1	2	1	$2.5 \times 3 \sqrt{\text{정체량}}$
		건식전입공실	2,000개	/	2	2	1	$2.5 \times 3 \sqrt{\text{정체량}}$
		건식압착공실	5,000개	/	5	1	1	$2.5 \times 3 \sqrt{\text{정체량}}$
		건식발화금마침공실	5,000개	/	4	1	1	$2.5 \times 3 \sqrt{\text{정체량}}$
		건식완성공실	40,000개	/	2	2	1	$2.5 \times 3 \sqrt{\text{정체량}}$
		건식중간검사공실	20,000개	1일분	2	2	1	$2.5 \times 3 \sqrt{\text{정체량}}$
		건식포장공실	20,000개	/	2	2	1	$2.5 \times 3 \sqrt{\text{정체량}}$
		건식수합공실	150,000개	/	2	2	1	$2.5 \times 3 \sqrt{\text{정체량}}$
		건식뇌관전압준비(가치)공 실	100,000개	/	0	0	1	$2.5 \times 3 \sqrt{\text{정체량}}$
		습식계량공실	습폭분 2kg 뇌관 5,000개	/	10	0	1	$2.5 \times 3 \sqrt{\text{정체량}}$
		습식예건조공실	10,000개	/	5	0	0	$2.5 \times 3 \sqrt{\text{정체량}}$
		습식압착공실	5,000개	/	5	1	0	$2.5 \times 3 \sqrt{\text{정체량}}$
		습식전입공실	5,000개	/	6	0	0	$2.5 \times 3 \sqrt{\text{정체량}}$

			습식발화금장입공실	20,000개	/	10	1	0	$2.5 \times^3 \sqrt{\text{정체량}}$
			습식완성공실	40,000개	/	2	2	0	$2.5 \times^3 \sqrt{\text{정체량}}$
			습식뇌관전압준비(가치)공 실	습폭분 5kg 뇌관80,000개	/	0	1	0	$2.5 \times^3 \sqrt{\text{정체량}}$
			습식중간검사공실	40,000개	/	5	1	0	$3.0 \times^3 \sqrt{\text{정체량}}$
			최종검사공실	50,000개	/	15	2	2	$3.0 \times^3 \sqrt{\text{정체량}}$
			건조공실	5,000,000개	/	2	0	1	$3.0 \times^3 \sqrt{\text{정체량}}$
			포장수합공실	6,000,000개	/	15	4	1	$3.0 \times^3 \sqrt{\text{정체량}}$
			일시저치장	5,000,000개	/	0	2	0	$3.0 \times^3 \sqrt{\text{정체량}}$
16	신호용뇌관		발음제배합공실	15kg	/	1	1	1	10
			장전공실	15kg	/	5	1	1	10
			완성공실	3,000개	1일분	8	2	1	10
			풍건공실	5,000개	/	2	2	1	10
			조립수합공실	3,000개	/	8	2	2	10
17	실탄 또는 공포 탄	산탄총용실탄	제조공실	뇌관 100,000개 실탄 100,000개	/	40	4	2	15
			착관화약통 100,000개 화약 100kg	/					

	일시저치장	실탄 200,000개 뇌관 100,000개 화약 300kg	/ / /	6	4	0	15
건설용타정총 용공포탄	발하부제조공실	폭분 4kg 발하부 10,000개	/	6	2	1	15
	장전공실	발하부 또는 뇌관 100,000개 공포탄 100,000개 화약 40kg	/ / /	6	2	1	15
	완성공실	공포탄 100,000개	/	15	2	1	15
	일시저치장	공포탄 1,000,000개 화약 150kg	/ /	0	2	0	15

기타의 실탄	장전공실	전실탄자 50,000개 뇌관 100,000개 착관화약통 100,000개 실탄 · 공포 탄 100,000개 화약 300kg	/ / / / /	50	6	2	15
	혼화공실	화약 100kg	0.5일분	10	2	2	15
	압전공실	화약 100kg	/	25	3	2	15
	완성공실	100,000개 (검사용실탄 200,000,000 개)	/	45	6	2	15
	일시저치장	실탄공포탄 1,000,000개 전실탄자 100,000개 뇌관 100,000개 화약 500kg 실탄 또는 공포탄만을	/ / / / /	0	4	0	15

			저치하는 경우 2,000,000개					
18	미진동파쇄기 및 이에 사용하는 원료용 화약	제조공실(점화구 제조공실제외)	약통 5,000개	1일분	7	2	1	15
		점화구제조공실	점화구 5,000개 화약 300kg	/	/	/	/	/
			점화구 10,000개 점화약 20kg	/	10	2	1	5
		일시저치장	약통 50,000개 점화구 50,000개 미진동파쇄기 50,000개 화약 3,000kg	/	0	2	0	20
19	화 관	점화뇌관공실	뇌관 10,000개 폭분 0.4kg	/	12	2	1	15
		조립완성공실	화관 50,000개 뇌관 10,000개	/	25	4	2	20

			화약 50kg 화관 50,000개	/ / 				
		일시저치장	40,000개	/	0	2	0	15
20	신 관	기폭뇌관공실	기폭약 0.5kg 뇌관 2,000개	/ /	25	1	1	20
		연시약압전공실	폭약 5kg 화약 50kg 뇌관 1,000개	/ / /	20	2	1	20
		전폭약압전공실	화약 100kg	/	10	2	2	20
		조립포장수합공실	뇌관 5,000개 전폭약 100kg	/ /	30	4	2	20
		일시저치장	신관 500개 40,000개	/ /	0	2	0	15
21	도폭선	제1종도폭선 심지화약 준 비공실	25	/	2	1	1	$3.0 \times^3 \sqrt{\text{정제량}}$
		제1종도폭선용전공실	25	/	2	1	1	$3.0 \times^3 \sqrt{\text{정제량}}$
		제1종도폭선압연공실	50	/	6	2	1	$3.0 \times^3 \sqrt{\text{정제량}}$
		제1종도폭선수합공실	25	/	1	1	1	$3.0 \times^3 \sqrt{\text{정제량}}$
		제2종도폭선일시저치장	300	/	0	2	1	$3.0 \times^3 \sqrt{\text{정제량}}$
		제2종도폭선 심지화약 준 비공실	200	/	2	0	1	$3.0 \times^3 \sqrt{\text{정제량}}$
		제2종도폭선건조공실	200	/	2	2	1	$3.0 \times^3 \sqrt{\text{정제량}}$

		제2종도폭선 심지화약 사분공실(심지화약을 체 로 고르는 작업실을 말 한다. 이하 같다)	200	/	2	2	1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제2종도폭선함약공실	100	/	8	2	1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제2종도폭선수함공실	10	/	2	1	1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일시저치장	300	/	0	2	1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22	도화선	심지화약 일시저치장	600	/	0	2	1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심지화약 개함공실	300	/	2	2	1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심지화약 사분공실	120	/	2	2	1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심지화약 분배공실	300	/	2	2	1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심지화약 혼전공실	300	/	2	2	1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함약공실	60	/	25	3	1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일광건조장	50	/	0	0	0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일시저치장	300	/	0	2	1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23	탄약(약포·약통 및 특수탄을 제외한다)	용전공실	2,000	/	20	4	2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압전공실	4,000	/	12	2	1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전약탄입공실	1,000	/	15	4	2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전폭약식관부착공실	1,000	/	10	4	2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발사약화관부착공실	2,000	/	10	4	2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탄약통부착공실	1,500	/	8	4	1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포장수합공실	2,000	/	2	4	2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탄약통조립수합공실	2,000	/	35	6	3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일시저치장	6,000	/	0	6	0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24	탄약의 약포 또는 약통	약포전약공실	800	/	20	4	3	$2.8 \times 3 \sqrt{\text{정제량}}$
		화약통 화관부착공실	2,000개	/	5	4	2	$2.8 \times 3 \sqrt{\text{정제량}}$
		약통장전조립공실	200	/	25	4	1	$2.8 \times 3 \sqrt{\text{정제량}}$
		수합공실	1,000	/	10	4	1	$2.8 \times 3 \sqrt{\text{정제량}}$
		약통조립공실	800	/	25	4	2	$2.8 \times 3 \sqrt{\text{정제량}}$
		약통조립수합공실	1,500	/	35	4	3	$2.8 \times 3 \sqrt{\text{정제량}}$
		일시저치장	6,000	/	0	4	0	$2.8 \times 3 \sqrt{\text{정제량}}$
25	특수탄	전폭약취급공실	100	/	10	2	1	15
		혼화공실	200	0.5일분	10	2	1	15
		전실공실	200	/	20	2	1	15
		점화제연시약취급공실	100	/	20	2	1	15
		조립포장수합공실	화관 1,000개	/	30	6	2	15
			신관 1,000개	/				
			장전폭약50kg					
			화약 2,000kg					
		일시저치장	특수탄 1,000개	/	0	4	0	20
			화약 2,000kg					

26	다른 난 기재된 것외 의 소량의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하는 화공 품	혼화공실	15	0.5일분	5	2	1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성형공실	15	/	6	2	1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조립공실	15	/	20	4	2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포장수합공실	30	/	5	2	1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일시저치장	1,500	/	0	4	0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27	해 철	실탄공포탄해체공실	100,000	/	45	8	0	15
		탄약류분해공실	2,000	/	30	8	0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전약탄탈약공실	3,000	/	14	4	0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특수탄해체탈약공실	1,000	/	10	8	4	15
		화관신관해체공실	20	/	20	4	0	15
		탄약류화관신관해체공실	2,000	/	35	8	0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일시저치장	6,000	/	0	4	0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28	긴급탈출장치	조립공실	1,000kg	/	20	4	2	$1.0 \times 3 \sqrt{\text{정제량}}$
		완성공실	2,000kg	/	20	8	2	$1.0 \times 3 \sqrt{\text{정제량}}$
		일시저치장	10,000kg	/	0	12	5	$1.0 \times 3 \sqrt{\text{정제량}}$
29	로켓트추약연소시험장	3,000kg	/	20	6	0	$2.0 \times 3 \sqrt{\text{정제량}}$	
30	폭발시험장(수중시험 장에 한한다)	50	/				10	
31	연소시험장	250	/				15	

32	발사시험장		10	/				10
33	화약·화공품의 폐약소각장(꽃불류등의 폐약소각장을 제외한다)		100	/				20
34	폭약폐약 소각장(꽃불류 등 폐약소각장을 제외한다)		200	0.5일분				30
35	꽃불류(장난감 꽃불류를 제외한다) 또는 이의 원료용 화약·폭약	배합공실(염소산염을 함유한 화약·폭약을 제외한다)	1,000kg	0.5일분	4	1	1	$2.4 \times 3 \sqrt{\text{정제량}}$
		배합공실(염소산염을 함유한 화약·폭약에 한한다)	60kg	/	2	1	1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전약공실(발음약을 제외한다)	100kg	/	6	1	0	$2.4 \times 3 \sqrt{\text{정제량}}$
		전약공실(발음약에 한한다)	30kg	/	4	1	1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구슬넣는 공실(화물 및 뇌물에 한한다)	60킬로그램(지름 80센티미터 이상의 타상연화는 120킬로그램)	/	4	1	0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성형공실(구슬 및 활물· 뇌물을 제외한다)	100kg	/	6	1	0	$2.4 \times^3 \sqrt{\text{정제량}}$
		폭발 위험 있는 건조공 실(일건장을 제외한다)	300kg	/	2	1	0	$3.0 \times^3 \sqrt{\text{정제량}}$
		발화의 위험 있는 건조 공실(일건장을 제외하 다)	300kg	/	2	1	0	$2.4 \times^3 \sqrt{\text{정제량}}$
		일건장	300kg	/	3	3	0	$1.5 \times^3 \sqrt{\text{정제량}}$
		조립완성공실	200kg	/	10	1	0	$2.4 \times^3 \sqrt{\text{정제량}}$
		포장수합공실	350kg	/	10	1	0	$2.4 \times^3 \sqrt{\text{정제량}}$
		계식연화소비준비공실	200kg	/	10	1	0	$2.4 \times^3 \sqrt{\text{정제량}}$
		일시저치장	1,000kg	/	0	2	0	$2.0 \times^3 \sqrt{\text{정제량}}$
36	장난감꽃블류 또는 이 의 원료용 화약 · 폭 약	배합공실(염소산염을 함 유한 화약 또는 폭약에 한한다)	폭발의 위 험있는 공 실은 30킬 로그램	0.5일분	2	1	1	$3.0 \times^3 \sqrt{\text{정제량}}$
			발화의 위 험있는 공 실은 50킬 로그램	/	2	1	1	$2.4 \times^3 \sqrt{\text{정제량}}$
		배합공실 (염소산염을	폭발의 위	/	4	1	1	$3.0 \times^3 \sqrt{\text{정제량}}$

함유한 화약 또는 폭약을 제외한다)	험있는 공실은 30킬로그램					
	발화의 위험있는 공실은 100킬로그램	/	4	1	1	$2.4 \times^3 \sqrt{\text{정제량}}$
재단천공공실(장난감용 꽃볼류를 자르거나 구멍을 뚫는 작업실을 말한다)	50kg	/	4	1	1	$2.4 \times^3 \sqrt{\text{정제량}}$
발음약의 전약성형공실(재단천공공실을 제외한다)	30kg	/	4	1	1	$3.0 \times^3 \sqrt{\text{정제량}}$
선향꽃볼 및 연기를 내는 전약성형공실(재단천공공실을 제외한다)	100kg	/	15	1	1	$1.5 \times^3 \sqrt{\text{정제량}}$
발음약 선향꽃볼 및 연기를 내는 것외의 전약성형공실(재단천공공실을 제외한다)	100kg	/	10	1	1	$2.4 \times^3 \sqrt{\text{정제량}}$
폭발의 위험있는 건조공실(일건장을 제외한다)	30kg	/	2	1	0	$3.0 \times^3 \sqrt{\text{정제량}}$
불이 날 위험있는 건조공실(일건장을 제외한다)	300kg	/	2	1	0	$2.4 \times^3 \sqrt{\text{정제량}}$

		일건장	300kg	/	2	1	0	$1.5 \times 3 \sqrt{\text{정제량}}$
		완성공실	100kg	/	15	1	0	$1.5 \times 3 \sqrt{\text{정제량}}$
		포장수합공실	100kg	/	6	1	0	$1.5 \times 3 \sqrt{\text{정제량}}$
		원료용 화약 · 폭약 또는 크랙커볼 일시저치장	1,000kg	/	0	2	0	$2.0 \times 3 \sqrt{\text{정제량}}$
		원료용 화약 · 폭약 또는 크랙커볼외의 완구용 꽃불류의 일시저치장	1,000kg	/	0	2	0	$1.0 \times 3 \sqrt{\text{정제량}}$
37	신호용 열관·신호용 화전 및 그 원료용 화약	배합공실	100kg	/	2	1	1	$3.0 \times 3 \sqrt{\text{정제량}}$
		발화약제조공실	5kg	/	10	1	1	$2.4 \times 3 \sqrt{\text{정제량}}$
		전약공실	200kg	/	10	1	1	$2.4 \times 3 \sqrt{\text{정제량}}$
		조립완성공실	500kg	/	15	2	0	$2.4 \times 3 \sqrt{\text{정제량}}$
		건조공실(일건장을 제외한다)	500kg	/	2	1	0	$2.4 \times 3 \sqrt{\text{정제량}}$
		일건장	500kg	/	2	2	0	$1.5 \times 3 \sqrt{\text{정제량}}$
		일시저치장	1,000kg	/	0	2	0	$2.0 \times 3 \sqrt{\text{정제량}}$
38	꽃불류등의 폭발·연소 시험장 또는 폐약소각장	15kg	/	2	1	0	8	

교재용 또는 연구용 공기총의 관리수칙(제20조관련)

항 목	내 용
1. 총기의 수급등	<p>가. 총기의 수급은 교육부·특별시·광역시·도교육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장의 수급계획과 각급학교 자체의 구매계획에 의할 것</p> <p>나. 구매총기의 수송은 각급학교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수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 호송을 받을 것</p> <p>다. 각급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총기를 구매(수령)한 때에는 총기원부와 총기 또는 납탄 출납 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정해진 사항을 기재·정리할 것</p>
2. 총기의 보관·관리	<p>가. 보유총기는 각급학교 또는 공공기관에 설치한 총기격납고에 보관할 것. 다만, 학생군사교육훈련용 무기와 함께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이들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할 것</p> <p>나. 보관총기의 관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기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개머리판에 표시할 것 (2) 총기는 고유번호 순서에 따라 보관할 위치를 정하여 보급할 것 (3) 납탄은 상자에 넣어 지면으로부터 8cm이상의 벽으로부터 5cm이상의 간격을 두어 보관하고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총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격발여부를 확인한 후 보관할 것
3. 총기취급책임자의 선임	<p>가. 각급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총기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총기취급책임자를 선임할 것</p> <p>나.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기취급책임자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병질환자 (2) 성격이 난폭하거나 주벽이 있는 자 (3) 그밖의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p>다. 총기취급책임자로 선임된 자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해임하고 새로이 선임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하거나 퇴직한 때 (2)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때 (3) 다른 학교 또는 기관으로 전출한 때 (4) "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총기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p>라. 각급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총기취급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p>
<p>4. 총기취급 책임자의 임무</p>	<p>○ 총기취급책임자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기의 총기격납고에의 출고 및 입고 (2) 총기의 대여·회수·고장여부의 확인 및 손질 (3) 총기격납고시설 및 열쇠의 관리 (4) 총기의 망실·도난 등 사고의 방지 (5) 그밖의 총기의 보관관리 업무수행
<p>5. 총기의 출고 및 회수</p>	<p>가. 총기의 출고 및 회수입고는 총기취급책임자가 할 것</p> <p>나. 총기의 사용 후에는 즉시 회수하여 입고하여야 하며, 입고할 때에는 고장·파손총기의 유무 및 손질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것</p> <p>다. 총기취급책임자가 총기를 출고 입고할 때에는 총기출납부에 기재할 것</p>
<p>6. 총기의 손질</p>	<p>가. 총기의 손질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하절·장마기 및 농무기에는 수시로 손질하여 녹이 슬지 아니하도록 할 것</p> <p>나. 총기취급책임자는 총기를 손질한 때에는 총기손질 일지여이를 기재할 것</p>
<p>7. 총기격납고의 위치</p>	<p>○ 총기격납고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재로부터 방호될 수 있는 장소 (2) 긴급사태 발생시 반출입이 쉬운 장소 (3) 호우시 침수되지 아니하는 지대로서 배수가 잘되는 장소
<p>8. 총기격납고의 시설</p>	<p>○ 총기격납고는 보유총기를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너비로 견고하게 설치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풍에 의하여 습기가 방지될 수 있도록 환기 장치를 할 것 (2) 총기시설은 총을 세워서 진열할 수 있도록 할 것 (3) 출입문은 철제문으로 할 것 (4) 자물쇠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것으로 하되,

9. 간이총기격납고	<p>2개를 장치할 것</p> <p>(5) 경보장치는 건전지용으로 개문시에 경보를 발하도록 하고 그 벨은 당직실과 교무실 및 사무실에 각각 설치할 것</p> <p>(6) 소화기·방화수·방화사 그밖의 소화시설을 할 것</p> <p>(7) 전기시설은 누전되지 아니하도록 하되, 내등과 외등을 설치할 것</p> <p>가. 보유총기가 30정이하일 때에는 특수 캐비닛에 격납할 것</p> <p>나. 간이총기격납고는 각급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숙직실 등에 설치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p> <p>(1) 캐비닛은 보유총기를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크기로 하되, 두터운 철판으로 할 것</p> <p>(2) 총받침대(총가)는 일반 총기격납고에 준하여 목재로 할 것</p> <p>(3) 자물쇠는 캐비닛 자물쇠 장치 외에 외부에 1개를 더 장치할 것</p> <p>(4) 경보장치는 일반총기격납고에 준할 것</p>							
10. 총기격납고 열쇠의 보관	<p>가. 총기격납고의 열쇠는 일상 사용하는 열쇠 외에 비상용 열쇠를 구비하여야 하며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보관할 것</p> <p>(1) 일상사용열쇠는 총기취급책임자가 보관할 것</p> <p>(2) 비상용 열쇠는 주간에는 총기취급책임자가, 밤에는 당직책임자가 보관할 것</p>							
11. 점 검	<p>나. 비상열쇠는 열쇠함에 넣어 취급책임자가 봉인할 것</p> <p>가. 총기취급책임자는 매일 현물을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할 것</p> <p>나. 각급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수시로 총기보관 관리상태와 총기격납고시설 등을 점검·확인할 것</p> <p>다. 관할 경찰서장은 연 2회 지정학교 및 공공기관의 보유총기의 보관상태를 점검하고,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특히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것</p>							
12. 순찰 및 순시	<p>가. 총기사고방지를 위하여 근무시간이후 다음날 출근시까지의 다음과 같이 총기격납고에 대한 순찰을 할 것</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43 1780 494 1825">구 분</th> <th data-bbox="494 1780 662 1825">순찰자</th> <th data-bbox="662 1780 837 1825">순찰기준</th> <th data-bbox="837 1780 1324 182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3 1825 494 2027">퇴근 후 출근까지</td> <td data-bbox="494 1825 662 2027">일숙직자</td> <td data-bbox="662 1825 837 2027">매 2시간 1회</td> <td data-bbox="837 1825 1324 2027">학군단 또는 예비군 무기고에 같이 보관하는 때에는 학군단 또는 예비군무기관리규정에 의할 것</td> </tr> </tbody> </table>	구 분	순찰자	순찰기준	비 고	퇴근 후 출근까지	일숙직자	매 2시간 1회	학군단 또는 예비군 무기고에 같이 보관하는 때에는 학군단 또는 예비군무기관리규정에 의할 것
구 분	순찰자	순찰기준	비 고					
퇴근 후 출근까지	일숙직자	매 2시간 1회	학군단 또는 예비군 무기고에 같이 보관하는 때에는 학군단 또는 예비군무기관리규정에 의할 것					

13. 총기의 관리 전환	<p>나. 각급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주 2회이상, 관할 지·파출소장은 월 1회 이상 무기격납고에 대한 순시를 할 것이다. "나"의 규정에 의하여 순시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순시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할 것</p> <p>○ 총기를 관리전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과 교육감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증감상황을 보고(통보)할 것</p>
14. 신고	<p>○ 각급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p> <p>(1) 총기의 분실·망실 (2) 총기의 도난 및 빼앗김 (3) 그밖의 총기 사고</p>
15. 총기사고 책임의 한계	<p>○총기관리의 불철저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1차 책임을 진다.</p> <p>가. 총기보관중의 사고</p> <p>(1) 근무시간중에 발생한 사고는 총기취급책임자 (2) 퇴근시간이후 다음날 출근시간 사이에 발생한 사고는 당직 근무자 (3) 사고발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는 총기취급책임자</p> <p>나. 대여중의 사고</p> <p>(1) 교육·사격훈련(휴식시간 포함)중 발생한 사고는 교육 또는 사격훈련담당자 (2) 총기손질을 위한 대여중에 발생한 사고는 취급책임자</p>
16. 보고	<p>○각급학교 또는 공공의 기관의 장은 보유총기 현황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할 것</p>
17. 장부의 비치	<p>○각급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장·경찰관서(지·파출소)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할 것</p> <p>가. 학교 및 공공기관</p> <p>(1) 총기원부 (2) 총기납탄출납부 (3) 총기손질일지 (4) 감독순시실시부</p> <p>나. 경찰관서</p> <p>총기보유지정자대장</p>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에 대한 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2조제1항 관련)

대상	교육과목		교육 시간
1. 업총·공기총·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법 제12조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1) 소지·운반의 제한 2) 허가갱신절차(석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보관·휴대·운반시의 제한 4) 수렵절차 및 제한(석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허가 목적 외 사용금지 6) 성능개조 금지	30분
	나. 업총·공기총·석궁의 취급실기	1) 성능 및 조작방법 2) 사격술(석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안전관리수칙 4) 도난·분실·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30분
2.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1) 제조 시설 및 보안 물건과의 보안거리 기준 2) 제조방법의 기준 3) 화약류의 사용허가 절차 4)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5) 화약류의 안전관리	30분
	나. 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실기	1) 화약류의 종류 및 성능에 대한 지식 가) 폭발반응·순폭(殉爆) 및 폭발 속도 나) 화약류의 분류·구성·성질 및 용도 다) 화약류의 위험 또는 안정도 2) 화약류의 취급 가) 화약류의 보관(저장) 나) 화약류의 적재 운반 다) 안정도 검사 및 불량 화약류의 처	1시간

		<p>리</p> <p>3) 발파방법 가) 발파의 준비 나) 천공(구멍 뚫기) · 장전 및 점화 다) 불발잔약 및 후 가스의 점검 안전 처리</p> <p>4) 사고사례와 방지책</p>	
3. 수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p>1) 보관해제 절차 및 총포·총포 소지자의 위치정보수집 절차</p> <p>2) 소지·보관·운반·사용 등 취급 관련 규정</p> <p>3) 실탄 소지·사용 규정</p> <p>4) 수업인 준수사항</p> <p>5) 수업절차 및 제한(석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p>	30분
	나. 엽총·공기총·석궁의 취급 실기	<p>1) 성능 및 조작방법</p> <p>2) 사격술(석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p> <p>3) 안전관리수칙</p> <p>4) 도난·분실·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p>	30분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19. 9. 19.>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에 대한 교육의 강사자격
(제32조제2항 관련)

교육 과목	강사자격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가.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로서 5년 이상의 총포·도검·화약류·석궁에 관한 사무취급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총포·도검·화약류·석궁에 관한 사무취급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총포·도검·화약류·석궁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2. 엽총·공기총·석궁의 취급실기	가. 엽총소지허가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수렵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엽총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받았던 사람으로서 사격선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총포·석궁의 제조·판매업을 5년 이상 경영한 사람 라. 별표 제16의5 제1호의 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검사원의 자격기준에 따른 검사원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총포·석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 실기	가. 화약류의 지식 1)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1급)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응용화학 또는 화학학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화약류 취급(발파) 및 안전관리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5년 이상 화약류 취급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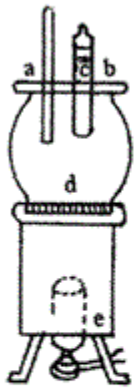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의2] <신설 2026. 1. 8.>

동일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화약류(제40조의2제3항 단서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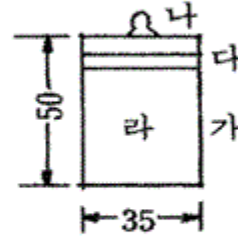
가	나	화약	폭약	화공품									
				공업용 뇌관·전기 뇌관		신관		실탄·공포탄	도폭선	폭탄·어뢰탄·포탄 등으로 작전된 것(소이제를 사용한 것 제외)	꽃불류		그밖의 화공품(소이제 제외)
				특용에어는것	별기들있는것	신관(포경용을제외)	포경용신관				크래커불인옥	그밖의꽃불류	
화약		○		○			○	○	○		○	○	
폭약		○		○			○	○		○		○	
공업용 뇌관·전기 뇌관	특별용기에 들어있는것	○	○		○	○	○	○				○	
	그밖의것			○		○	○	○				○	
신관	신관(포경용을제외)			○	○				○			○	
	포경용신관	○		○	○	○	○	○				○	
실탄·공포탄		○	○	○	○	○	○	○				○	
도폭선		○	○	○	○	○	○	○				○	
폭탄, 어뢰, 로켓탄, 포탄 등으로 작약을 장전하여 있는것(소이제를 사용한 것 제외)		○	○			○	○	○				○	
꽃	크래커불·인옥								144		○		

유리산시험 및 내열시험용시험기(제44조제2항제3호관련)

1. 탕전기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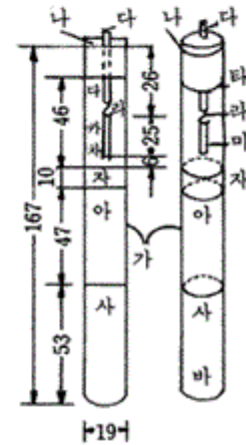
- A. 온도계
- B. 내열시험관
- C. 탕전기의 뚜껑
- D. 탕전기
- E. 버너
- 가. 유리제 칭량병
- 나. 밀어마치는 뚜껑
- 다. 밀어마치는 부분
- 라. 시료



※ 단위는 밀리미터로 한다.

2. 내열용 시험관

- 가. 유리시험관(내용적 40 내지 38입방센티미터)
- 나. 고무마개
- 다. 유리봉
- 라. 백금선고리
- 마. 아이오딘화칼륨 녹말종이
- 바. 시료
- 사. 각선(높이의 $\frac{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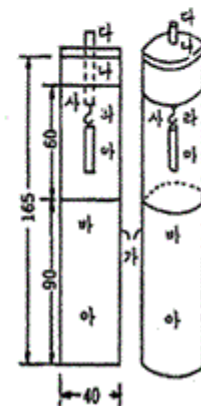


- 아. 각선(탕의 침탕위치)
- 자. 각선(탕전의 위치)
- 차. 시험지하단
- 카. 시험지상단
- 타. 각선(고무마개의 하단)

※ 단위는 밀리미터로 한다.

3. 유리산 시험기

- 가. 원통유리용기
- 나. 고무마개
- 다. 유리봉
- 라. 백금선고리
- 마. 청색리트머스 시험지
- 바. 각선(시료의 높이)
- 사. 각선(고무마개의 하단)
- 아. 시료



※ 단위는 밀리미터로 한다.

화공품의 안정도시험 기준 및 방법(제44조제1항관련)

1. 외관검사(수입품에 한한다)

종 목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화 공 품	종류 및 수량확인	허가된 내용과 제품의 종류·구조·성능이 일치할 것
		수량이 수입허가량 이내이고, 시험대상 수량과 수입량이 일치할 것
	구조형식의 원형 유지상태 검사	구조형식의 변경이나 개조·파손·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기재사항 확인	영 제9조제2항제22호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특히, 장난감용 꽃불류의 경우 '장난감용 꽃불류'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것)
사용방법 및 주의 사항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것	

2. 제품시험

가. 장난감용 꽃불류

종 목	시 험 항 목	합 격 기 준
공 통	약량 및 치수 측정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성 능 시 험	제4조제2항에 적합할 것
	점화 · 연소시험	○도화선으로 점화하는 방식인 경우 점화후 발화·발사 및 폭발까지의 시간이 최소한 3초 이상일 것 ○제품이 발화·발사 또는 폭발되지 아니하거나 사용된 제품에 연소되지 아니하는 화약이 남아 있지 아니할 것
불꽃·불티 또는꽃불을 주로 내는 것	사 용 시 험	○화약류의 연소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 ○불꽃, 불티가 사방 2m 이상 튀지 아니할 것 ○연소중 제품의 외형이 유지될 것
회전을 주로 하는것		○회전중 화약류의 연소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 ○회전중 회전판과 본체가 분리되지 아니할 것
달리기를 주로 하는 것		○달리는 과정에서는 화약류의 연소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 ○케이블꽃불 등 그 밖에 줄이 종이통 등에

	달린꽃불류는 본체와 실이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날기를 주로 하는 것	○나는 과정에서 화약류의 연소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 ○꼬리가 달린 통꽃불류는 본체와 꼬리가 견고히 부착되어 있을 것
위로 쏘아 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 것	○쏘아 올려진 방출물은 공중에서 완전히 연소될 것 ○방출물을 담은 등근통은 연소중 원형을 유지할 것
그 밖의 장난감용 꽃불류	화약류의 연소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

나. 꽃불류

종 목	시 험 항 목	합 격 기 준
공 통	점화 · 연소시험	○도화선으로 점화하는 방식인 경우 점화후 발화·발사 및 폭발까지의 시간이 최소한 3초 이상일 것 ○제품이 발화 · 발사 또는 폭발되지 아니하거나 사용된 제품에 연소되지 아니한 화약이 남아 있지 아니할 것
	사 용 시 험	○쏘아 올려진 방출물은 20m 이상의 높이에서 퍼지며 공중에서 완전히 연소할 것(쏘아 올리는 꽃불류에 한한다) ○화약류의 발화 또는 발사로 인하여 프레임이나 철선 등이 변형되지 아니할 것

다. 뇌관류

종 목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합 격 기 준
전기뇌관	납 판 시 험	한 국 산 업 규 격 K S M-4803의 6.1의 납판시험에 의한다.	두께 4mm의 납판을 관통할 것
	점화전류시험	한 국 산 업 규 격 K S M-4803의 6.2의 점화전류 시험의(1)에 의한다.	0.25A의 전류로 30초간 통전(通電)한 때에 발화되지 아니할 것
	내 수 시 험	한 국 산 업 규 격 K S M-4803의 6.3의 내수시험에 의한다.	수압 1.0kgf/cm ² 에서 1시간 이상 담근 후, 납판시험을 하여 납판을

			관통할 것
	내정전기시험	한국 산업 규격 K S M-4803의 6.5의 내정전기 시험에 의한다.	방전한 때에 발화되지 아니할 것
공업용 뇌관(비전기내관)	납 판 시험	한국 산업 규격 K S M-4803의 6.1의 납판시험에 의한다.	두께 4mm의 납판을 관통할 것
	내수 시험	한국 산업 규격 K S M-4803의 6.3의 내수시험에 의한다.	수압 1.0kgf/cm ² 에서 1시간 이상 담근 후, 납판시험을 하여 납판을 관통할 것
전기점화옥	내정전기시험	한국 산업 규격 K S M-4803의 6.5의 내정전기 시험에 의한다.	방전한 때에 발화되지 아니할 것
뇌관용관체	납 판 시험	한국 산업 규격 K S M-4803의 6.1의 납판시험에 의한다.	두께 4mm의 납판을 관통할 것

라. 실탄(산탄 포함) 및 공포탄류

종 목	시 험 항 목	합 격 기 준
공 통	장착 및 발사 시험	○장착이 용이하고 격발이 가능할 것 ○불발 및 파편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마. 신호용 화공품류

종 목	시 험 항 목	합 격 기 준
공 통	점화장치 작동여부 시험	점화에 위험이 없을 것 점화장치가 안전하게 작동할 것
	연 소 시 험	화약류의 연소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 연소중 부속품 손상 등 안전에 위해를 미치는 요인이 없을 것

바.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종 목	시 험 항 목	합 격 기 준
공 통	원료 화약 시험	원료 화약을 뇌관을 이용하여 기폭(起爆)했을 때,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을 일으키지 않을 것
	용기 파열 시험	용기는 밀폐된 상태에서 화약을 넣고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압력의 1.5배의 압력을 견딜 수 있을 것
	용기 구조 시험	용기는 일체형 또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결합되어 분해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점화 전류 시험	0.25A의 전류를 30초간 통하게 할 때 발화되지 않을 것
--	----------	-----------------------------------

화약류의 포장기준(제45조관련)

1. 목상자

수납화약류 종 류		(1)	(2)	(3)
			화약류(신호용염관·신호용화전 및 꽃불류를 제외한다)	신호용염관·신호용화전 또는 꽃불류(인옥 및 크랙커볼을 제외한다)
목재	나무의 종 류	한국산업규격 KS A2151의 41의(1)의 나무(가문비나무, 소나무, 전나무, 나왕, 미송,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진 나무)이어야 한다. 덧대기 재료도 또한 같다.	한국산업규격 KS A2151의 41의(1)의 나무(가문비나무, 소나무, 전나무, 나왕, 미송,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진 나무)이어야 한다. 덧대기 재료도 또한 같다.	한국산업규격 KS A2151의 41의(1)의 나무(가문비나무, 소나무, 전나무, 나왕, 미송,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진 나무)이어야 한다. 덧대기 재료도 또한 같다.
	등 급	썩거나 갈라지고 부러지지 아니한 건재로 하되, 생결은 40mm 이내 유결은 20mm 이내로서 용이를 발절접착제로 붙여야 하며, 용이공 등은 나무로 메꾸어야 한다.	썩거나 갈라지고 부러지지 아니한 건재로 하되, 생결은 40mm 이내 유결은 20mm 이내로서 용이를 발절접착제로 붙여야 하며, 용이공 등은 나무로 메꾸어야 한다.	썩거나 갈라지고 부러지지 아니한 건재로 하되, 생결은 40mm 이내 유결은 20mm 이내로서 용이를 발절접착제로 붙여야 하며, 용이공 등은 나무로 메꾸어야 한다.
	건조도	수분은 18% 이하로 한다.	수분은 18% 이하로 한다.	수분은 18% 이하로 한다.
	비 중	0.35를 초과하여야 한다.	0.35를 초과하여야 한다.	0.35를 초과하여야 한다.
판 자 의 두 께	모 막 이 판	내용물의 총중량이 25kg 이하인 때에는 13.5mm(보강용 덧대기를 붙일 때에는 11mm)이상, 25kg이상 50kg이하일 때에는 14.5mm(보강용 덧대기를 붙일 때에는 13.5mm)이상으로 한다.	12mm 이상	14mm 이상

<p>덮개 판 옆 판 밑 판</p>	<p>12mm 이상으로 한다.</p>	<p>11mm 이상. 다만 상자의 부피가 0.05m³ 이하로서 내용물의 총중량의 신호용염관 신호용화전 또는 장난감용 꽃볼류외의 꽃볼류를 수납하는 경우로서 10kg 이하인 때 및 장난감용 꽃볼류를 수납하는 경우로서 20kg 이하일 때에는 9mm 이상이어야 한다.</p>	<p>11mm 이상</p>
<p>보강용 덧대기 판</p>	<p>내용물의 총중량이 25kg 미만인 때에는 11mm 이상. 25kg 이상 50kg 이하인 때에는 13.5mm(판폭이 45mm 이상일 때에는 11mm) 이상으로 한다.</p>	<p>12mm 이상</p>	<p>14mm 이상</p>
<p>판 격</p>	<p>보강용 덧대기판은 40mm 이상 그밖의 판자는 내용물의 총중량이 25kg 미만일 때에는 60mm 이상. 25kg 이상 50kg 이하일 때에는 75mm 이상이어야 하며 3매의 판자를 쪽대를 이을 때에는 그 중심이 되는 판자는 그 3매의 판폭이 합계의 3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도화선 외의 것을 수납함에 있어서의 보강용 덧대기를 대지 아니할 때에는 모막이판의 판폭은 24m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p>	<p>보강용 덧대기는 40mm 이상 그밖의 판자는 60mm 이상이어야 한다.</p>	<p>보강용 덧대기는 40mm 이상 그밖의 판자는 60mm 이상이어야 한다.</p>

각 부위 의 판자의 매수	쪽매맞춤 판자의 폭의 합계가 30cm 이상인 경우에는 3매 이하 그밖의 경우에는 2매 이하로 한다.	쪽매맞춤 판자의 폭의 합계가 30cm 이상인 경우에는 3매 이하 그밖의 경우에는 2매 이하로 한다.	쪽매맞춤 판자의 폭의 합계가 30cm 이상인 경우에는 3매 이하 그밖의 경우에는 2매 이하로 한다.
쪽매맞춤 의 구조	쪽매대맞춤 또는 재허 쪽매맞춤으로 한다.		
못	한국산업규격 KS D3553 일반철못(종류, 형상, 치수에 있어서는 N38B 또는 N45B의 것에 한한다. 다만 덧대기에 박는 경우에는 N25B 또는 N32B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이와 상응한 못을 사용하되 모막이 판에 박는 못의 줄 안의 간격은 40mm 이상 80mm 이하로 하여야 하며 또한 동일 판자의 양끝에는 각각 2개 이상 사용할 것	한국산업규격 KS D3553 일반철못(종류, 형상, 치수에 있어서는 N38B 또는 N45B의 것에 한한다. 다만 덧대기에 박는 경우에는 N25B 또는 N32B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이와 상응한 못을 사용하되 모막이 판에 박는 못의 줄 안의 간격은 40mm 이상 80mm 이하로 하여야 하며 또한 동일 판자의 양끝에는 각각 2개 이상 사용할 것	한국산업규격 KS D3553 일반철못(종류, 형상, 치수에 있어서는 N38B 또는 N45B의 것에 한한다. 다만 덧대기에 박는 경우에는 N25B 또는 N32B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이와 상응한 못을 사용하되 모막이 판에 박는 못의 줄 안의 간격은 40mm 이상 80mm 이하로 하여야 하며 또한 동일판자의 양 끝에는 각각 2개 이상 사용할 것
나사못	덧개판에는 한치 2푼나사 못 8본 이상을 박고 그 중 2개소에는 덧개판에 지름 30mm 깊이 3mm에 평활한 구멍을 파고 한치 2푼의 너트 나사못을 박은 후 봉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 타	(1) 모막이판은 1매의 판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강용 덧대기를 댈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목상지는 신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못 판자의 파손등의 결함을	(1) 모막이판은 1매의 판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강용 덧대기를 댈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목상지는 신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못 판자의 파손등의 결함을	(1) 모막이판은 1매의 판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강용 덧대기를 댈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목상지는 신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못판자의 파손등의 결함을

	보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보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보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	-----------------

2. 골판지 상자

	(1)	(2)	(3)
수납하는 화약류의 종류	화약류(신호용염관 · 신호용화전 및 꽃불류 또는 공업용뇌관 · 전기뇌관을 제외한다)	신호용염관, 신호용화전 또는 꽃불류(인옥 및 크랙커볼을 제외한다)	인옥 또는 크랙커볼
재질 및 종류	한국산업규격 KS A1502 및 1531의 2중 양면골판지상자 3종이상의 것으로서 압축하중이 600kg 이상이며 또한 표면라이나에는 내수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일 것 다만 내장을 금속관으로 사용한 것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양면골판지상자 4종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일 것 다만 도화선 · 전기도화선 또는 도포선을 수납할 경우에는 양면골판지상자 5종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축하중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한국산업규격 KS A1502 및 1531의 2중 골판지상자 4종 이상이거나 2중 양면골판지상자 3종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압축하중 500kg 이상이며 표면 라이나에는 내수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일 것. 다만, 장난감용꽃불류를 수납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의 총중량이 12kg 이하일 경우에는 압축하중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한국산업규격 KS A1502 및 1531의 양면골판지상자 6종이거나 2중 양면골판지상자 4종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압축하중이 600kg 이상이며 라이나에는 내수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일 것
접합	한국산업규격 KS A1523의 천감테이프 KS A1522의 종이감테이프(폭 50mm 이상의 것에 한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또한 평철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합할 것. 다만 도화선 외의 것을 수납할 경우의 평철사는 마찰 또는 충격에 의하여 불꽃이 날 염려가 없는 것에 한한다.	한국산업규격 KS A1523의 천감테이프 KS A1522의 종이감테이프(폭 50mm 이상의 것에 한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또한 평철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합할 것. 다만 도화선 외의 것을 수납할 경우의 평철사는 마찰 또는 충격에 의하여 불꽃이 날 염려가 없는 것에 한한다.	한국산업규격 KS A1523의 천감테이프 KS A1522의 종이감테이프(폭 50mm 이상의 것에 한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또한 평철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합할 것. 다만 도화선 외의 것을 수납할 경우의 평철사는 마찰 또는 충격에 의하여 불꽃이 날 염려가 없는 것에 한한다.

봉 합	밀면은 바깥날개와 안날개와의 접합면을 접착제로 붙이든가 또는 평철사로 봉합하고 뚜껑은 바깥날개와 안날개와의 접합면을 접착제로 맞붙이고 다시밀면(평철사로 봉한 것을 제외한다) 및 뚜껑은 이외에 한국산업규격 KS A1523의 2종 또는 3종 천감테이프(폭이 50mm 이상의 것에 한한다) 또는 한국산업규격 KS A1522의 2종 이상의 종이감테이프(폭 50mm 이상의 것에 한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봉합한다.	밀면은 바깥날개와 안날개와의 접합면을 접착제로 붙이든가 또는 평철사로 봉합하고 뚜껑은 바깥날개와 안날개와의 접합면을 접착제로 맞붙이고 다시밀면(평철사로 봉한 것을 제외한다) 및 뚜껑은 이외에 한국산업규격 KS A1523의 2종 또는 3종 천감테이프(폭이 50mm 이상의 것에 한한다) 또는 한국산업규격 KS A1522의 2종 이상의 종이감테이프(폭 50mm 이상의 것에 한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봉합한다.	밀면은 바깥날개와 안날개와의 접합면을 접착제로 붙이든가 또는 평철사로 봉합하고 뚜껑은 바깥날개와 안날개와의 접합면을 접착제로 맞붙이고 다시밀면(평철사로 봉한 것을 제외한다) 및 뚜껑은 이외에 한국산업규격 KS A1523의 2종 또는 3종 천감테이프(폭이 50mm 이상의 것에 한한다) 또는 한국산업규격 KS A1522의 2종 이상의 종이감테이프(폭 50mm 이상의 것에 한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봉합한다.
기 타	1. 골판지 상자는 신품을 사용할 것 2. 평철사는 이연 또는 구리로 도금한 것을 사용할 것	1. 골판지 상자는 신품을 사용할 것 2. 평철사는 이연 또는 구리로 도금한 것을 사용할 것	1. 골판지 상자는 신품을 사용할 것 2. 평철사는 이연 또는 구리로 도금한 것을 사용할 것

3. 지제 또는 합성수지제의 포대

수납하는 화약류의 종류	초 유 폭 약
재질 및 구조	합성수지제의 포대(접합부가 없는 튜브상으로 된 것에 한한다) 또는 한국산업규격 KS M7501크라프트지로 된 포대를 사용하되 6겹 이상의 경우에는 맨 안겹에는 내유성을, 맨 바깥겹에는 내수성을 부여하여야 하며, 4겹 이상의 경우에는 맨 안겹에는 합성수지제의 포대를 사용할 것
강 도	한국산업규격 KS A1015 시험방법에 의하여 파열(개봉을 포함한다)까지의 낙하 회수가 10회 이상일 것
봉 합	마찰 또는 충격에 의하여 불꽃이 날 염려가 없고 또한 다른 포장물을 손상할 염려가 없는 것으로 봉합할 것
기 타	포대는 신품을 사용할 것

4. 공업용뇌관, 전기뇌관의 외장용 특별용기

재 료 및 규 격

화약 또는 폭약류와 같이 실는 경우에는 공업용뇌관 10,000개 또는 전기뇌관 2,500개 이하를 화약류와 같은 규격으로 겹포장한 것을 다음에 기재한 용기에 수납할 것

1. 목상자로 할 것
2. 재질은 화약과 같은 것으로 할 것
3. 판의 두께
 - (1) 모막이판은 16mm 이상일 것
 - (2) 덮개판, 옆판 및 밑판은 13mm 이상일 것
 - (3) 보강용 덧대기판은 사용한 모막이판의 두께이상으로 할 것
4. 판의 폭은 보강용 덧대기판은 45mm 이상, 그밖의 판은 75mm 이상으로 하고 3매의 판을 쪽대맞춤할 때에는 그 중심이 되는 판은 3매의 판의 폭의 합계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5. 모막이면은 보강 손잡이 덧대기로 하고 또한 손잡이 느림줄등을 사용할 것
6. 쪽대맞춤은 상자 1면에 수매의 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쪽대대맞춤 재허쪽대 또는 양알쪽대로 할 것
7. 판의 대수는 상자 1면의 폭이 30cm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2매 이하, 30cm 이상의 경우에는 3매 이하의 판을 사용할 것
8. 못 또는 나무나사 못은
 - (1) 한국산업규격 KS D3553 일반용 철못에 적합한 못중 N38B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 (2) 보강용 덧대기판에 보강을 위하여 박는 못은 끝부분을 박아 굽힐 수 있는 긴 것을 사용하고 박은 못의 끝부분을 박아 굽힐 것
 - (3) 나무나사 못은 철제 외의 것을 사용할 것
9. 두께를 고정함에 있어 두께는 철물이 밖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정첩 쇠못받이 등을 사용 고정하여야 하며 이에 사용하는 쇠못받이류는 용기의 내면 및 외면에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완충방법은 겹포장과 용기와의 간격을 25mm 이상으로 하고 이 간격에는 완충재(톱밥, 스티로폼, 목면 등)를 충전할 것
11. 사용제한

허술하게 박힌 못, 일그러진 판자, 금이 간 판자, 파손 등의 결함이 있는 용기는 사용하지 말 것

[주] 1. 섭씨 21도의 물에 24시간 담가도 떨어지지 아니하게 목재를 접착할 수 있는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골판지 상자 또는 지대 및 합성수지제의 포대에 내수성 또는 내유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약제 등은 연소성이 가장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내용물의 총중량은 목상자에 있어서는 50kg 이하로 하고 골판지상자 또는 지대 및 합성수지제의 포대에 있어서는 25kg 이하로 할 것. 다만, 화공품을 겹포장하는 경우 그 중량에 따라 이 표에 기재한 기준에 의한 목상자 또는 골판지상자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목상자 또는 골판지상자를 사용할 수 있다.
4. 내용물의 총중량 또는 부피가 극소할 때 그밖에 상자의 치수 형상 등이 이표에 의한 기준에 의하기가 곤란하거나 이 기준에 의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중량·부피에 따라 이 표의 기준에 의한 목상자 또는 골판지상자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목상자 또는 골판지상자를 사용할 수 있다.
5. 겹포장하는 경우에는 그 화약류의 성질에 따라 금속관·종이상자·폴리에틸렌대·포대·방습지대·크라프트지대 등 운반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사용하여 속포장을 한 위에 겹포장과의 사이에는 내용물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완충제(툽밥·스티로폴·목면 등)를 채워 넣을 것. 다만, 속포장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1999.7.15>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제조업자
의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제47조관련)

구 분	기 준
1. 제조시설	가. 보안거리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나. 건물 및 공작물에 관한 사항 다. 전기공작물 등 일반장치에 관한 사항 라. 시설방호에 관한 사항 마. 경계요원의 수 및 장비에 관한 사항
2. 제조방법	가. 일반안전에 관한 사항 나. 위험작업 일반에 관한 사항 다. 포장 및 수함에 관한 사항 라. 폭발시험등의 시험 및 폐약처리에 관한 사항 마. 및 바. <삭제>

(주) 제조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종류마다 작성할 것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6. 1. 8.>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제조업자등 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제48조관련)

항 목	내 용
1. 자체안전교육대상업소	<p>○ 자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업소는 다음과 같다.</p> <p>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제조업소</p> <p>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화약류 판매업소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화약류 사용업소가.</p>
2. 자체안전교육계획	<p>가. (안전교육계획) 자체안전교육계획은 그 내용·방법·시기를 정한다.</p> <p>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제조업자는 종업원의 구분에 따라 다음에 정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한다.</p> <p>(1) 간부종업원 및 안전관계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p> <p>(가) 안전의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p> <p>(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일반의 성질 및 성능개요에 관한 사항</p> <p>(다) 제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조성·성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p> <p>(라) 제조시설의 구조·위치 및 설비의 기술상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p> <p>(마) 당해 제조소의 제조방법의 기술상의 기준에 관한 사항</p> <p>(바) 화약류의 저장상의 취급기술 기준에 관한 사항</p> <p>(사) 화약류·저장소의 구조·위치 및 설비의 기술상의 기준에 관한 사항</p> <p>(아) 제조작업일지 또는 화약류저장소에서의 화약류의 출납의 기재에 관한 사항</p> <p>(자) 위험상황시의 응급조치 및 대피방법 등의 전반에 관한 사항</p> <p>(차) 그 밖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하 "총포화약법령"이라 한다)의 규정 중 필요한 사항</p> <p>(카) 그밖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제조 및 이에 따른 취급상의 안전관리 기술에 관한 사항</p> <p>(2) 일반종업원의 교육</p> <p>(가) 안전의식의 제고 및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일반의 성질개요에 관한 사항</p>

- (나) 작업예정 또는 작업중인 제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성질에 관한 사항
- (다) 사용예정이거나 사용하고 있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시설의 구조·위치 및 설비의 기술상의 기준에 관한 사항
- (라) 제조예정 또는 제조중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방법의 기술상의 기준에 관한 사항
- (마) 취급예정이거나 취급하고 있는 화약류의 저장상의 취급기술에 관한 사항
- (바) 제조작업일지 또는 화약류저장소에 있어서의 화약류의 출납의 기재에 관한 사항
- (사) 위험시의 응급조치 및 대피방법에 관한 사항
- (아) 그 밖에 총포화약법령의 규정 중 필요한 사항
- (자) 그밖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작업상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3) 미숙련 종업원의 교육

- (가) (2)항에 기재한 사항
 - (나) 총포화약법령의 규정 중 필요한 사항
 - (다) 그밖의 위에 기재한 것 외에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작업에 따른 안전상 필요한 사항
 - (라) 안전교육은 제조책임자 그밖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 또는 취급에 대한 안전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 (마) 안전교육은 종업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당한 기간을 두고 반복 실시 하여야 한다.
 - (바) 미숙련 종업원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당해 제조작업 등 취급에 종사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화약류판매업자는 다음에 정한 내용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나"항에 기재한 사항
-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허가를 받은 화약류의 성질에 관한 사항
- (3) 판매(양도·양수)명세 또는 화약류저장소에 있어서의 화약류의 출납의 기재요령
- (4) 그 밖에 총포화약법령의 규정 중 필요한 사항
- (5) 그밖의 화약류의 판매 및 화약류저장소에서 취급되는 안전관리상의 기술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자의 지정

라. 화약류사용자는 다음에 정한 내용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다"항에 기재한 사항
- (2) 사용허가를 받은 화약류의 성질에 관한 사항
- (3) 사용(양도·양수)명세 또는 화약류저장소에 있어서의 화약류 출납의 기재요령 및 발파작업일지의 기재요령
- (4) 화약류 저장 및 사용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기술에 관한 사항

가.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화약류판매업자 또는 다량의 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상당기간 계속 화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안전교육실시자로 지정된 사람은 종업원의 구분에 따라 다음에 정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간부종업원 및 안전관계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 (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의 간부종업원 및 안전관계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의 사항
 - (나) 사용중이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약류의 성질에 관한 사항
 - (다) 사용중이거나 사용하고 있는 화약류의 발파기술상의 기준에 관한 사항
 - (라) 화약류의 사용 또는 화약류저장소에 있어서의 화약류의 출납 기재요령
 - (마) 그 밖에 총포화약법령의 규정 중 필요한 사항
 - (바) 그밖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사용에 따른 취급에 대한 안전관리기술에 관한 사항
- (2) 일반종업원 및 미숙련 종업원의 안전교육
 - (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의 일반종업원 및 미숙련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의 사항
 - (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관리 및 화약류 발파의 준비, 화약류취급소 및 발파장소에 있어서의 취급, 발파(전기발파·대발파를 포함한다)의 기술상의 기준에 관한 사항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자체안전점검계획의 기준(제49조제1항관련)

항 목	내 용
1. 정기점검 실시	<p>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제조시설은 다음과 같다.</p> <p>(1) 화약류 제조소의 제조시설</p> <p>(가) 위험공실</p> <p>(나) 화약류 적체장</p> <p>(다) 위험공실에 부속한 동력실 및 경비실</p> <p>(라) 니트로셀룰로오스의 초화공실 등</p> <p>(마) 봉산고형건조공실</p> <p>(바) 폐산분리 및 폐산치장 등</p> <p>나. 정기점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실시할 것</p> <p>(1)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제조 또는 저장에 있어 성수기가 있는 제조시설 또는 저장소는 성수기 직전에 1회 이상 실시할 것</p> <p>(2) 제조시설 또는 저장소는 대청소를 한 후 그 구조·위치·설비가 영 제8조 및 제9조·제28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점검할 것</p> <p>(3) 피뢰장치·경보장치 및 소화설비 등이 기술상의 설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점검할 것</p> <p>(4) 흠독은 영 제42조 및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설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점검할 것</p>
2. 정기점검계획	<p>가. 제조업자 또는 저장소의 소유자는 점검규정을 제정하여 제조업자는 경찰청장, 저장소의 소유자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할 것. 이 규정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p> <p>나. 제조업자 및 저장소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조시설 및 저장소의 설치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제조시설 또는 저장소의 소재지 및 명칭, 점검실시기간, 점검결과와 시정 및 보수사항을 기재하고, 점검을 지휘·감독한 안전책임자가 기명 날인한다.</p>

총포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 관련)

1. 성능개조 여부 검사 기준

총종	검사구분	검사항목	검사 및 합격기준
총 및 포	구조형식	가. 구조형식의 원형유지 상태 검사	구조형식의 변형이나 개조·손괴·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나. 기관부 및 총신의 원형 유지상태 검사	기관부 및 총신의 대체 등의 변경이 없을 것
		다. 제조번호의 타각(打刻) 유지상태 검사	총포 제조번호의 타각에 변경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제조시험제품 종합검사 및 제조품 안전검사 기준

총종	검사구분	검사항목	검사 및 합격기준
권총·소총	구조형식	가. 설계도면 일치여부	허가 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나. 격발장치	연속 자동격발식이 아닐 것(경찰장비는 제외한다)
		다. 방아쇠압력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 이상일 것
		라. 조준경 부착장치	조준경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 것
		마. 제조총번 및 구경표시	제조연도 및 번호·형식·구경표시 등이 되어 있을 것
		바. 안전장치	안전장치에 결함이 없을 것
		사. 총의 구경	0.22인치 이상 0.38인치 이하일 것
	안전도(내압)시험	가. 기관부·약실 및 총열의 내압시험	계속 6발을 시험발사하여 팽창 또는 균열·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나. 낙하시험	1미터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 및 작동의 결함이 없을 것
	성능시험	발사시험	계속 6발을 시험발사하여 기계기가

엽총 및 사격총	구조형식		능고장 및 불발이 없을 것
		가. 설계도면 일치여부	허가 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나. 재질검사	국가공인기관의 재질합격 규격품일 것
		다. 격발장치	연속 자동격발식이 아닐 것
		라. 방아쇠압력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 이상일 것(사격총은 제외한다)
		마. 안전장치	안전장치의 결합이 없을 것
		바. 조준경 부착장치	조준경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 것(공기총은 제외한다)
		사. 제조총번 및 구경표시	제조연도 및 번호·형식·구경표시 등이 되어 있을 것(장약총인 경우 식별표지를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아. 연지탄의 에너지 및 탄속	60줄(J) 이하일 것
		자. 공기압축실 실린더	전체 부피는 500cm ³ 를 초과하지 않을 것
		차. 공기총의 전체길이	공기총의 전체길이는 8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일 것
		카. 총신과 압축실 실린더 재질	이온 자리가 없고 180kg/cm ²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일 것
		타. 탄창	탄창은 6개 이하의 실탄 또는 금속성탄알을 장전할 수 있을 것
파. 총의 구경	1) 엽총의 변경은 12번경 이내일 것 2) 공기총의 구경은 4.5밀리미터 이상 5.5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산탄총인 공기총의 구경은 5.5밀리미터 이상 6.4밀리미터 이		

		하로 한다.
안전도(내압)시험	가. 기관부·약실 및 총열의 내압시험	1) 강선총(라이플): 구경별 총포의 종류에 적합한 실탄 또는 공포탄(이하 "적합실탄"이라 한다)으로 계속 7발을 시험발사하여 팽창 또는 균열·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산탄총: 변경별 적합실탄(매그넘탄 사용총은 매그넘탄)으로 계속 5발을 시험발사하여 팽창 또는 균열·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이 경우 엽탄의 화약통에도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공기탱크 또는 가스탱크의 내압시험	공기총(공기 또는 가스압축식·가스용수철식만 해당한다)은 180kg/cm ² 압력에 팽창이나 균열·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마취총	구조형식	가. 설계도면 일치여부
		허가 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나. 격발장치	연속 자동격발식이 아닐 것(경찰 장비는 제외한다)
	다. 방아쇠압력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 이상일 것
	라. 조준경 부착장치	조준경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 것
	마. 제조총번 및 구경표시	제조연도 및 번호·형식·구경표시 등이 되어 있을 것
	바. 안전장치	안전장치에 결함이 없을 것
	사. 총열	총열에 강선이 없을 것
안전도(내압)시험	가. 총열 내압시험	계속 6발을 시험발사하여 팽창 또는 균열·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것
		나. 공기탱크 또는 가스탱크의 내압시험	180kg/m ² 압력에서 팽창 또는 균열·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다. 낙하시험	1미터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 및 작동의 결함이 없을 것
	성능시험	발사시험	계속 6발을 시험발사하여 기계기능고장 및 불발이 없을 것
가스 발사총	구조형식	가. 설계도면 일치여부	허가 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나. 격발장치	연속 자동격발식이 아닐 것(경찰장비는 제외한다)
		다. 방아쇠압력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 이상일 것
		라. 조준경 부착장치	조준경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 것
		마. 제조총번 및 구경표시	제조연도 및 번호·형식·구경표시 등이 되어 있을 것
		바. 최대사거리	45도의 각도로 발사하여 추진용 캡슐이 떨어지는 지점이 25미터 이하일 것
		사. 총의 구경	강선이 없는 것으로 16밀리미터 이하일 것
		안전도(내압)시험	가. 기관부·약실 및 총열의 내압시험
나. 낙하시험	1미터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 및 작동의 결함이 없을 것		
성능시험	발사시험	계속 10발을 시험발사하여 기계기능고장 및 불발이 없을 것	
폭발물	구조형식	가. 설계도면 일치여부	허가 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

분쇄총		치할 것
	나. 발사장치	격발식이 아닐 것
	다. 제조총번 및 구경표시	제조연도 및 번호·형식·구경표시 등이 되어 있을 것
	라. 안전장치	안전장치에 결함이 없을 것
	마. 총의 구경	12.5밀리미터 이상 40밀리미터 이하일 것
안전도(내압)시험	기관부·약실 및 총열의 내압시험	계속 6발을 시험발사하여 팽창 또는 균열·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성능시험	발사시험	계속 6발을 시험발사하여 기계기능고장 및 불발이 없을 것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의2] <개정 2021. 12. 31.>
분사기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관련)

1. 성능개조 여부 검사기준

구분	종목	검사항목	검사합격기준
구조형식	분사기	1. 구조형식의 원형유지 상태 검사	·구조형식의 변경이나 개조·손괴·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손잡이 및 몸통원형 유지상태 검사	·손잡이 및 몸통이 대체 등의 변경이 없을 것
		3. 제조번호의 타각유지 상태 검사	·제조번호의 타각·변경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제조시 제품종합검사 및 제조품 안전검사기준

가. 분말분사기

구분	종목	검사항목	검사합격기준
구조형식	분말분사기	1. 설계도면 일치 여부	·허가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2. 재질검사	·분말약제통은 연속 5회 이상 사용하여도 팽창·균열되는 등의 결함이 없을 것 ·1m높이에서 충격시험기에 떨어뜨려 파손·균열이 안될 것
		3. 발사장치	·격발식방아쇠는 안되며 지레목식 방아쇠장치일 것 ·탄창장전식이 아니며 화약을 사용하지 말 것 ·방아쇠 바늘은 연속 5회 이상 사용하여도 마모 또는 파손되지 아니할 것
		4. 안전장치	·안전장치에 결함이 없을 것
		5. 제조번호 등 표시	·제작하는 분사기마다 손잡이 부분에 제조회사·제품명칭(영문약자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6. 분사거리	·3m~7m 이내일 것
		6. 분사거리	·7m 이내일 것 (막대형은 10m 이내일 것)
		7. 압력사용제한	·CO ₂ 가스는 17g 이하를 사용할 것
		8. 분사기의 전체 길이	·40cm 이하일 것 (막대형은 60cm 이하일 것)
		9. 분사기의 구경	·분사기의 구경은 4mm 이내일 것
		9. 분사구의 지름	·분사구의 지름은 4mm 이내일 것
		10. 약제통	·화약을 사용하거나 분사시 약제통이 회전하는 방식이 아닐 것
안전도 내압시험	약제통	약제통의 내압시험	·이온자리가 없는 재질로 하여 20kg/cm ²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약제성분 시험	약제	약제의 성분검사	·약제별 성분검사를 하며, 독물·극물·취투가스 등 법령에 의하여 제조·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을 사용하지 말 것. 다만, 치안목적용 등으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액체분사기

구분	종목	검사항목	검사합격기준
구조형식	액체분사기	1. 설계도면 일치 여부	·허가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2. 재질검사	·1m높이에서 충격시험기에 떨어뜨려 파손·균열이 안될 것
		3. 발사장치	·누르는 방식이어야 하고, 노즐을 이용한 액체분무식일 것
		3. 발사장치	·탄창장전식이 아니며 화약을 사용하지 말 것
		4. 제조번호 등 표시	·제작하는 분사기마다 몸통부분에 제조회사·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5. 분사거리	·2m~5m 이내일 것(막대형은 5m~10m 이내일 것)
		5. 분사거리	·7m 이내일 것(막대형은 10m 이내일 것)
		6. 압력사용제한	·액체의 분사형태는 내장된 가스압력

			에 의하여야 하고 가스압력은 8kg/cm ² 이하일 것(막대형은 CO ₂ 가스 17g 이하일 것)
		6. 압력사용제한	·액체의 분사형태는 내장된 가스압력에 의하여야 하고 가스압력은 8kg/cm ² 이하일 것(막대형은 CO ₂ 가스 17g 이하일 것)
		7. 분사기의 전체 길이	·20cm 이하일 것(막대형은 60cm 이하일 것)
		8. 분사기의 모양	·원통형일 것
		8. 분사구의 직경	·분사구의 직경은 4mm 이내일 것
		9. 약제통	·화약을 사용하거나 분사시 약제통이 회전하는 방식이 아닐 것
안전도 내압시험	약제통	약제통의 내압시험	·액체약제통은 15kg/cm ² 의 압력에 균열·파열되는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안전도 내압시험	약제통	약제통의 내압시험	·액체약제통은 15kg/cm ²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kg/cm ²)의 압력에 균열·파열되는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약제성분 시험	약제	약제의 성분검사	·액체분사기의 약제는 불연성액체를 사용할 것 ·독물·극물·취투가스 등 법령에 의하여 제조·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을 사용하지 말 것. 다만, 치안목적용 등으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충격기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관련)

1. 성능개조여부검사

구분	종목	검사항목	검사합격기준
구조형식	전자충격기	1. 구조형식의 원형 유지상태	·구조형식의 변경이나 개조·손괴·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전류유지상태검사	·허가당시 제출한 전류가 유지될 것
		3. 제조번호의 타각 유지상태검사	·제조번호의 타각변경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제조시 제품종합검사 및 제조품안전검사기준

구분	종목	검사항목	검사 및 합격기준	검사요령
구조형식	전자충격기	1. 설계도면 일치 여부	·허가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구조는 전원스위치·단속기·변압기 및 방전장치로 구성될 것	
		2. 재질검사	·1m높이에서 충격시험기에 떨어뜨려 파손·균열이 안될 것	
		3. 발사장치여부	·발사하는 장치가 없을 것(치안목적용 제외)	
		4. 제조번호등표시	·제작하는 전자충격기마다 몸통 부분에 제조회사·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5. 전자충격기의 전체길이	·전체길이는 60cm 이하일 것(치안목적용 제외)	

안 전 도 시 험	1. 실효전력 (OUTPUT POWER)	·10W 이내일 것	디지털오실로스코프와 프로브를 이용 측정검 사한다. 절연상태 측정기를 사 용하여 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사한다. 디지털오실로스코프와 프로브를 이용 측정검 사한다.
	2. 절연상태	·AC 5,000V에서 0.5mA 이내일 것	
	3. 실효전류 (RMS : Root Mean Square)	·0.05A 이내일 것	
	4. 최대전압 (Maximum Voltage)	·60,000V 이내일 것	
	※ 실효전력, 실효전류 측정시 직류(DC) 저항 4000 내지 4500(Ω)을 걸어서 측정할 것		

석궁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관련)

1. 성능개조여부 검사기준

구분	종목	검사항목	검사합격기준
구조형식	석궁	1. 구조형식의 원형 유지상태	·구조형식의 변경이나 개조·손괴·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개머리 및 기관부 원형 유지상태	·개머리 및 기관부의 대체 등의 변경이 없을 것
	석궁및 화살	1. 제조번호의 타각유지 상태	·제조번호의 타각·변경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제조시 제품종합검사 및 제조품안전검사기준

구분	종목	검사항목	검사합격기준
구조형식	석궁	1. 설계도면 일치여부	·허가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2. 탄력성	·68kg 이하일 것
		3. 격발장치	·연속격발식이 아닐 것(수출용 제외)
		4. 방아쇠압력	·방아쇠를 당기는 압력이 1kg 이상일 것(선수용 제외)
		5. 안전장치	·안전장치에 결함이 없을 것
		6. 현을 당기는 힘	·도르래식이 아닐 것
	석궁및 화살	1. 제작회사 및 제조번호 표시	·제작회사·제품명칭·제조연도 및 제조번호가 표시되어 있을 것
안전도 시험	석궁	1. 탄력성 검사	·현을 당기는 힘이 68kg에서 현 및 팀의 결함이 없을 것

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검사원 자격기준 및
검사시설기준(제50조제4항관련)

1. 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검사원의 자격기준

-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금속·화학·물리·전기에 관한 학과를 이수한 사람
- 나. 군의 병기학교에서 3월 이상의 총포분야교육을 이수하고 총포관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공인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에 관한 시험·연구 또는 검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총포 관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총포제조업소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바. 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제조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검사시설의 기준

가. 검사시설의 면적

구 분	검 사 실	시 사 대	격 납 고
최저보유면적 (제곱미터 이상)	30	10	7

나. 시험기기명 및 규격

번 호	시 험 기 기 명	규 격	비 고
1	경도(단단한 정도) 시험기		
2	충격치시험기		
3	압력측정기 가. 컴프레서 나. 유압측정기	211kg/cm ²	
4	탄속측정기		
5	방아쇠압력측정기	1~3kg	
6	정밀비교측정기		
7	다이얼노기스	150 ^m / _m	
8	실린더게이지	15~30 ^m / _m	
9	마이크로미터	0~13 ^m / _m	
10	스몰게이지	3~13 ^m / _m	
11	줄 자	3m	
12	약제분석기		
13	공기정화측정기		

14	절연시험기		
15	고전압측정기		
16	다기능시험기		

행정처분기준(제52조 관련)

항 목	위 반 사 항	적용법령	처 분 기 준					
			취소	효 력 정 지				경고
				6월	3월	1월	15일	
1.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제조업자	가. 허가요건 결격 사유 발생	법 제45조 (법 제5조)	○					
	나.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45조	○					
	다. 제조소 또는 제조시설 및 화약류 저장소를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법 제45조	○					
	라. 제조시설·설비 또는 화약류저장소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	법 제45조 (법 제43조)	○					
	마. 제조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을 검사받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 1) 1회 위반 2) 2회 위반	법 제45조 (법 제42조)	○	○				
	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제품양도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5조 (법 제21조)	○	○	○			
	사. 행정처분기간 중 계속 조업	법 제45조	○					
아. 법에 의한 지시 명령 위반	법 제45조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위반								○
자. 지정기간 내 사업 미개시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5조							○
차.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	법 제45조	○						
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법 제45조							○
타. 무허가 수출입의 경우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5조 (법 제9조)							○
파. 제조보안책임자 선임의무 위반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위반	법 제27조 영 제54조							○
하. 화약류 안정도 시험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위반	법 제32조 영 제59조							○
거. 화약류 포장 기준 위반	법 제34조							○
너. 도난신고 불이행	법 제35조							○
더. 위해예방 규정	법 제38조							○

준수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러. 자체안전교육 불 성실 또는 자체 안전점검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39조 법 제40조					○	
머. 장부 부실기재 또는 미기재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63조 영 제81조			○			○
버. 간판 그 밖의 표 지 미게시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64조					○	○
서. 제조종류 및 시 설을 임의로 변 경하여 제조 또 는 설치한 경우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법 제4조	○	○			○	
어. 응급조치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36조 영 제65조					○	○
저. 공실의 정원 또는 정채량 초과 작업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4조					○	○
처. 화약류 폐기신고 또는 기준위반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20조					○	○
커.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47조					○	○

	터.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때	법 제45조	○					
	퍼.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5조	○			○	○	○
	허. 총포 제조·판매·수출입 보고 의무 위반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이상 위반	법 제45조 (법 제44조 제4항)		○	○	○	○	○
2.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판매업자	가. 허가요건 결격사유 발생	법 제45조 (법 제7조)	○					
	나.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판매업소를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위탁·대여·양도한 때	법 제45조 (법 제6조)	○					
	다.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판매업소 또는 화약류저장소를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법 제45조 (법 제6조)	○					
	라. 판매시설·설비 또는 화약류저장소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에 완	법 제45조 (법 제43조)	○					

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							
마. 검사합격의 표시가 없는 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때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법 제45조 (법 제42조)	○	○	○			
바. 소지 또는 양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양도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21조	○	○	○			
사. 이 규칙이 정하는 공기총의 성능 기준을 초과하여 압축공기 또는 가스를 주입한 때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5조	○	○	○			
아. 행정처분 기간중 계속 조업	법 제45조	○					
자. 법에 의한 지시 명령 위반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위반	법 제45조	○	○		○		○
차. 지정기간 내 사업 미개시 1) 1회 위반 2) 2회 위반	법 제45조		○		○		

3) 3회 위반		○					
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45조	○					
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법 제45조					○	
파. 무허가 수출입의 경우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5조 (법 제9조)					○	
하. 관리보안책임자 선임의무위반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위반	법 제27조 영 제55조						○
거. 분실·도난신고 불이행	법 제35조						○
너. 자체안전점검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40조 영 제66조						○
더. 장부의 부실기재 또는 미기재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법 제63조 영 제81조						○
러. 간판 또는 표지 미게시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64조						○
머. 화약의 변형 또	법 제4조						○

	는 총기구조 및 성능의 임의개조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	○		○		
	버. 화약류 폐기신고 또는 폐기기준위반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20조 영 제30조					○	○
	서.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47조				○	○	
	어.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5조	○				○	○
	저. 총포 판매·수출입 보고 의무 위반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이상 위반	법 제45조 (법 제44조 제4항)			○	○	○	○
3.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임대업자	가. 허가요건 결격사유 발생	법 제45조 (법 제7조)	○					
	나.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임대업소를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위탁·대여·양도한 때	법 제45조 (법 제6조의2)	○					
	다.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임대업소를	법 제45조 (법 제6조의2)	○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라. 검사합격의 표시가 없는 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을 임대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진열한 때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법 제45조 (법 제42조)	○	○	○			
마. 소지 또는 양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양도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21조	○	○	○			
바. 행정처분 기간 중 계속 영업	법 제45조	○					
사. 법에 의한 지시 명령 위반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위반	법 제45조	○	○		○		○
아. 지정기간 내 사업 미개시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5조	○	○		○		
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45조	○					
차.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 1회 위반	법 제45조					○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	○			
카. 무허가 수출입의 경우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5조 (법 제9조)				○		
타. 분실·도난 신고 불이행	법 제35조					○	
파. 자체안전점검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40조 영 제66조				○	○	
하. 장부의 부실기재 또는 미기재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법 제63조 영 제81조			○		○	
거. 간판 또는 표지 미게시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64조					○	○
너. 화약의 변형 또는 총기구조 및 성능의 임의개조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조	○	○		○		
더.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47조				○	○	
러. 임대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5조	○				○	○
머. 총포 임대·수출입 보고 의무 위	법 제45조 (법 제44조						

	반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이상 위반	제4항)						○
4. 화약류 저장소설 치사용자	가. 허가조건 결격사 유 발생	법 제45조 (법제5조)	○					
	나.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 한 방법으로 허 가를 받은 경우	법 제45조	○					
	다. 화약류저장소를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법 제45조 (법 제25조)	○					
	라. 지정된 기간 내 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	법 제45조 (법 제43조)	○					
	마. 법에 의한 지시 명령 위반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위반	법 제45조	○	○		○		○
	바. 지정기간 내 불사용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5조	○	○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용 폐 지	법 제45조	○					
	아. 공공의 안녕질서 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한 한 상당한 이유 가 있을 때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법 제45조		○	○	○		

자. 저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관리 위탁 또는 대여한 경우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24조							
차. 행정처분 기간 중 계속 사용	법 제45조	○						
카. 분실·도난신고 불이행	법 제35조						○	
타. 자체안전점검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40조 영 제66조					○	○	
파. 장부 부실기재 또는 미기재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법 제63조 영 제81조						○	
하. 저장정량 초과 저장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24조						○	
거. 보안거리 미달 (보안물건 침범)	법 제47조							감량 또는 이전 명령
너. 응급조치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36조					○	○	
더.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47조					○	○	
러.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불이행 1) 1회 위반	법 제45조							○

	2) 2회 위반 3) 3회 위반		○				○	
5. 화약류 제조·관 리보안책 임자	가. 면허의 미갱신	법 제28조	○					
	나. 화약류제조·관 리보안책임자 결 격사유발생	법 제29조	○					
	다. 금고 이상의 형 수형	법 제30조	○					
	라. 이 법에 의한 벌 금형 수형	법 제30조 (법 제29조)	○					
	마.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 한 방법으로 면 허취득	법 제30조	○					
	바.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하여 기술 자격이 취소 또 는 정지된 경우 1) 취소된 경우 2) 정지된 경우	법 제30조	○					기술 자격 정지 기간 동안 면허 정지
	사. 면허를 다른 사 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30조	○					
	아. 고의에 의하여 폭발 사고를 야 기한 경우	법 제30조	○					
	자. 과실에 의해 폭 발 사고를 야기 하여 인명을 사 상케 한 경우 1) 10명 사상 2) 5명 사상 3) 1명 사상	법 제30조		○		○		○
차. 법에 의한 지시 명령 위반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5조		○	○		○	○	

	4) 4회 위반							
	카. 감독직무위반	법 제31조						
	1) 1회 위반						○	
	2) 2회 이상 위반					○		
	타. 응급조치 불이행	법 제36조						
	1) 1회 위반						○	
	2) 2회 이상 위반					○		
6.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사용자	가. 허가요건 결격사유 발생	법 제46조 (법 제13조)	○					
	나. 소지허가 받은 총포의 임의 개조	법 제46조 (법 제17조)	○					
	다.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의 미갱신	법 제16조	○					
	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도난·분실신고 불이행	법 제35조					○	
	마.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양도	법 제21조						
	1) 1회 위반				○			
	2) 2회 위반		○					
	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허가 받은 용도의 사용	법 제46조 (법 제17조)	○					
	사. 정당한 사유없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운반	법 제46조 (법 제17조)	○					
아. 법 또는 법에 의한	법 제46조							

	제거 또는 훼손	5제1호나목 후단)						
--	----------	---------------	--	--	--	--	--	--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거나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비고 제2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비고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4. 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분기준(비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적용되거나 가중된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 또는 효력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처분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효력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사유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사유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일괄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 제6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산업용총 등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행정처분을 한다.

수렵용 조끼 세부사항(제54조의3제4호 관련)

□ 수렵 조끼 모양(예시)



□ 수렵 조끼 색상·크기 세부사항

1. 수렵용 조끼의 색깔은 아래의 색상표에 따른 수치값에 해당하는 주황색(이하 "주황색"이라 한다)으로 한다.

색상표	수치값
Hex	#FF6600
RGB	266, 102, 0
CMYK	0, 60, 100, 0
HSB	24, 100, 100

2. 수렵용 조끼 길이는 허리선까지 내려오도록 충분한 길이를 갖춰야 한다.
3. 수렵용 조끼의 4면에서 주황색이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4. 수렵용 총포 소지자임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조끼의 뒷면에 자수 또는 인쇄 등의 방법으로 "수렵"이라는 단어를 검정색 글씨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글자는 가로 10cm 세로 10cm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검사·시험 및 교육 등의 수수료(제62조제1항 관련)

구분	수수료
1. 총포의 검사	
가. 제조시험제품 종합검사	
1) 장약총	10만원
2) 공기총	5만원
나. 제조품 안전검사	
1) 장약총	3천원
2) 공기총	2천원
다. 수입품 안전검사	
1) 장약총	3천원
2) 공기총	2천원
2. 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검사	
가. 제조시험제품 종합검사	5만원
나. 제조품 안전검사	생산자 공급가격의 2%
다. 수입품 안전검사	수입원가의 2%
3. 총포(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한다)의 소지허가 전 안전교육	2만원
4. 화약류 면허 전 안전교육	2만원
5. 총포(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한다)·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수렵 전 안전교육	2만원
6. 화약류 안정도시험	
가. 화약의 유리산·내열시험	4만원
나. 폭약의 유리산·내열·가열시험	5만원
다. 화공품	
1) 뇌관류	3천원
2) 실탄(산탄 포함) 및 공포탄류	3천원
3) 신호용 화공품류	1만5천원
4) 꽃불류	1만7천원
5) 장난감용 꽃불류	1만원

교부 또는 재교부수수료(제62조제2항관련)

허가(면허)구분	수수료
1. 법 제4조에 따른 제조업허가	
가. 총포(공기총을 제외한다) 제조업 허가	3만원
나. 공기총·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제조업 허가	2만원
다. 총포 수리업허가	1만원
라. 산탄탄알·연지탄 제조업 허가	5천원
마. 화약·폭약·제조업 허가	5만원
바. 화약류 변형 가공업 허가	3만원
사. 화공품 제조업 허가	2만원
아. 꽃블류 제조업 허가	1만원
자.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5천원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임대업 허가	
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판매업·임대업 허가	1만5천원
나. 화약류 판매업 허가	2만원
다. 판매업·임대업 허가사항 변경	5천원
3. 법 제21조에 따른 화약류의 양도·양수허가	
가. 화약·폭약 40톤 이상의 양도·양수허가	1만원
나. 화약·폭약 20톤 이상 40톤 미만의 양도·양수허가	8천원
다. 화약·폭약 10톤 이상 20톤 미만의 양도·양수허가	5천원
라. 화약·폭약 10톤 미만의 양도·양수허가	3천원
4. 법 제12조에 따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소지허가	
가. 업총·소총·권총의 소지허가	5천원
나. 공기총·도검·산업공업용총·그 밖의 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소지허가	3천원
5.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허가	2천원
6. 법 제18조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	
가. 화약·폭약 100톤 이상의 사용허가	1만원
나. 화약·폭약 50톤 이상 100톤 미만의 사용허가	8천원
다. 화약·폭약 10톤 이상 50톤 미만의 사용허가	5천원
라. 화약·폭약 1톤 이상 10톤 미만의 사용허가	3천원
마. 화약·폭약 1톤 미만의 사용허가	2천원
바. 꽃블류 사용허가	1천원
7. 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가. 1급 저장소 설치허가	1만원
나. 2급 저장소 설치허가	8천원
다. 3급 저장소 설치허가	5천원
라. 수중·실탄·꽃블류·장난감용 꽃블류·도화선 저장소 및 간이저장소 설치허가	3천원
8. 법 제28조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 및 화약류관 리보안책임자 면허	3천원
9.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재교부	1천원
10. 법 제4조의2(법 제6조의2 또는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가. 총포(공기총을 제외한다)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만원
나. 공기총·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6천6백원
다. 총포수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3천3백원
라. 산탄탄알 및 연지탄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천6백원
마. 화약·폭약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만6천6백원
바. 화약류 변형 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만원
사. 화공품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6천6백원
아. 꽃블류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3천3백원
자.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판매업 및 임대 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5천원
차. 화약류 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6천6백원
카. 1급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3천3백원
타. 2급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2천6백원
파. 3급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1천6백원
하. 수중·실탄·꽃블류·장난감용 꽃블류·도화선 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1천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 8.>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제조업 허가신청서**
 []전자총격기 []석궁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제조소명	종업원수
	영업종별	제품종류
	제조소 소재지	장약총포 제조업자 영문명 및 영문약자(2자)
	작업개시일	월 생산 예정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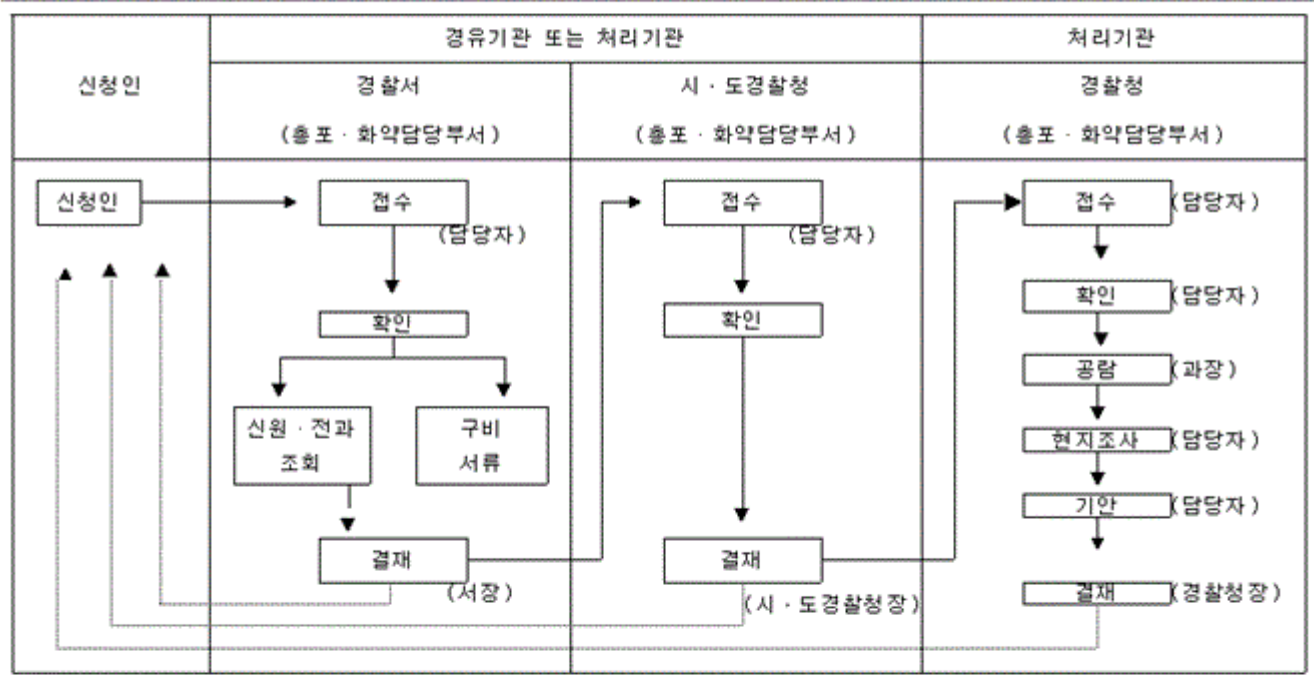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 4. 설계도면(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구조설명서(화약류·분사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안전교육계획서(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화약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수수료 뒤쪽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조시설의 구조설비 및 위치
 - 나. 제조방법
 - 다. 제조하려는 총포 또는 화약류의 종류와 그의 사용방법·성능 및 특징
 - 라. 제조하려는 총포 또는 화약류의 보관 또는 저장방법
 - 마. 원료화약의 조달 및 저장방법
 - 바. 고용하려는 종업원 수
 - 사. 자본금

처리절차



수수료

구분	수수료	구분	수수료
총포(공기총을 제외한다) 제조업허가	30,000원	화약·폭약 제조업허가	50,000원
공기총·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제조업허가	20,000원	화약류 변형 가공업허가	30,000원
총포 수리업허가	10,000원	화공품 제조업허가	20,000원
산탄탄알·연지탄 제조업허가	5,000원	꽃불류 제조업허가	10,000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6. 1. 8.>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승계를 하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승계를 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승계 사유	<input type="checkbox"/> 양도 · 양수 <input type="checkbox"/> 상속 <input type="checkbox"/> 기타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3항(제6조의4,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지위승계신고 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2. 허가증 원본 1부 3.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가. 양도: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 나.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그 밖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다. 양도 및 상속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뒤쪽 참조
------	---	--------------

행정처분의 내용고지 등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별표 1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3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 받은 일자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 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2) 양도·양수허가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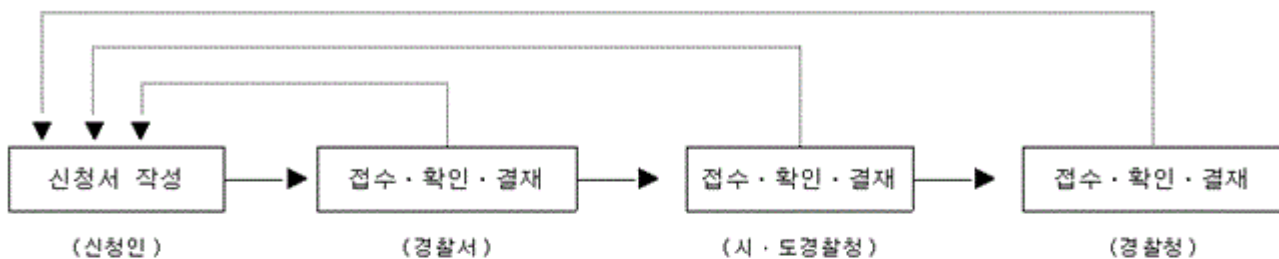
2. 양수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수수료

구 분	수수료	구 분	수수료
총포(공기총을 제외합니다)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0,000원	꽃볼류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3,300원
공기총·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6,600원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5,000원
총포수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3,300원	화약류 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6,600원
산탄탄알 및 연지탄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600원	1급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3,300원
화약·폭약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6,600원	2급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2,600원
화약류 변형 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0,000원	3급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1,600원
화공품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6,600원	수중·실탄·꽃볼류·장난감용 꽃볼류·도화선 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1,000원

[서식 1의3] 삭제 <2004.2.2>

총포 개조·수리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상 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수리업소명	수리업 소재지	(전화번호 :)
	수리종류	월간수리예정량	저장방법
	종업원수	영업개시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총포 개조·수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 4. 안전교육계획서 1부 5. 정관과 대표자·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수수료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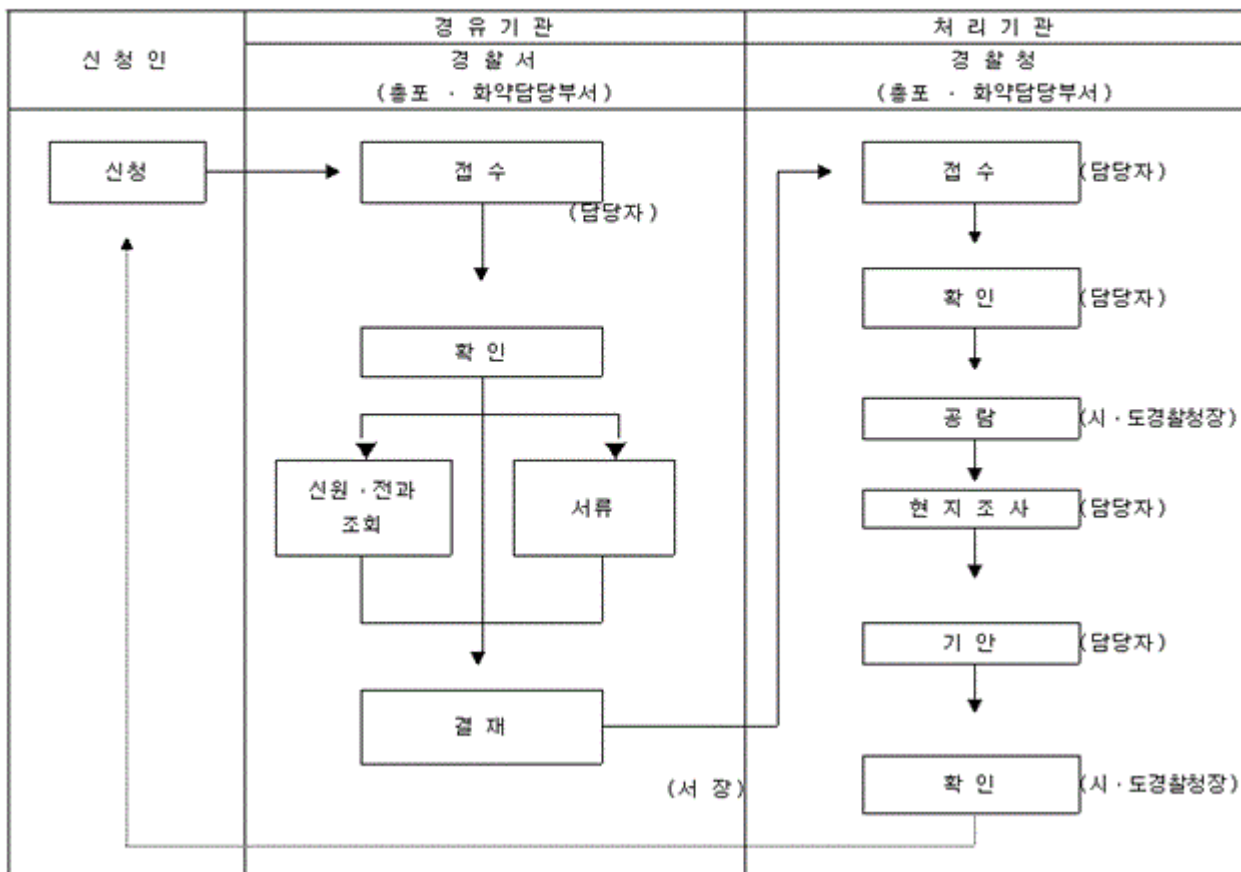
210mm × 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수리방법
- 나. 수리총포의 보관 또는 저장방법
- 다. 자본금
- 라. 전문기술공의 고용사항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처리절차



()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

신청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div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 :)</div>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div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 :)</div>	

업소명	
소재지	
허가 번호	허가 연월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찰 청 장
시·도경찰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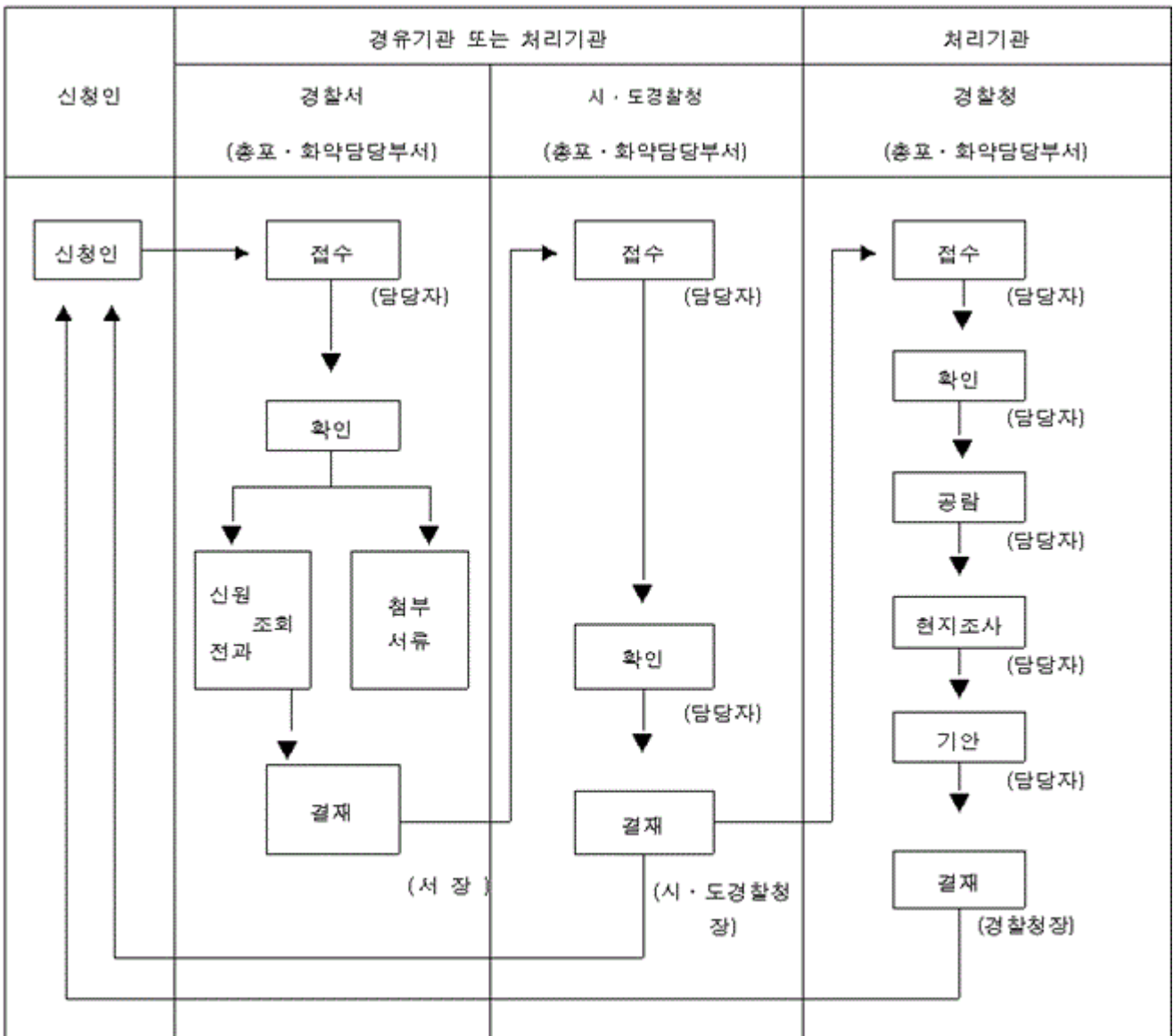
첨부서류	1. 허가증 2. 제조시설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각 1부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 4. 설계도면 1부(제조 종목 및 제조시설의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000원
------	--	---------------

작성방법

1.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씁니다.
2.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
 - 가. 제조시설의 구조설비 및 위치
 - 나. 제조방법
 - 다. 제조하려는 총포 또는 화약류의 종류와 그의 사용방법·성능 및 특징
 - 라. 제조하려는 총포 또는 화약류의 보관 또는 저장방법
 - 마. 원료화약의 조달 및 저장방법
 - 바. 고용하려는 종업원 수
 - 사. 자본금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1. 8.>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판매업 허가신청서
 []전자총격기 []석궁 []임대업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상호	
	사무소 소재지	
	판매업(임대업)명	
	판매소(임대업소) 소재지	
	판매(임대)종류	월 판매(임대) 예정량
	보관 또는 저장방법	영업개시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판매업(임대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화약류판매업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4.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수수료 뒤쪽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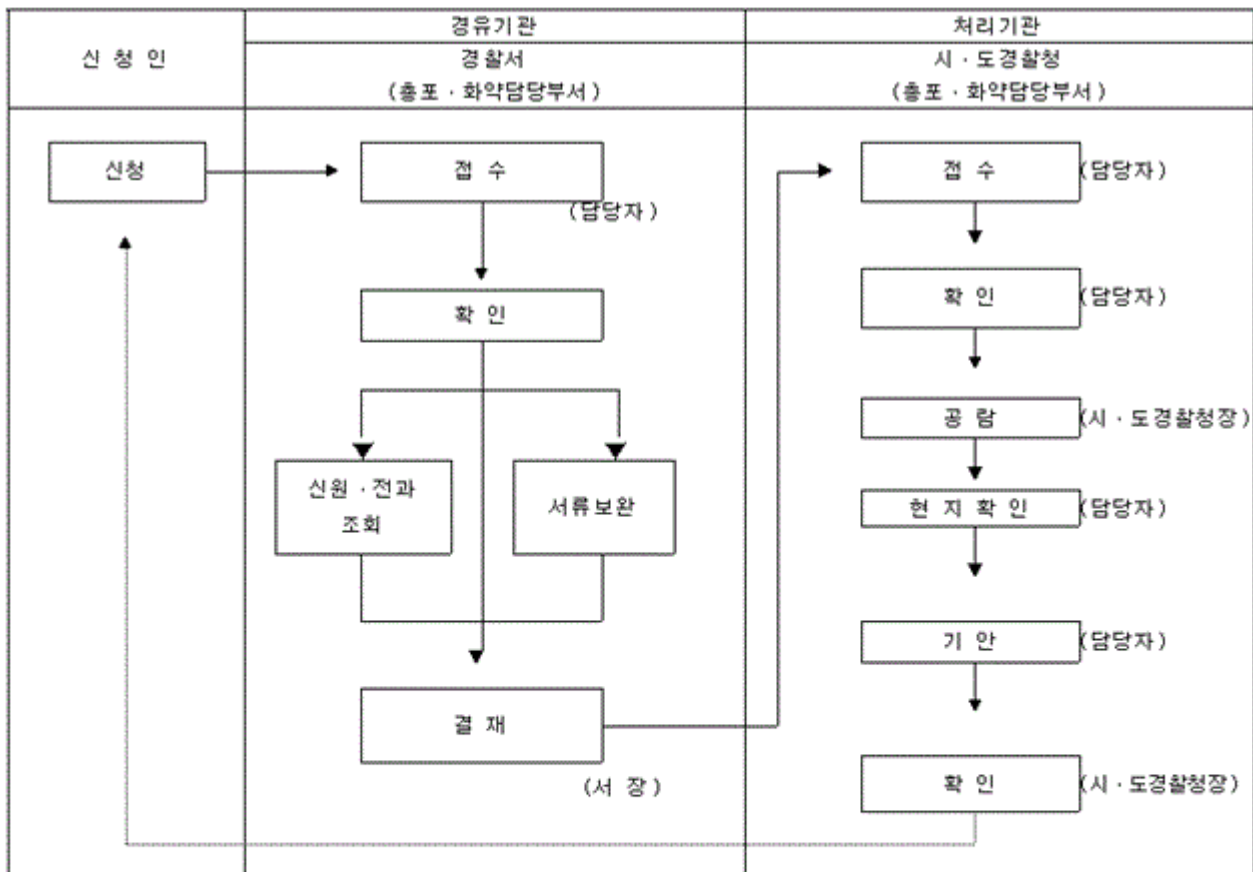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m²)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판매업소(임대업소)의 위치·구조·설비
- 나. 판매하려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또는 임대하려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종류
- 다. 관리 또는 그 밖에 고용하려는 종업원 수
- 라. 보관 또는 저장방법
- 마. 안전교육계획서(화약 판매업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수수료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판매업 · 임대업 허가: 15,000원
2. 화약류 판매업 허가: 20,000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6. 1. 8.>

()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변경신청 사항	업소명	소재지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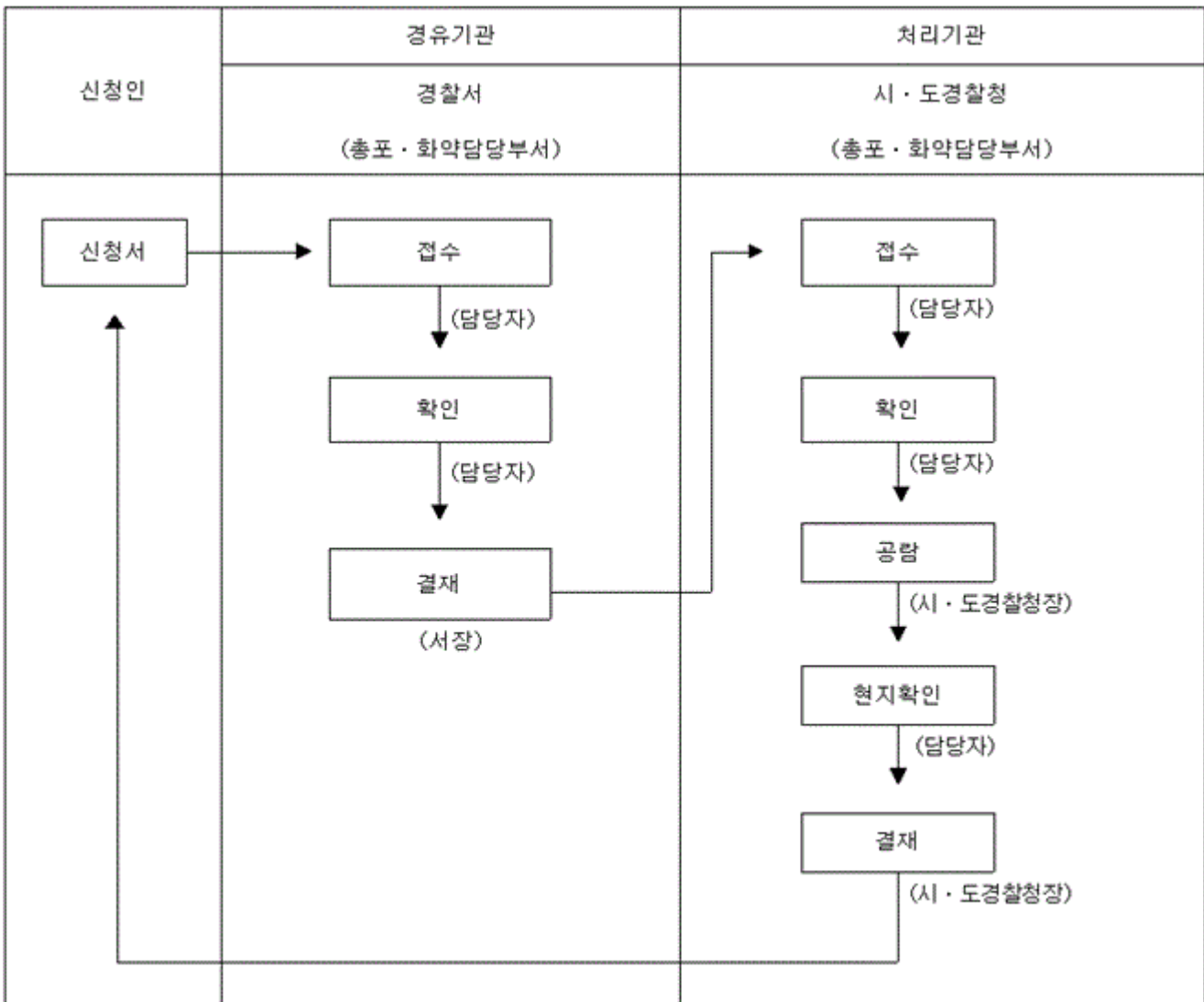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증 2.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	수수료 5,000원
------	---	---------------

210mm× 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26. 1. 8.>

제 호

() 판매시설 변경신고 접수증

업 소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업소 소재지			
판 매 업 허 가 번 호		판 매 업 허 가 연월일	
변 경 사 유			
변경 예정일			
시설 변경 전			
시설 변경 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 시설의 변경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OO시·도경찰청장

직인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1. 8.>

[]총포 []도검 [] 수입 허가신청서
 []화약류 []분사기 [] 수출
 []전자총격기 []석궁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종류	제품명
	수량	수출입 국명
	경유국명(장약총포 · 인명살상용 무기류에 사용되는 화약류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입 방법 및 목적
	수출입지	수출입 예정기간부터까지
	총포 제조번호(장약총포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와 같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수입·수출)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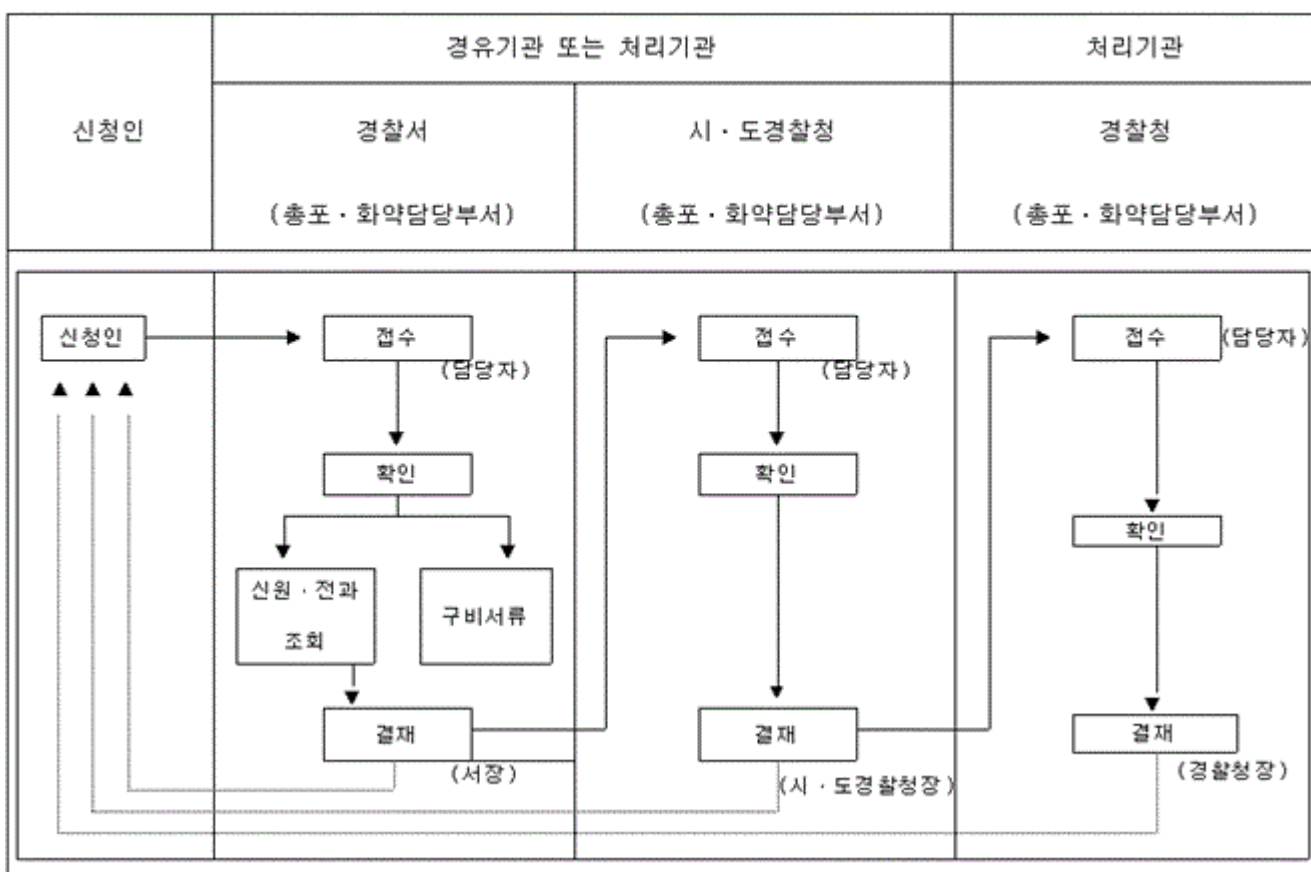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경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종류·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각 1부 2.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1부 3. 화공품의 경우: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1부 4. 장약총포·인명살상용 무기류에 사용되는 화약류 수출시: 수입국의 수입허가증 사본(또는 수입업체의 수입면허증 사본) 1부 및 제3국을 경우하는 경우 경유국이 경유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증명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출품 선적 2일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필요시 추가 기재란 이용>

제조번호(장악총포의 경우)

처리절차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1. 8.>

화약류 수입 신고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3근무시간 이내)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입허가 번호			허가 연월일		
업소명			대표자 성명		
종류 및 수량			적재지		
선박명			입항지		
입항 연월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선하증권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선박 또는 항공기가 대한민국 항구 또는 공항 내에 도착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호 공기총 사용자 지정서			
① 대표자		② 학교(기관)명	
③ 소재지			
④ 총 종			
⑤ 취급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⑥ 보관위치	
⑦ 목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 (연구)용 공기총의 보유학교(기관)로 지정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경찰서장 직인 </div>			
1. 관계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전화 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법인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상 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목 적		
	제조소 소재지	(전화번호 :)	
	제조 제품	제품 종류	
	[] 모의총포 [] 발사장치		
월 생산 예정량	종업원 수	작업개시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모의총포 등 제조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제조하고자 하는 모의총포 또는 발사장치의 설계도면 3. 위해예방계획서 4.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유증 및 영업의 양수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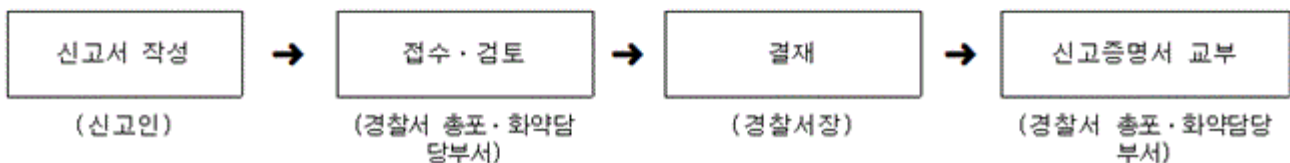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뒤쪽)

유의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인란에 대표자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의총포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모의총포(이하 "모의총포"라 합니다)를 말하며, 발사장치란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발사장치(이하 "발사장치"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3.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조시설의 구조·설비 및 위치
 - 나. 제조방법
 - 다. 제조하려는 모의총포 또는 발사장치의 종류와 사용방법·성능 및 특징
 - 라. 제조하려는 모의총포 또는 발사장치의 보관 또는 저장 방법
 - 마. 고용하려는 종업원 수
 - 바. 자본금

처리절차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19. 9. 19.>

제 호

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증명서

상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목 적	
제품 종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모의 총포 등 제조를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직인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0조의2제4항에 따라 모의총포 등 제조업을 폐지했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 신고증명서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처리 일자	처리 기간 경찰서장 허가 7일 시·도경찰청장 허가 10일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관리책임자 (예술소품용 총포 등 소지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총포내용	총종(統種)· 형식	<input type="checkbox"/> 산탄외대 <input type="checkbox"/> 산탄상하쌍대 <input type="checkbox"/> 산탄수평쌍대 <input type="checkbox"/> 삼연쌍대 <input type="checkbox"/> 라이플 <input type="checkbox"/> 공기총스프링 <input type="checkbox"/> 공기총(펌프) <input type="checkbox"/> 공기총(가스) <input type="checkbox"/> 권총회전 <input type="checkbox"/> 권총착탈 <input type="checkbox"/> 공간 <input type="checkbox"/> 원절 <input type="checkbox"/> 중절 <input type="checkbox"/> 레바 <input type="checkbox"/> 수동장전 <input type="checkbox"/> 자동장전 <input type="checkbox"/> 기타					
	총명	제조국명	명칭				
	구경	공칭	번(구경)	총신의 길이			
		실측치수	mm	총 전체의 길이			
	대체총신	구경	번(구경)	총신의 길이			
	총번(統番)	제	호	총중량			
	적합실탄 공포탄명			탄창장전 탄수			

용도	<input type="checkbox"/> 호신 <input type="checkbox"/> 수렵 <input type="checkbox"/> 유해조수 구제 <input type="checkbox"/> 사격경기 <input type="checkbox"/> 어획 <input type="checkbox"/> 건축 <input type="checkbox"/> 공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산업 <input type="checkbox"/> 신호·구명 <input type="checkbox"/> 도살·마취 <input type="checkbox"/> 시험·연구 <input type="checkbox"/> 예술소품용
----	--

입수경위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또는 직위	주소					
		허가칭	업소명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양도양수연월일						
	수입내용	수입면장번호	제	호	수입연월일			
		수입국명	수입지					
임대	임대업소명		임대업소 주소					

보관	총포 소지 허가증이 발급될 때까지 보관합니다.	보관연월일			
	보관처	보관책임자	(서명 또는 인)		

허가증 발급	조사복명	신원·전과 조회	
--------	------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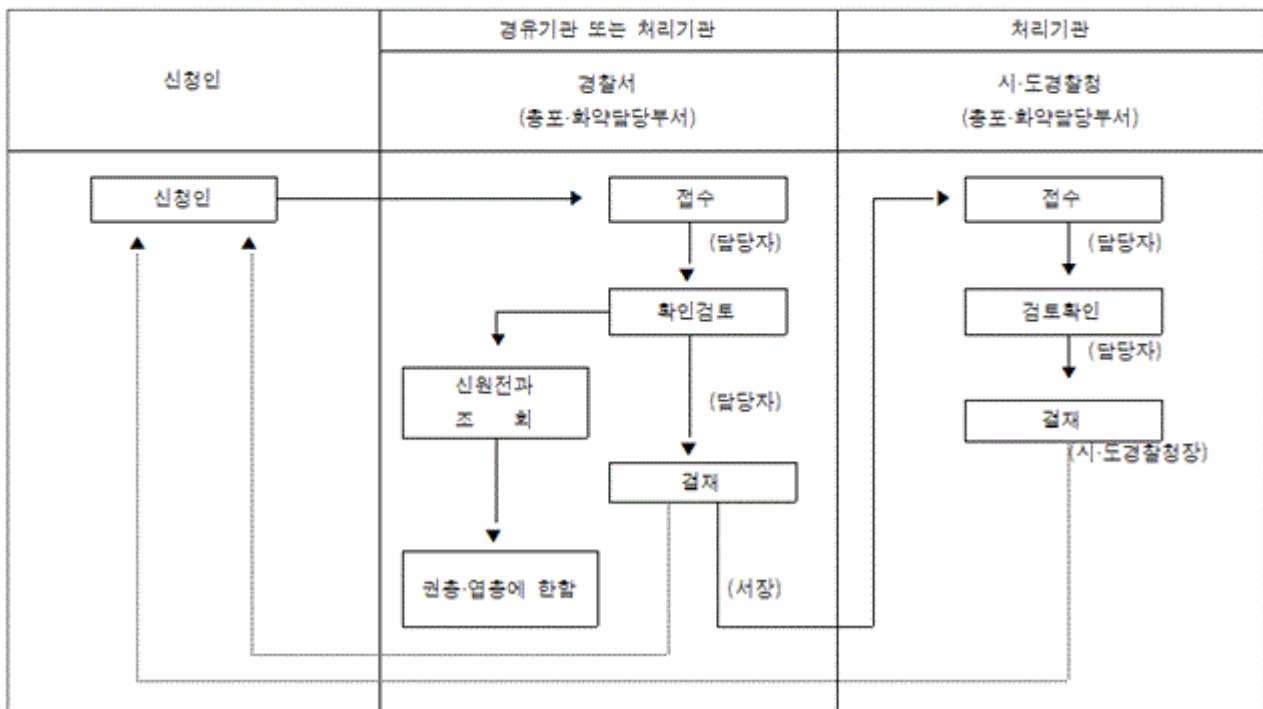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 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타정출·가스발사용 소지허가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가로 2.5cm, 세로 3cm) 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허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3,000 ~ 5,000원

유의사항

1. 총포 출처 증명서류는 접수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기존 허가 총포의 경우는 총포 소지 허가증
 - 나. 소지 허가 총포로서 상품화할 경우에는 총포 소지 허가증 반납증명 서류
 - 다. 수입 또는 양도 총포의 경우에는 수입면장
 - 라. 국내 제조회사 경우에는 제조명세서
2.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사격경기용 총포: 사격선수확인증
 - 나. 수렵용 총포: 제1종 수렵면허증 또는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 다.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제1종 수렵면허증, 제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 라. 그 밖의 용도에 필요한 총포: 총포의 해당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종 류	<input type="checkbox"/> 도검 <input type="checkbox"/> 비수 <input type="checkbox"/> 창 <input type="checkbox"/> 비출ナイ프 <input type="checkbox"/> 재크ナイ프				
형 식	<input type="checkbox"/> 비출식 <input type="checkbox"/> 개폐식 <input type="checkbox"/> 칼집 수납식				
도검규격	제조국명	명칭			
	날의 길이	cm	칼의 전장	cm	
	칼의 길이	cm	총량	kg	
용 도	<input type="checkbox"/> 수렵 <input type="checkbox"/> 검도수련 <input type="checkbox"/> 예식지휘 <input type="checkbox"/> 도살 <input type="checkbox"/> 어업건설 <input type="checkbox"/> 호신장식 <input type="checkbox"/> 가보문화재				
입수경위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또는 직위	주소		
		허가관청	업소 명		
		허가번호	제 호	허가연월일	년 월 일
	양도양수연월일		년 월 일		
	수입 내용	수입면장번호	제 호	수입연월일	년 월 일
수입국명		수입지			
보 관	도검 소지 허가증이 발급될 때까지 보관합니다.		보관연월일	년 월 일	
	보관처	보관책임자			

(서명 또는 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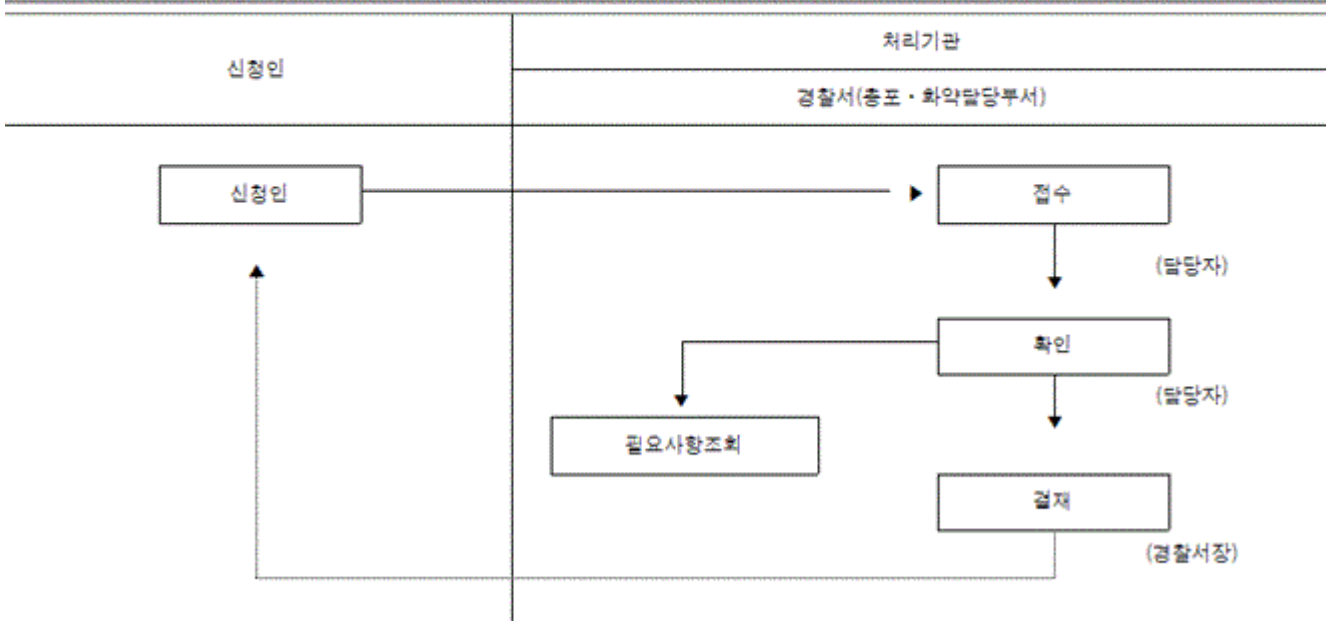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2. 도검류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진(가로 2.5cm, 세로 3cm)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3,000원

유의사항

- ◆ 도검류 출처 증명서류는 인수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기존 허가 도검류의 경우에는 도검 소지 허가증
- 나. 소지 허가된 도검류로서 상품화한 경우에는 해당 도검 소지 허가증 반납 증명서류
- 다. 수입 또는 양도 도검류의 경우에는 수입면장
- 라. 국내제품인 경우에는 제조명세서

처리절차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6. 1. 8.>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재 질	
형 식	
제조국 및 회사명	
명칭 및 제조번호	
길 이	
중 량	

용 도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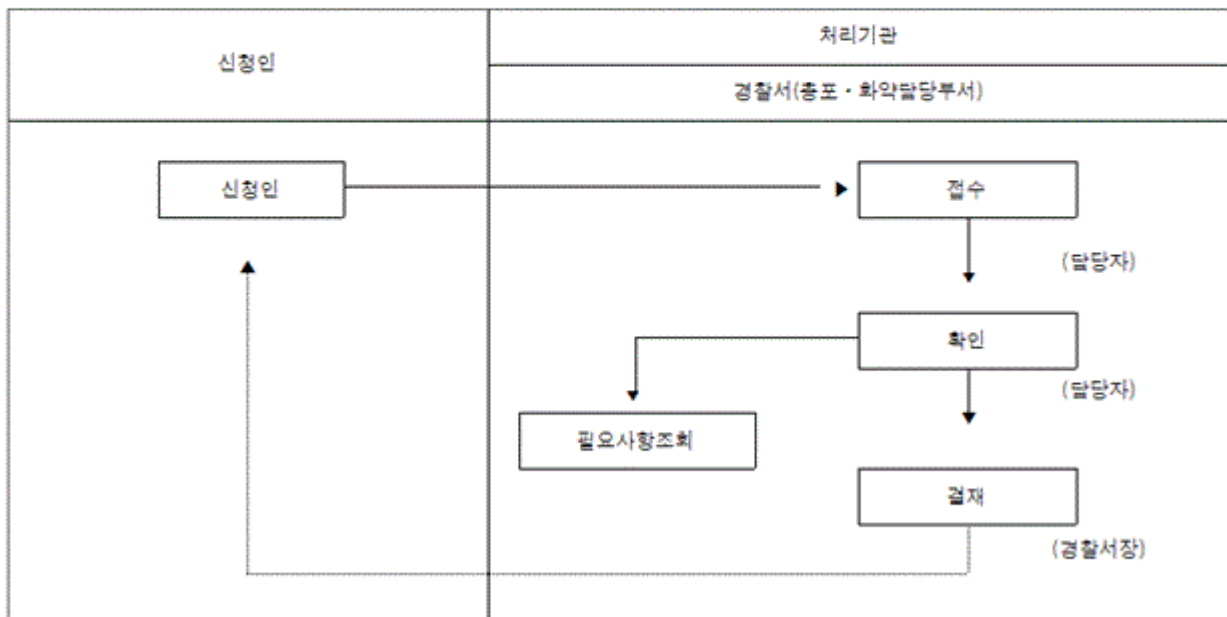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분사기·전자총격기 소지허가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2. 분사기·전자총격기 또는 석공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진(가로 2.5cm, 세로 3cm)	3,000원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석공 소지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분사기·전자총격기 소지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 ◆ 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의 출처 증명서류는 입수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기존 허가된 경우는 해당 소지 허가증
 - 나. 소지 허가된 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으로서 상품화된 경우에는 해당 소지 허가증 반납 증명서류
 - 다. 수입 또는 양도의 경우에는 수입면장
 - 라. 국내제품인 경우에는 제조명세서

처리절차



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다음 물음을 읽고 있음 또는 없음의 해당 []란에 표시를 하며, 있음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알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1) 귀하는 조현병·정동장애·고도의 성격장애 및 이에 준하는 증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있는 경우)	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2) 귀하는 뇌전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있는 경우)	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3) 귀하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 받거나 수사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	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단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단속일시	단속기관		
	위반행위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허가관청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총포(수렵용 또는 유탄조수구제용을 제외한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분사기·전자총격기 소지허가 결정사유 등의 해당어부 판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관 중인 본인의 동의일로부터 최근 5년간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의 치료 경력을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기재하신 내용은 소지허가(경신) 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결정사유 등의 해당어부 판단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무기류가 경찰관서에 보관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26. 1. 8.>

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폭발물분쇄총 소지 허가 신청서(법인)
 분사기 전자총격기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	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법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재 질	
형 식	
제조국 및	
회사명	
명칭 및	
제조번호	
길 이	
중 량	
용 도	
수 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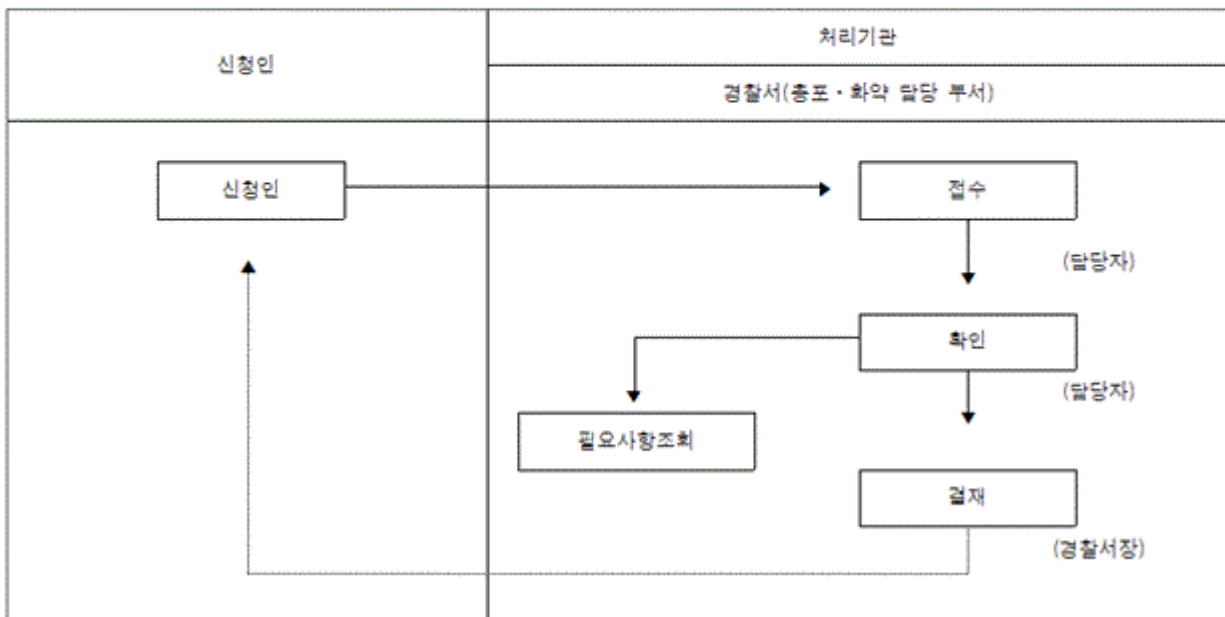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실제 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 각 1부(「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 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타정종 사용자 및 운전면허가 있는 가스발사총·분사기 및 전자총격기 사용자의 경우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3,000원 × 수량
	2. 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타목의 폭발물분쇄총(이하 "폭발물분쇄총"이라 합니다), 분사기 또는 전자총격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량마다 각 1부) 3.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4.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마취총, 산업용총, 폭발물분쇄총만 해당합니다) 5. 실제 사용자 전원의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발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동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 ◆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입수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국내제품인 경우에는 제조증명서
 - 나. 수입인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서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1. 8.>

제 호

지 정 서

○ 성 명 (생년월일: . . .)

○ 주 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국제경기대회 참가 외국인이 소지하고 입국하는 총포·도검의 일시 수출입 및 소지 신청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지정기간: . . . ~ . . . (년간)

2. 총포·도검의 종류

년 월 일

시 · 도 경 찰 청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5.10.30.>

제 호

보관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휴대전화)		
보관물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공기총			
	제조국명	제조사	명칭	형식
	제조번호	구경	보관사유	허가번호
적용법조				
보관 확인자	보관 경찰관서	보관일시	보관사유	집행관 성명

절 취 선

간
인

절 취 선

제 호

보관증명서

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보관물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공기총			
	제조국명	제조사	명칭	형식
	제조번호	구경	보관사유	허가(연장)번호
보관 확인자	보관 경찰관서	보관일시	보관사유	집행관 성명

위와 같이 보관함을 확인합니다.

* 보관물의 반환은 이 증서와 교환하는 것이므로 보관증을 잘 보관해 주십시오

보관해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휴대전화)	
용도	<input type="checkbox"/> 수렵 <input type="checkbox"/> 유해조수 구제 <input type="checkbox"/> 사격경기 <input type="checkbox"/> 호신 <input type="checkbox"/> 어획 <input type="checkbox"/> 건축 <input type="checkbox"/> 공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산업 <input type="checkbox"/> 신호·구명 <input type="checkbox"/> 도살·마취 <input type="checkbox"/> 시험·연구 <input type="checkbox"/> 수리·매매 <input type="checkbox"/> 기타		
총포 정보	총종(銃種)	<input type="checkbox"/> 권총 <input type="checkbox"/> 소총 <input type="checkbox"/> 기관총 <input type="checkbox"/> 포 <input type="checkbox"/> 엽총 <input type="checkbox"/> 공기총	
	제조국	제조사	
	명칭	형식	
	구경	총번	
수렵 관련 정보	수렵 지역		
	총기 이동일시	출발일시	도착일시
	총기 이동경로	출발지역	도착지역
	보관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총포 보관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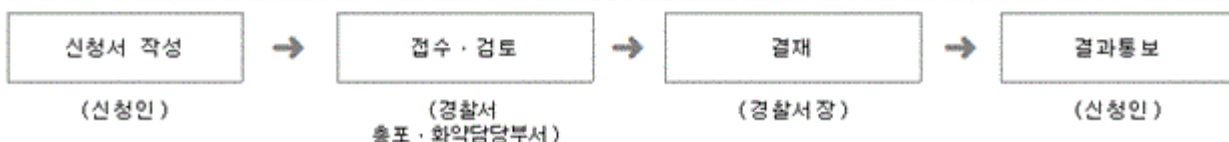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찰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포획승인증 등 반환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총포 보관증명서 3.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동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총포를 보관해제하여 사용하기 위해 본인 소지 총포 또는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경찰청에서 수집·활용 및 제3자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동의인
경 찰 서 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을 통해 법령 위반행위 확인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 총포 오남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
-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총포 보관해제시부터 재보관 완료 후 1개월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포 보관해제가 제한됩니다.

동의함 동의 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 제공받는 자 : 이동통신망사업자(MNO) 및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
-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을 통해 법령 위반행위 확인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 총포 오남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
- ◇ 제공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총포 보관해제시부터 재보관 완료 후 1개월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포 보관해제가 제한됩니다.

동의함 동의 안함

□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 ◇ 위치정보수집·이용 목적 : 이동통신망사업자 및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로부터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을 통해 법령 위반행위 확인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 총포 오남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
- ◇ 위치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총포 보관해제시부터 총포 재보관 또는 당해 수렵기간 종료 후 1개월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위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포 보관해제가 제한됩니다.

동의함 동의 안함

본인은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1. 8.>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총격기 **소지허가갱신 신청서**
 석궁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전화번호
	주소	

현재 소지허가증 내용	허가된 무기류의 종류	
	발급일	
	갱신기간 만료일	
	무기류의 보관장소	
	번호	
	허가관청	

지난 5년간	총포의 경우 수렵 면허장 조수 포획 허가 취득장소	
	총포의 경우 수렵용 화약류 양수 및 실탄 소비상황 · 사격실시상황	
	다른 무기류 소지허가 내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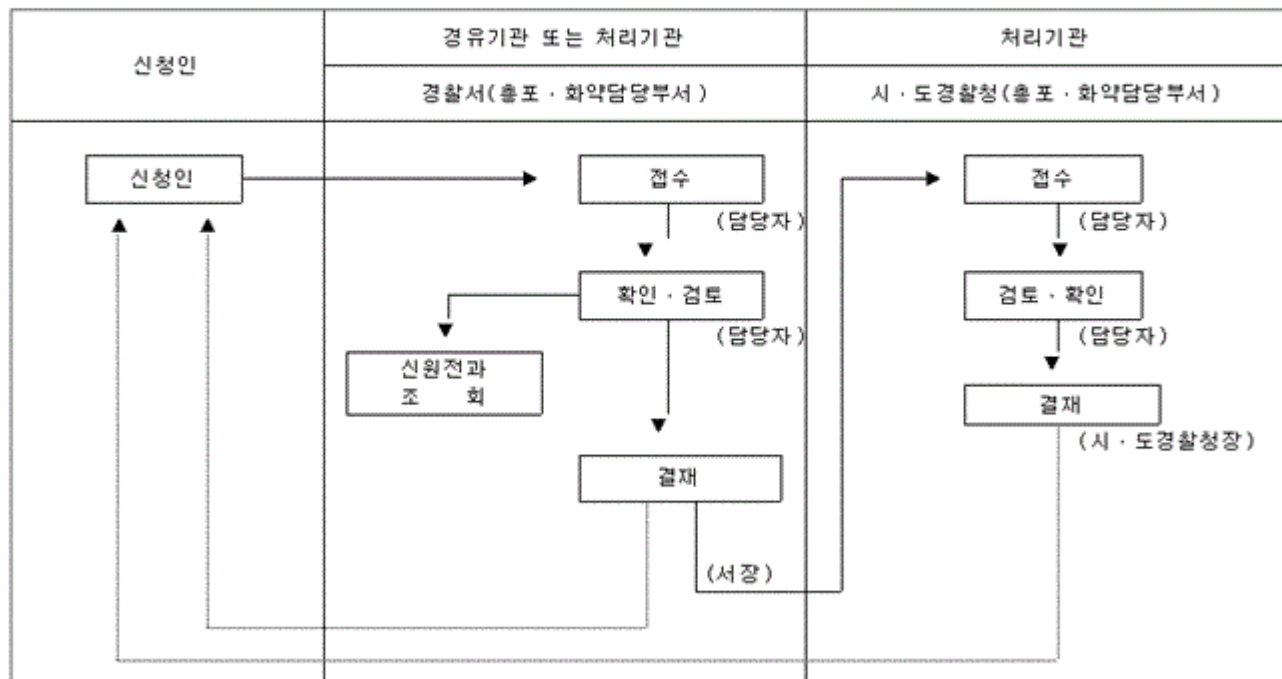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갱신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타정종·가스발사총·도검·분사기 및 전자총격기 소지허가갱신 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사진(가로 2.5cm, 세로 3cm) 3.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소지 허가증 4.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출처 증명서류 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도검·석궁 소지 허가갱신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갱신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 분사기·전자총격기 소지허가갱신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000원
------	---	-------------------

유의사항

1.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사격경기용 총포: 사격선수확인증
 - 나. 수렵용 총포: 제1종 수렵면허증 또는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 다.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제1종 수렵면허증, 제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 라. 그 밖의 용도에 필요한 총포: 총포의 해당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2. 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출처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기존 허가된 경우에는 해당 소지 허가증
 - 나. 소지 허가된 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으로서 상품회된 경우에는 해당 소지 허가증 반납 증명서류
 - 다. 수입 또는 양도의 경우에는 수입면장
 - 라. 국내 제품인 경우에는 제조명세서

처리절차



210mm × 297mm (백상지 80g/㎡)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6. 1. 8.>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총격기 소지허가갱신 연기 신청서
[]석궁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전화번호
	주소	

현재 소지허가증 내용	허가된 무기류의 종류		
	교부 연월일	기간 만료일	
	허가된 무기류의 보관 장소		
	무기류 번호(기재된 사항에 한함)	허가 관청	

연기 내용	연기 사유	재해 []	질병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연기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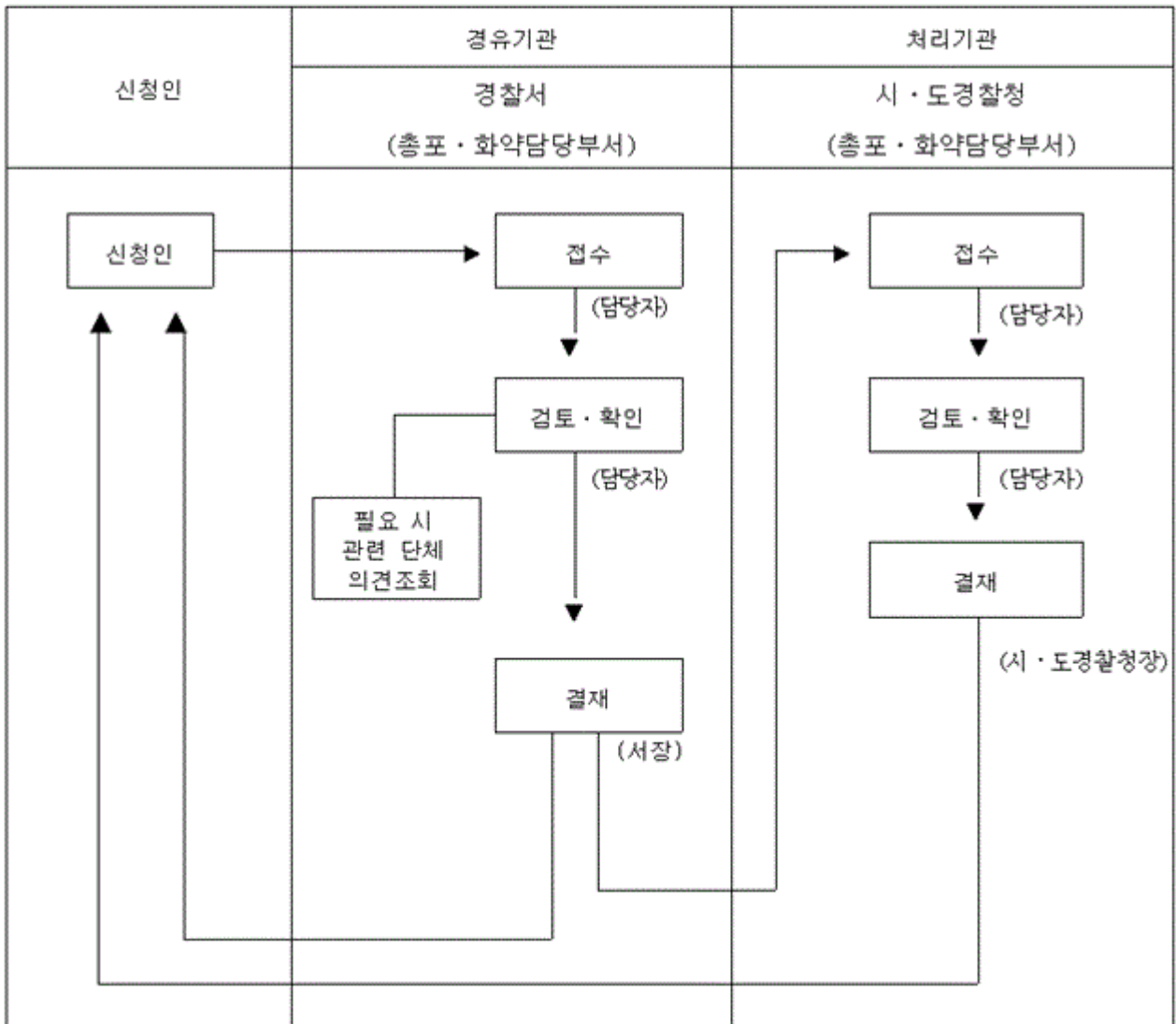
시·도경찰청장 귀하
경찰서장

첨부서류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 내용	업체명		
	소재지		
	사용목적		
	종류 및 수량		
	사용장소	사용시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제조소명		
	사용자 서명 (책임자)		(작업자)
	위해예방방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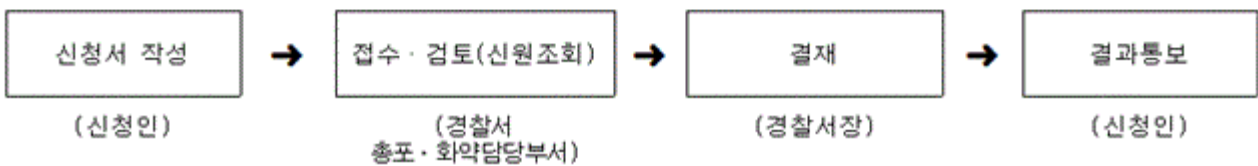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꽃불류 소지허가 신청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나. 화약류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2. 꽃불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순서대장 나. 사용장소 및 그 부근약도 3. 꽃불류 외의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계획서 나. 사용하려는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증 사본 	<p>수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약·폭약 100톤 이상 : 1만원 ○ 화약·폭약 50톤~100톤 : 8천원 ○ 화약·폭약 10톤~50톤 : 5천원 ○ 화약·폭약 1톤~10톤 : 3천원 ○ 화약·폭약 1톤 미만 : 2천원 ○ 꽃불류 : 1천원
------	---	---

(뒤 쪽)

유의사항

1. 위해예방방법은 다음 사항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 가. 운반 및 저장상의 위해예방사항
 - 나. 발파(사용)상의 위해예방사항
 - 다. 화약류의 변질 또는 폐기상의 위해예방사항
2. 저장소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 가. 사용 장소에서 가까운 판매업소에서 1일 사용량만 운반하여 사용하고,
 - 나. 잔량은 매일 판매업소 저장소에 반납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 서명' 란과 '위해예방방법' 란은 꽃볼류 사용허가신청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1. 8.>

화약류 폐기 신고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입허가번호			
화약류 저장위치			
폐기 일시			
폐기 장소			
폐기 방법			
폐기 사유			
폐기 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약류의 폐기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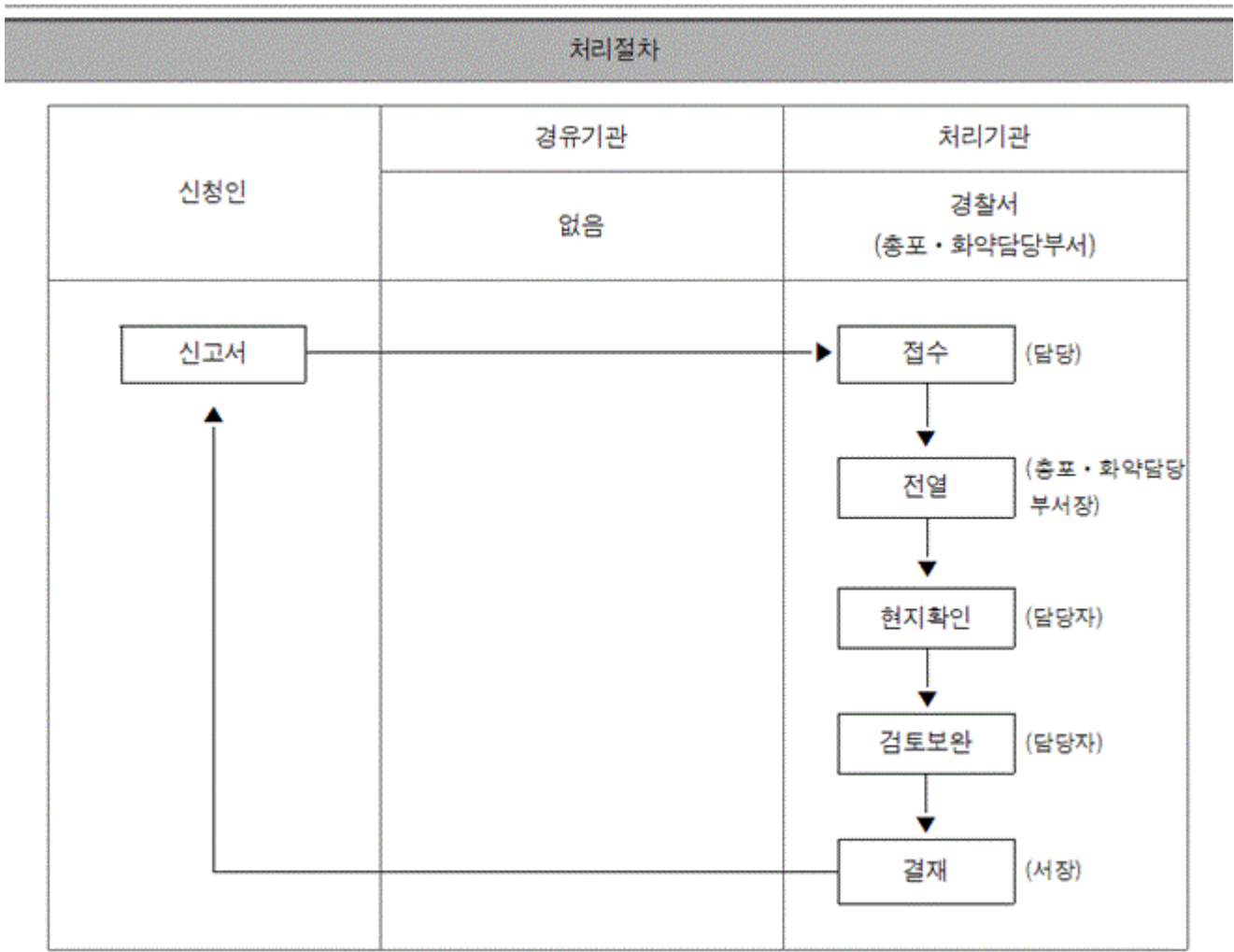
첨부서류	폐기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폐기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폐기작업의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2. 방법, 일시, 장소의 적부에 관한 사항
3. 작업인원에 관한 사항

210mm×297mm [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6. 1. 8.>

화약류 []양도 []양수 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체명				
양도(양수)의 목적				
사업체 소재지				
화약류의 종류·수량				
양도(양수) 화약류 소재지				
저장 또는 보관 장소				
사용 기간				
사용 장소				
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약류 (양도·양수)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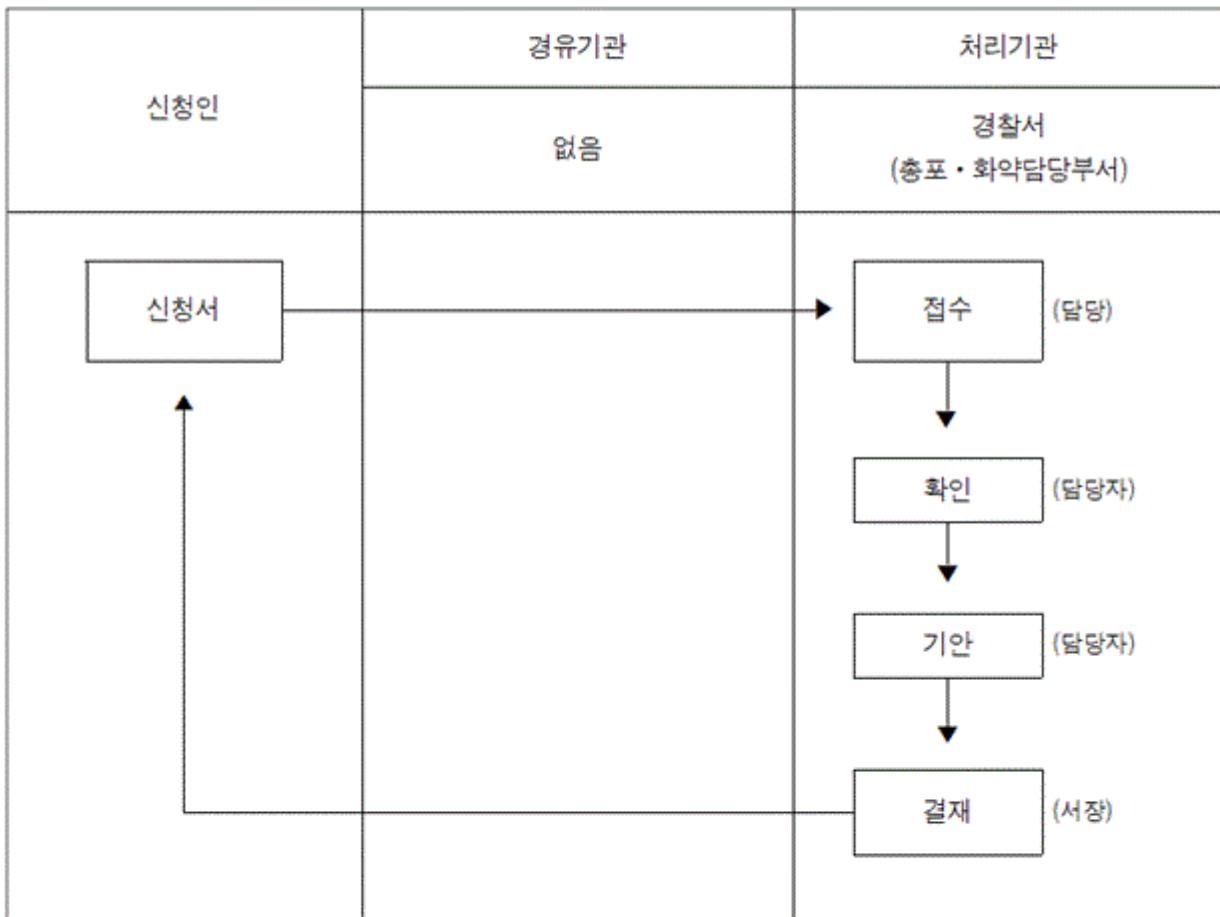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화약류 사용 허가증 사본 2. 광업권허가증 사본, 조광권인가서 사본 또는 탐광계획인가서 사본(광물을 시굴하거나 채굴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뒤쪽 참조
------	---	--------------

210mm×297mm [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처리절차



수수료

1. 화약·폭약 40톤 이상의 양도·양수허가 : 10,000원
2. 화약·폭약 20톤 이상 40톤 미만의 양도·양수허가 : 8,000원
3. 화약·폭약 10톤 이상 20톤 미만의 양도·양수허가 : 5,000원
4. 화약·폭약 10톤 미만의 양도·양수허가 : 3,000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1. 8.>

[] **업종·공기총·석궁 소지허가**
[] **화약류 제조보안(관리보안) 책임자** **교육 수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3근무시간 이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직업		
신청 내용	교육지망연월일		
	교육지망장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사후 교육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업종·공기총·석궁 소지허가에 대한 사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 자격증 또는 화약류관리기술사·화약류관리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화약취급기능사 자격증(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 활용품)]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26. 1. 8.>

- [] **업종**
- [] **공기총 소지허가 교육면제 평가시험 신청서**
- [] **석궁**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3근무시간 이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직업	
신청 내용	시험지망일	
	시험장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면제 평가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6. 1. 8.>

제 호

() 교육 수료증서

1. 성 명: (생년월일: . . .)

2. 주 소:

3. 수강연월일:

4. 수 강 장 소:

5. 수 강 내 용:

위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 찰 서 장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법인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업체명	저장소 설치목적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저장소 종류 및 동수			
	종류별 허가 저장량			
	저장소 위치	변경 전		
		변경 후		
준공 및 사용 연월일		변경사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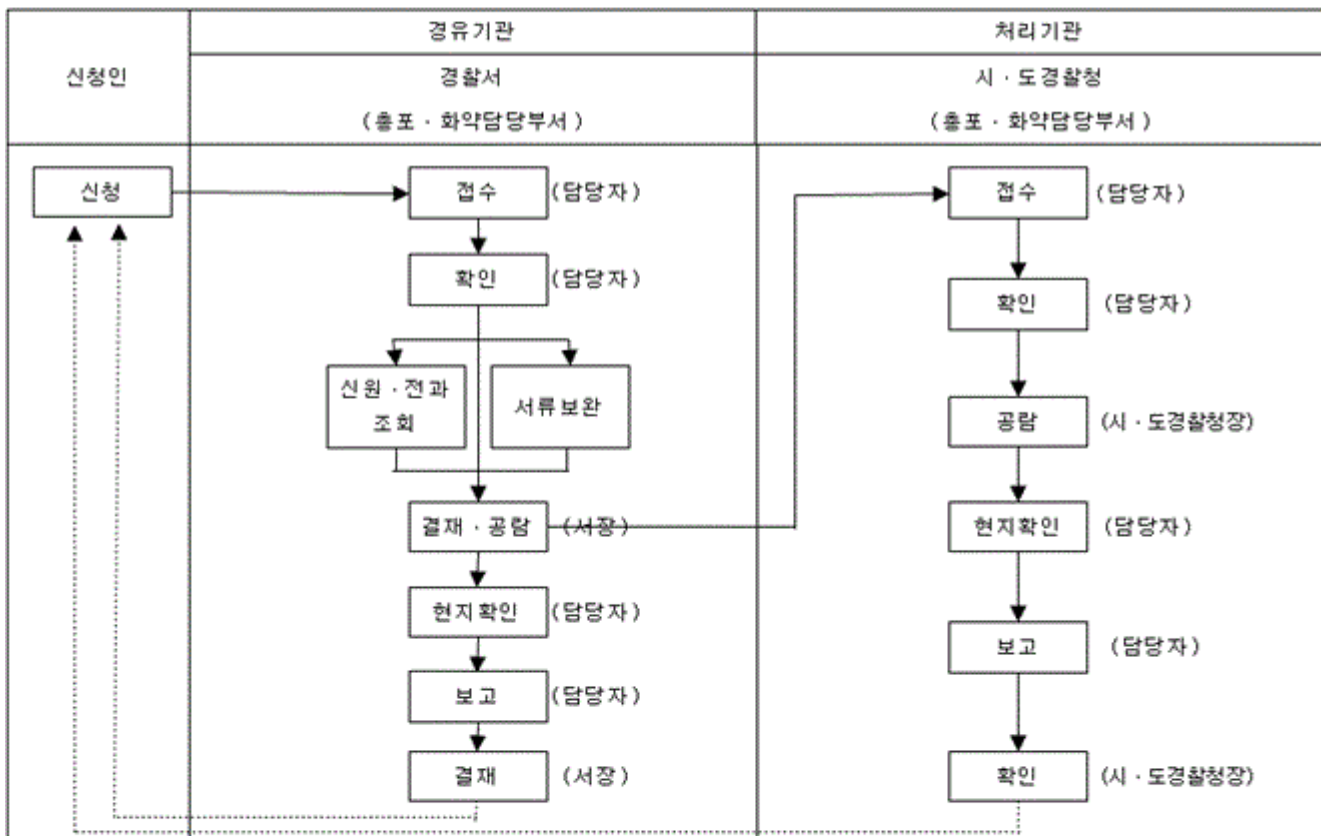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2. 저장소의 설계도 및 그 명세서 각 1부 3. 저장소 및 그 부근(사방 500미터 이내)의 악도(변경허가의 경우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검토의견서 1부(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안전점검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각 1부 	수수료 뒤쪽 참조
------	--	--------------

유의사항

- 저장소설계명세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사방 500㎞ 내의 상황 및 보안물건과의 보안거리
- 나. 구조설비·설계내용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방법·방화 시설 등)

처리절차



수수료

1. 1급 저장소 설치허가 : 10,000원
2. 2급 저장소 설치허가 : 8,000원
3. 3급 저장소 설치허가 : 5,000원
4. 수중·실탄·꽃볼류·장난감용 꽃볼류·도화선 저장소 및 간이저장소 설치허가 : 3,000원
5.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 5,000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6. 1. 8.>

화약류 운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3근무시간 이내)
신고인 (발송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	양수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발송지	도착지	
수취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운반 계획	구간 및 경유지		
	운반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운반 수단	종류 및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대 수	운반기간
운반 경비	성 명	외	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를 운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 × 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제 호 <h2 style="margin: 0;">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h2>			
① 양수허가 번호			② 양수허가 연월일
신고인 (발송인)	③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전 화 :)	
⑥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			
⑦ 발송지			⑧ 도착지
수취인	⑨ 성명		⑩ 생년월일
	⑪ 주소	(전 화 :)	
운 반 계 획	⑫ 구간 및 경유지		
	운 반 책임자	⑬ 성명	⑭ 생년월일
		⑮ 주소	(전 화 :)
	운 반 수 단	⑯ 종류 및 차량번호	⑰ 운전자 성명
		⑱ 대수	⑲ 운 반 기 간
운 경 반 비	⑳ 성명	외 명	
※ 준수사항			
년 월 일			
경 찰 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선임 해임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사업의 종류	사업소 명칭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제조보안 책임자	성명	면허의 종류
	생년월일	면허번호
	면허 등급	교부 관청
관리보안 책임자	성명	면허의 종류
	생년월일	면허번호
	면허 등급	교부 관청
취급 및 취급 장소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의 범위		
해임 및 변경 사유	선임·해임·변경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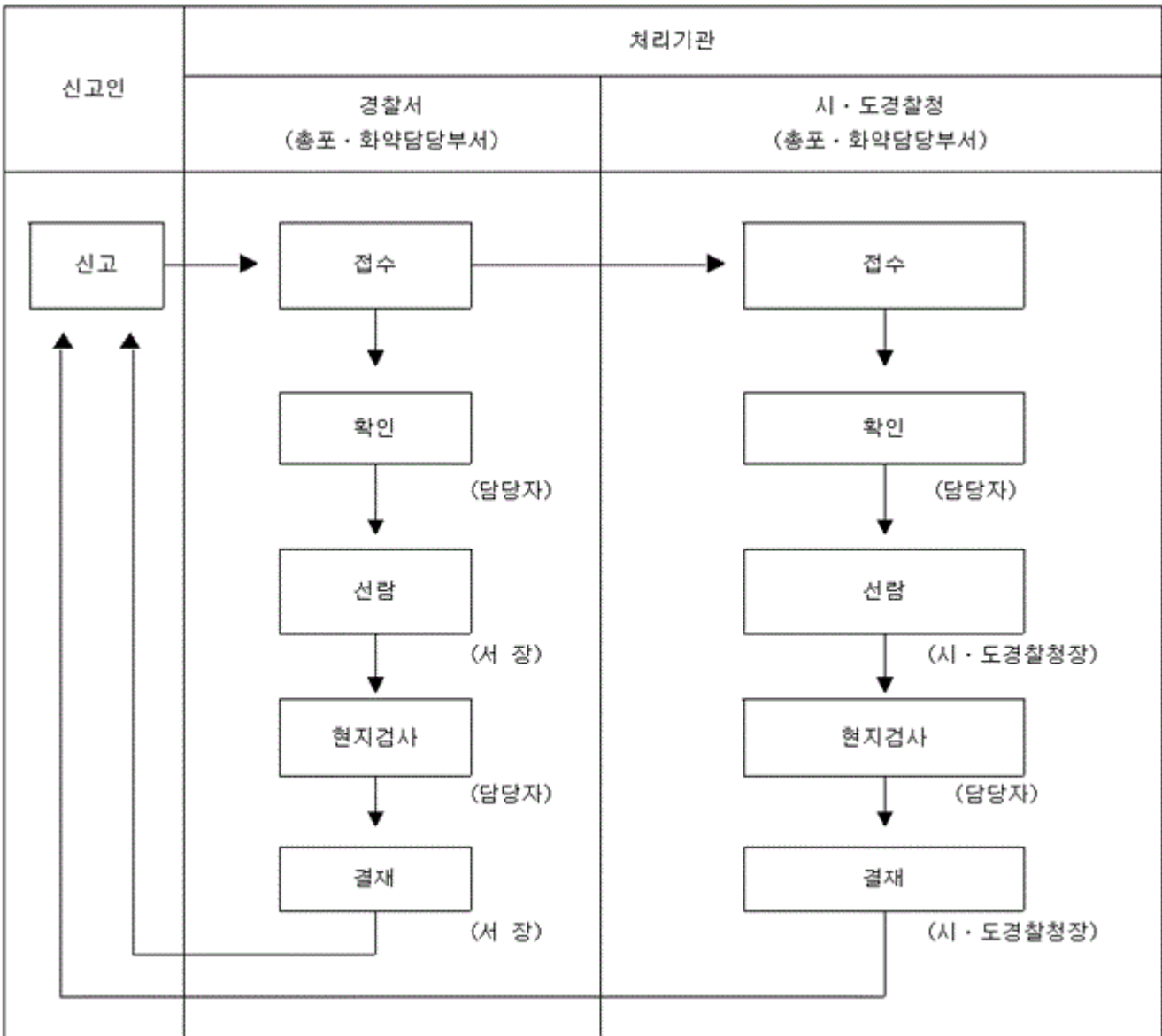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경 찰 서 장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 면허 [] 갱신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격증 또는 면허증	등록번호 (발급번호)	
	종목 (영역)	
	계열	※ 신규 신청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전화번호	
	발급일	
	발급관청 (면허관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면허·갱신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2. 사진(가로 3cm, 세로 4cm) 3. 구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책임자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3,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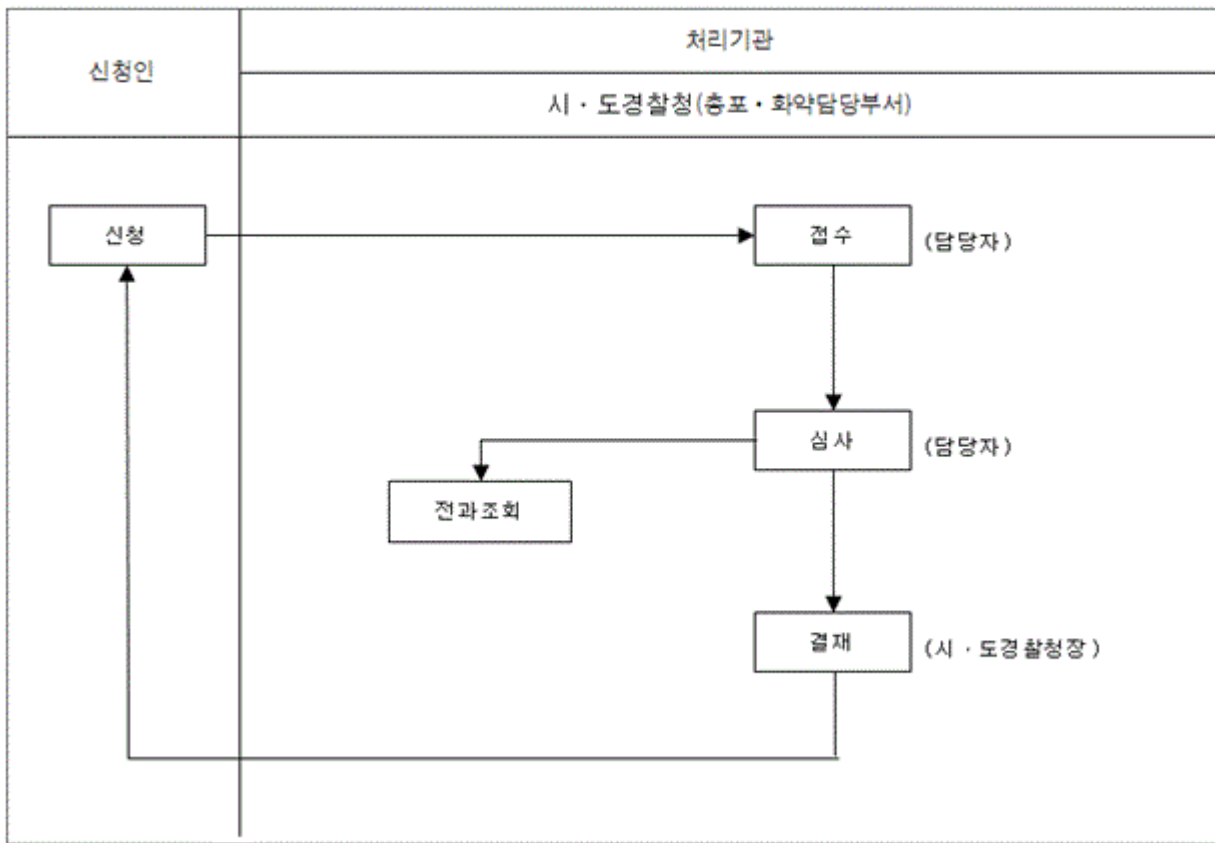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11.2.22>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26. 1. 8.>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 연기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3근무시간 이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증	발급번호	종목 및 등급	
	발급 연월일	면허 관청	
연기 내용	연기 사유	재해	질병
	연기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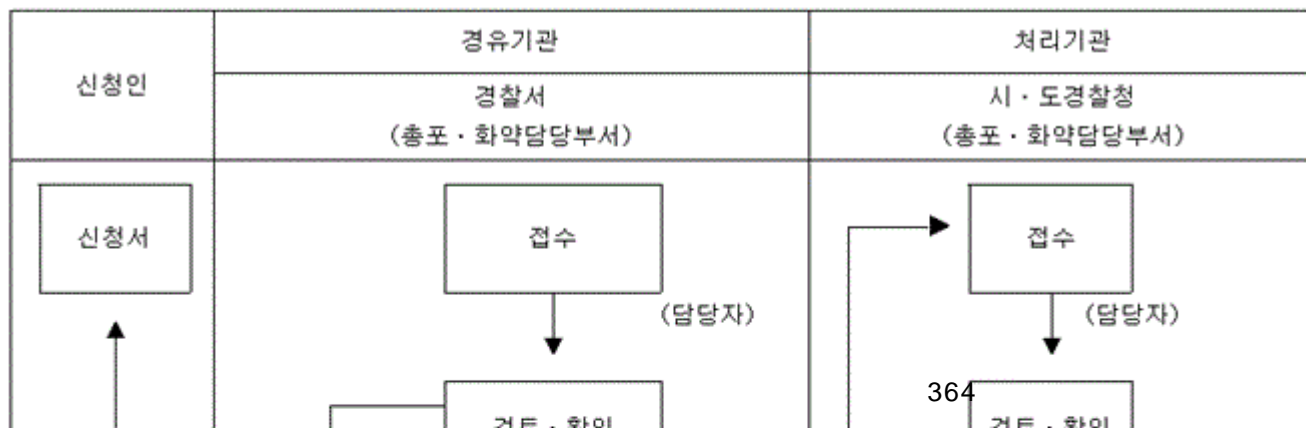
첨부서류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가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신설 2019. 9. 19.>

제 호

보관증명서

(기관 보관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출자 (총포 도난 · 분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휴대전화)		
보관물	총포의 종류			
	제조국명	제조사	명칭	형식
	제조번호	구경	보관사유	허가번호
근거 법 령				
보관 확인자	보관 경찰관서	보관일시	보관 기간	집행관 성명

절 취 선

간
인

절 취 선

제 호

보관증명서

(제출자 보관용)

제출자 (총포 도난 · 분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휴대전화)		
보관물	총포의 종류			
	제조국명	제조사	명칭	형식
	제조번호	구경	보관사유	허가번호
보관 확인자	보관 경찰관서	보관일시	보관 기간	집행관 성명

위와 같이 보관함을 확인합니다.

※ 보관물을 반환받으려면 보관 기간이 경과한 후 이 보관증명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6. 1. 8.>

화약류 응급조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3근무시간 이내)
신고인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 내용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	
	폐기사유	
	폐기방법	
	폐기장소	
	폐기일시	
	폐기책임자	
	위해 예방 방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화약류에 대한 응급조치 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	-----	-----------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완성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법인	명칭	
	주소 (전화번호 :)	
허가 번호		허가 연월일
업소명		대표자 성명
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준공 연월일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연월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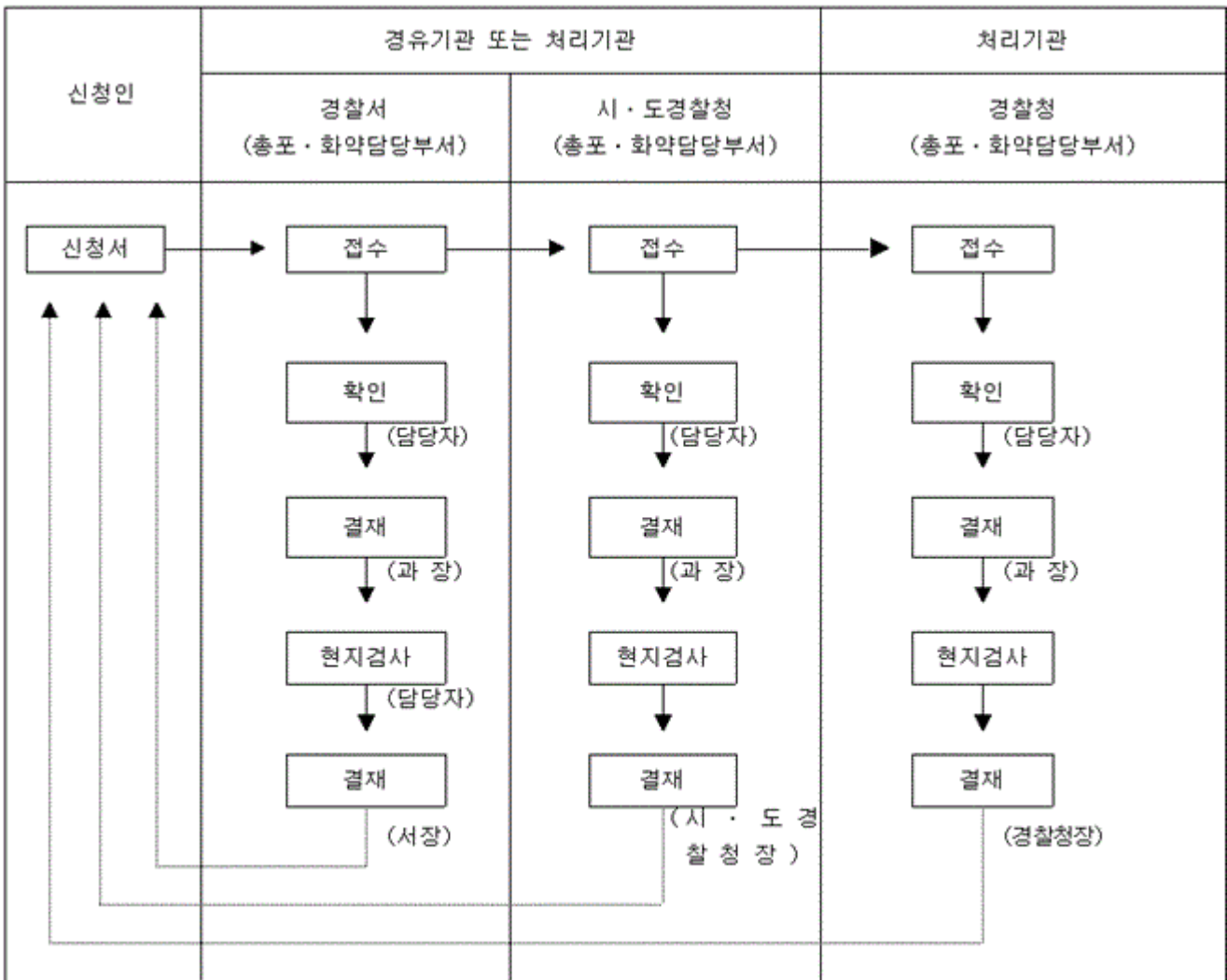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경 찰 청 장
시·도경찰청장 귀하
경 찰 서 장

첨부서류	1. 시설기기 배치도 2.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개정 2026. 1. 8.>

완성검사 연기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3근무시간 이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법인	명칭	
	주소 (전화번호 :)	
허가 번호		허가 연월일
업소명		대표자 성명
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연기 사유 (부득이한 사유)		
연기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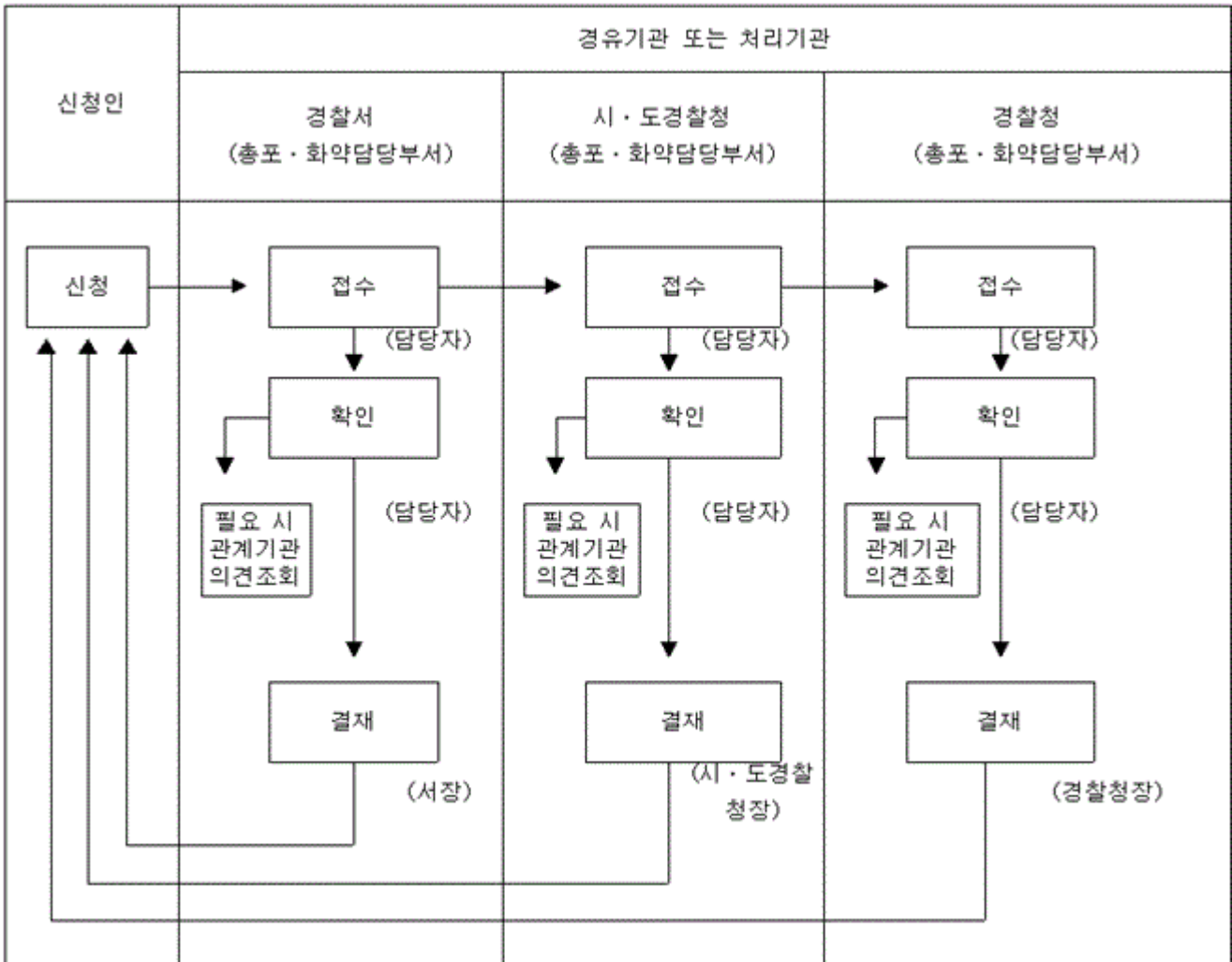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경 찰 청 장
 시·도경찰청장 귀하
경 찰 서 장

첨부서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0. 12. 31.>

제 호 <h2 style="margin: 0;">완성검사 합격증</h2>			
① 허가 번호		② 허가 연월일	
③ 성 명		④ 생년월일	
⑤ 주 소	(전화:)		
⑥ 사 업 명			
⑦ 업소 소재지			
⑧ 시설의 종류 및 검사내용			
⑨ 검사 연월일		⑩ 사용개시 연월일	
⑪ 비 고			
위의 시설은 완성검사에 합격되었음을 증명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gap: 10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left: 1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직인 </div> </div>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6. 1. 8.>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반환 신청서
 []전자총격기 []석궁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	----

신고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임시영치 처분을 받은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허가증	번호	허가 연월일	
		증 별	허가청	

신청 사유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영치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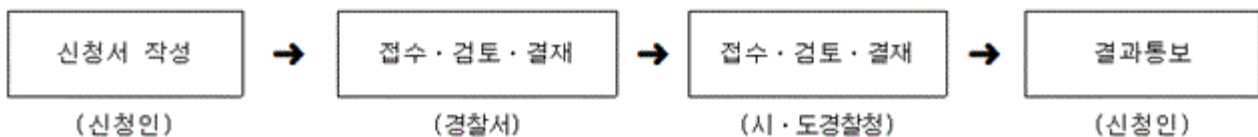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양수를 한 사람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소지허가증 2.소지허가반납증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의2서식]<신설 1997.4.16>

제 호												
()보 관 서												
제출자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직 업				
	④주 소			⑤소 속				(전화)				
⑥적 용 법 조			⑦허가번호·일자 또는 면장번호									
보 관 물 의 종 류 및 수 량	총 포				도 검				화 약 류			
	⑧ 제 조 국 명	⑨ 명 칭	⑩ 형 식	⑪ 구 경	⑫ 제 조 번 호	⑬ 제 조 국 명	⑭ 명 칭	⑮ 칼 날 길 이	⑯ 제 조 번 호	⑰ 제 조 국 명	⑱ 종 류	
	분 사 기			전 자 총 격 기				석 궁				
	⑲ 제 조 국 명	⑳ 형 식	21 제 조 번 호	22 제 조 국 명	23 형 식	24 제 조 번 호	25 제 조 국 명	26 형 식	27 제 조 번 호			
28집행연월일 및 집행관소속, 계급, 성명	년 월 일 ㉑			29보관사유								

제 호 ()보 관 증 명 서											
제출자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호				③직 업	
	④주 소									⑤소 속	
⑥적 용 법 조						⑦허가번호·일자 또는 면장번호					
보 관 물 의 종 류 및 수 량	총 포				도 검				화 약 류		
	⑧ 제조 국명	⑨ 명 칭	⑩ 형 식	⑪ 구 경	⑫ 제조 번호	⑬ 제조 국명	⑭ 명 칭	⑮ 칼날 길이	⑯ 제조 번호	⑰ 제조 국명	⑱ 종 류
	분 사 기			전 자 총 격 기			석 궁				
	⑲ 제조 국명	⑳ 형 식	㉑ 제조 번호	㉒ 제조 국명	㉓ 형 식	㉔ 제조 번호	㉕ 제조 국명	㉖ 형 식	㉗ 제조 번호		
㉘집행연월일 및 집행관소속, 계급, 성명	년 월 일 ㉙		㉚보관사유								
※ 이 증명서는 보관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하므로, 잘 보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인]											

21026-44111일
97.3.26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09.9.30>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 제조 명세부

1. 총포·도검 제조·양도 명세부

번호	제조 연월일	총포·도검 내역						양도 연월일	양수인					
		총 도검	종 또는 형태	구경	제조번호	신장	전량		중량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허가 기관	허가 연월일

364mm×257mm[보존용지(2종) 70g/m²]

·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제조 · 양도 명세부

제 조 연월일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양 도 연월일	양수인					
	명칭	형태	제조 번호	제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상 호 소재지	허가 기간	허 가 연월일	허가 번호

364mm×257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09.9.30>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양도·양수 명세부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양도·양수 대장

번호	양수 연월일	양수						내역								양도 연월일	양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허가 기관	허가 연월일	허가 번호	제작, 수입, 반납 연월일	제조국 (제조 회사)	종별 (명칭)	구경 (형태)	제조 번호	전량	중량	특징		비고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허가 기관	허가 연월일	허가 번호

42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도 량										재 고 량												학인자 서 명				
화약			뇌관					도화 선 (m)	도폭 선 (m)	폭약					화약			뇌관					도화 선 (m)	도폭 선 (m)		
계 (kg)	흑색 화약	미진 동화약	계 (kg)	공뇌	전뇌	지발 뇌관	순발 뇌관			계 (kg)	다이 나마 이트	초안 폭약	초유 폭약 AN- FO	정밀 폭약	합수 폭약	계 (kg)	흑색 화약	미진 동화약	계 (kg)	공뇌	전뇌				지발 뇌관	순발 뇌관

420mm×297mm[보존용지(2종) 70g/㎡]

3. 실탄·공포탄·산탄탄알 및 연지탄·꽃불류 양도·양수명세부

※ 꽃불류의 경우 구경란에 제품명을 기재합니다.

번호	구분	양수사항							양도사항				용도	구경 (제품명)	보관현황			비고
		양수 연월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허가 기관	허가 연월일	허가 번호	양도 연월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양수 량	양도 량	재고 량	

42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신설 2016.1.12.>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임대 명세부

번호	임대 연월일	임대						내역			
		성명 (회사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회사주소)	허가 기관	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제조국 (제조사)	종별 (명칭)	구경 (형태)	총번 (제조번호)

[별지 제34호의4서식] <신설 2026. 1. 8.>

발파작업일지

■ 작성일시: 년 월 일 요일 날씨 ■ 작성자 :										서 명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		공 사 장		현 소 장
화 약 류	양수	양수 위치					양수시간							
		양수량 (폭약)					양수량 (뇌관)							
	운반	운반신고 증명서번호					운전자							
		운반책임자					운반차량							
		운반시간 (출발)					운반시간 (도착)							
	사용	사용량 (폭약)					사용량 (뇌관)							
		잔량(폭약)					잔량(뇌관)							
	반납	운반신고 증명서번호					운전자							
		운반책임자					운반차량							
		반납일시 (출발)					반납일시 (도착)							
		반납량(폭약)					반납량(뇌관)							
	작 업 내 역	순서	발파 시간	천공경	천공장	저항선	공간격	천공수	공당 장약량	지발당 장약량	총장약량		발파결과	
(mm)				(m)	(n)	(m)	(EA)	(kg)	(kg)	폭약	뇌관	진동	소음	
발파위치 및 계속위치도														
424														
가														

<p>작업자 명단</p>	
<p>안전조치</p>	
<p>특이사항</p>	
<p>첨부서류</p>	<p>1. 운반신고필증 사본 2. 진동소음 파형이 표시된 진동소음계측 자료</p>

제 호

() 제조업(판매업·임대업) 허가증

- 성 명: [생년월일(남/여):]
- 주 소:
- 업 소 명:
- 소 재 지:
- 허가조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제조업(판매업·임대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직인

제 호

() 수출(입) 허가증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제조업소 및 상호:
- 종류 및 수량:
- 수출(입)의 목적:
- 수출(입)의 방법:
- 수출(입)국 선:
- 수출(입)지:
- 수출(입)예정일:
- 허가기간:
- 허가조건:
- 수출경유국:
 - ※ 장약총포 및 인명살상용의 무기류로 사용되는 화약류의 경우 기재
- 수출물품 구매자:
 - ※ 장약총포 및 인명살상용의 무기류로 사용되는 화약류의 경우 기재
- 제조번호(장약총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 수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찰 청 장
 시 · 도 경 찰 청 장 직인

(앞쪽)

총포() 소지 허가증 제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2.5cm×3cm)	제조회사		명칭	
	구경		총번	
	대체총신	구경 번(구경) mm, 총신장 cm		
	교부일자		용도	
	갱신기간 만료일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직인

85mm×55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쪽)

연월일	기재사항변경	확인인

1. 총포소지자는 반드시 이 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2. 주소지 변경 등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분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4.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소지허가갱신을 하지 아니하면 소지허가가 취소됩니다.

(앞쪽)

도검 소지 허가증 제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2.5cm×3cm)	제조회사				
	명칭				
	날의길이				
	교부일자		용도		
	갱신기간 만료일				
경찰서장 직인					

85mm×55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쪽)

연월일	기재사항변경	확인인
1. 도검소지자는 반드시 이 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2. 주소지 변경 등 기재사항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분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앞쪽)

() 소지 허가증 제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2.5cm×3cm)	제조국 및 회 사			
	명 칭			
	제조번호			
	교부일자		용도	
	갱신기간 만료일			
경찰서장 직인				

85mm×55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쪽)

연월일	기재사항변경	확인인

1. 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소지시는 반드시 이 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2. 주소지 변경 등 기재사항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분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제 호

화약류 양도 양수 허가증

- 성 명: (생년월일: . . .생)
- 주 소:
- 종류 및 수량:
- 양도(양수) 목적:
- 양도(양수) 장소:
- 저장(보관) 장소:
- 허가 기간: . . .부터 . . .까지
- 조 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화약류 양도·양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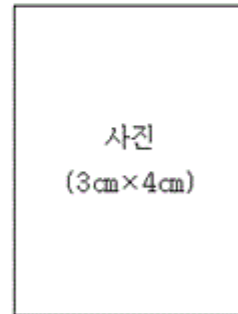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제 호

화약류 사용 허가증

- 성 명:
- 주 소:
- 종류 및 수량:
- 사용 목적:
- 사용 일시:
- 사용 장소:
- 사용 기간: . . . 부터 . . . 까지
- 조 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화약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찰 서 장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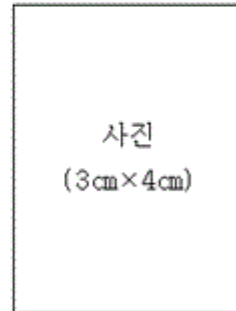
1.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전화 . . . 번으로 연락바랍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제 호

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증

- 성 명:
- 생년월일(남/녀):
- 주 소:
- 위 치:
- 종 류:
- 최대 저장량:
- 조 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화약류 저장소의 설치(변경)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0. 12. 31.>

(1쪽)

()급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

시·도경찰청장

70mm×100mm[보존용지(1종) 120g/m²]

(2쪽)

사진
(3cm×4cm)

(3쪽)

제 호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갱신기간 만료일 :

년 월 일

시·도경찰청장 직인

(4쪽)

이 동 사 항		
연월일	이동사항	확인인

(5쪽)

이 동 사 항		
년월일	이동사항	확인인

(6쪽)

주의사항

1. 화약류를 다룰 때에는 이 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주소지 변경 등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분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6. 1. 8.>

[] 허가증 반납 신고서
 [] 면허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3근무시간 이내)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직 업		
허가증 (면허증)	허가(면허) 번호		
	허가(면허) 연월일		
	허가(면허) 내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증(면허증)의 반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귀하
 경찰청장

첨부서류	1. 허가(면허)증 2. 보유하고 있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에 대한 처리계획서(허가가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 × 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6. 1. 8.>

() [] 허가증 []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허가(면허)의 종류		
	허가(면허)번호	허가(면허)일	
	현재사항		
	변경사항		
	사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증·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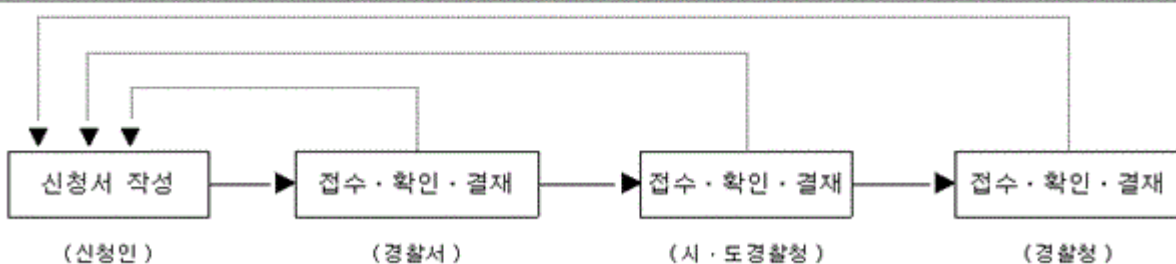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귀하
경찰청장

첨부서류	허가(면허)증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6. 1. 8.>

() []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 면허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허가(면허)의 종류		
	허가(면허)번호	허가(면허)일	
	사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증·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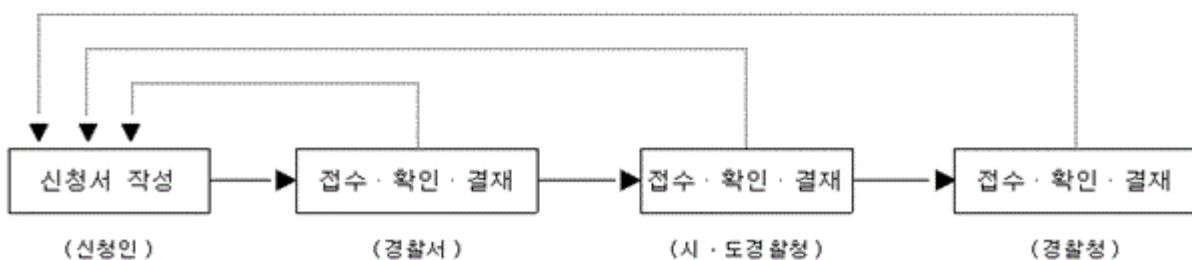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귀하
경찰청장

첨부서류	1. 잃어버린 경우: 잃어버리게 된 경위서 2. 헛어서 못쓰게 된 경우: 허가증 또는 면허증	수수료 1,000원
------	--	---------------

처리절차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6. 1. 8.>

[] 총포	[] 도검	[] 제조업	폐업(폐지)·휴업신고서
[] 화약류	[] 분사기	[] 판매업	
[] 전자총격기	[] 석궁	[] 임대업	
		[] 저장소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3근무시간 이내)
------	------	------	--------------

허가 사항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무소 소재지	
	사업명	

폐업·휴업 사유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제조업·판매업·임대업·저장소)의 폐업(폐지)·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 및 완성검사 합격증	수수료 없음
------	----------------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6. 1. 8.>

제 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

(앞 쪽)

귀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 원인행위	일시	
	장소	
	내용	
적용 법령		
의견 제출 기한		

년 월 일

시·도경찰청장
찰 서 장

직인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위 1호와 같은 요령으로 의견 제출 기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 과태료 감경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미성년자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시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관

부 서 영		담 당 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	

봉 함 엽 서

보내는 사람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주 소
 □ □ □ - □ □ □

우체국

받는 사람
 귀하
 □ □ □ - □ □ □

과태료 부과 고지서 재증

_____ 접 는 선 _____

_____ 접 는 선 _____

제 호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납부자: 주민(법인)번호: -----

세입징수관	계좌번호

주 소: _____

귀하에 대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
위반 사항	일시	위반내용	
	장소	적용법령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납기 후 수납 불가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직인

년 월 일

수납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 2026. 3. 24



가